농 림 수 산 식 품 부
연 구 용 역 보 고 서
11-1541000-000010-01

# FTA 기금사업 성과평가

2008. 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www.newma.re.kr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FTA 기금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연구기관 :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책임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연구참여 : 채성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연 구 용 역 보 고 서

# FTA 기금사업 성과평가

김동환
채성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www.newma.re.kr

# 차 례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2. 주요 연구내용 ····· 2
1.3. 연구 방법 ····· 3
1.4. 연구체계도 ····· 4

**제2장 FTA 기금 현황**

2.1. FTA 기금의 배경 및 개요 ····· 5
2.2. 기금 사업의 세부 내용 ····· 8
2.3. FTA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 ····· 9

**제3장 FTA 기금 평가 지표 개발**

3.1. 성과지표 개발 방법론 ····· 13
3.2. 정책평가 지표 및 타기금의 성과 지표 ····· 17
3.3. FTA 기금의 성과 지표 ····· 19

**제4장 FTA 기금 사업 평가 결과**

4.1. 세부 사업별 평가 ····· 45
4.2. FTA 기금사업 전체 ····· 108

**제5장 FTA 기금 사업의 성과요약 및 발전방향**

5.1. FTA 기금사업의 성과 요약 ····· 145
5.2. FTA기금사업의 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 152
5.3. FTA 기금사업 개선 방안 ····· 154

참고 문헌 ····· 163

부 록 ····· 165

## 제2장

표 2-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조건 ····· 51
표 2-2. 연도별 FTA기금 조달실적(계획) ····· 92
표 2-3. 사업별 투자 계획 ····· 93
표 2-4. 연도별 FTA기금 사업의 운용실적(2004 ~ 2006) ····· 1·· 3

## 제3장

표 3-1.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기준 ····· 73
표 3-2. (구)기획예산처의 기금 평가 지표 ····· 83
표 3-3. 기금평가의 세부 지표 ····· 83

## 제4장

표 4-1.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 실적 ····· 91
표 4-2.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주요 세분류별 실적 ····· 91
표 4-3. 일반재배 대비 밀식재배의 경제적 효과 ····· 15
표 4-4. 일반 재배 대비 저수고 재배의 경제적 효과 ····· 15
표 4-5. 포도 일반재배 대비 비가림재배시 생산성 비교 ····· 23
표 4-6. 포도 관행재배 대비 비가림 재배시 투하노동력 비교 ····· 23
표 4-7. 자두 일반재배 대비 비가림재배 품질향상 효과 ····· 33
표 4-8. 자두 일반재배 대비 비가림재배 소득효과 ····· 33
표 4-9. 사과 품종별 미세살수 시설에 의한 (개)화기 피해율 ····· 45
표 4-10. 사과 품종별 미세살수 시설에 의한 품질향상 ····· 45
표 4-11.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예산 집행율 ····· 75
표 4-12. 생산기반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 ····· 26
표 4-13. 생산기반 조성 사업 연도별 유형별 조성 면적 ····· 26
표 4-14. 농로개설 전후 과일 손상 감소율 ····· 36
표 4-15. 밭기반 정비 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 46
표 4-16.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자 선정 진단 및 평가일정 ·· 86
표 4-17.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의 국고예산 대비 집행실적 ···· 96

표 4-18.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추진현황(2007말 기준) …07
표 4-19.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역별 생산물량 대비 집하물량(2007기준) ·17
표 4-20.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계획물량 대비 집하실적(주품목) ·27
표 4-21.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기 가동율 ……37
표 4-22.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창고 활용율 ……37
표 4-23. 당도 선별 기준별 사용브랜드 ……47
표 4-24. 당도 기준별 상품화율 ……57
표 4-25. 제주감귤 등급별 평균 경락가격 ……57
표 4-26. 지역내 과수농가 대비 약정 농가 수 ……67
표 4-27. 총출하량 대비 판매 유형 ……77
표 4-28. APC와 일반 선과장의 선별비 비교(2007년기준) ……87
표 4-29. 거점APC 사업손익 (2007년기준) ……77
표 4-30.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의 계획대비 실적 ……18
표 4-31.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38
표 4-32. 지역별 묘목 생산자 선정 현황 ……48
표 4-33. 우량묘목 생산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78
표 4-34.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시설 설치 내역 ……78
표 4-35. 사과, 포도 무병 원종 도입 현황 ……88
표 4-36. 품종별 지역별 묘포장 조성 현황 ……98
표 4-37. 사과 품종별 ASSVd 감염과실의 과실특성 ……09
표 4-38. 포도 바이러스 이병주와 무병주의 과실특성 ……19
표 4-39. 사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19
표 4-40. 주요 선진국 무병묘 유통비율 ……29
표 4-41. 농업진흥지역 이외 밭매매시 거래단가 ……49
표 4-42. 과원규모화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 ……69
표 4-43. 매매사업 추진 현황 ……79
표 4-44. 임대차사업 추진 현황 ……79
표 4-45. 과원규모화사업의 성과 ……89
표 4-46. 경영규모별 과원규모화 사업의 소득증대 기여도 ……99

표 4-47. 과종별 과원규모화 사업 수혜자 만족도 ····· 100
표 4-48. 과원규모화사업 기존 수혜농가의 추가 참여 의향 ····· 100
표 4-49. 칠레산 포도 및 키위 수입 추이 ····· 103
표 4-50. 포도 및 키위 국내 가격 동향 ····· 103
표 4-51. 폐업지원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 ····· 105
표 4-52. 2004~2007 폐업지원사업 품목별 지원 금액 ····· 601
표 4-53. 폐업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 106
표 4-54. 호당 평균 국고지원액 추이 ····· 106
표 4-55. 충북지역 복숭아 농가 폐업지원 현황 ····· 108
표 4-56.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피해 규모 추정액 ····· 109
표 4-57. FTA 기금의 항목별 수익 ····· 112
표 4-58. FTA 기금의 사업 관리비 비율 ····· 114
표 4-59. 개별 사업대상자의 평가 등급 ····· 117
표 4-60. FTA 기금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 121
표 4-61. 과수 농가수 및 총 재배면적 ····· 122
표 4-62. 주요 과종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 123
표 4-63. 사과 생산성 변화 추이 ····· 124
표 4-64. 배 생산성 변화 추이 ····· 125
표 4-65. 포도 생산성 변화 추이 ····· 126
표 4-66. 노지감귤 생산성 변화 추이 ····· 126
표 4-67. 복숭아 생산성 변화 추이 ····· 127
표 4-68. 단감 10a당 생산성 분석 ····· 128
표 4-69. 사과(후지)가격의 변이계수 ····· 128
표 4-70. 배(신고)가격의 변이계수 ····· 128
표 4-71. 감귤가격의 변이계수 ····· 129
표 4-72. 포도(켐벨)가격의 변이계수 ····· 129
표 4-73. 복숭아(백도)가격의 변이계수 ····· 129
표 4-74. 키위(국산)가격의 변이계수 ····· 130
표 4-75. 지원농가 대비 약정농가 비율 ····· 130

표 4-76. 출하약정물량 대비 실제출하물량 비율 ····· 11
표 4-77.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 12
표 4-78.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 13
표 4-79. 거점APC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 14
표 4-80. 과수우량묘목 생산 사업 ····· 15
표 4-81. FTA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 16
표 4-82. FTA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 17
표 4-83. 사업에 대한 만족도 산출 방식 ····· 10
표 4-84. 세부항목별 종합만족지수 비교 ····· 13

**제5장**

표 5-1. 세부 사업별 평가 결과 요약 ····· 12

## 제1장

그림 1-1. 연구체계도 ····· 4

## 제3장

그림 3-1. 성과지표의 유형 ····· 13
그림 3-2. 성과지표 개발 프로세스 ····· 16

## 제4장

그림 4-1.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의 관리체계 ····· 18
그림 4-2. 과원규모화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 ····· 19
그림 4-3. 과원규모화사업의 소득증대 기여도 ····· 19
그림 4-4. 과원규모화 사업 수혜농가의 차년도 사업참여 의사 ····· 21
그림 4-5.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 심사·평가 프로세스 ····· 25
그림 4-6. FTA 사업별 만족도 지수 비교 ····· 32

# 제1장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2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의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2천억을 조성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임

- FTA기금 사업으로는 경쟁력 강화 부문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사업,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등이 있으며, 경영안정 부문에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및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추진 중임

◦ FTA기금이 설치된 지 4년이 경과되면서 기금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FTA기금이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한미 FTA가 비준단계에 접어들었고 한·EU FTA가 사전 준비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한중 FTA도 점차 가시화되는 등 FTA의 확산에 따른 기금의 규모와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FTA기금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

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FTA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FTA기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2007)에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매년 시군의 사업자를 평가하고 있으나, 주로 기금사업 집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있어 본격적인 기금사업의 성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FTA 기금사업이 실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성과 위주의 분석을 주로 수행하고자 함

## 1.2. 주요 연구내용

◦ FTA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분석

◦ FTA 기금 성과지표 개발

◦ FTA 기금 사업의 거시적 성과 분석

◦ FTA 기금의 사업체계 분석 및 정책평가

◦ FTA 기금 사업의 성과 평가

◦ FTA 기금 사업의 발전 방향

## 1.3. 연구 방법

### □ 기존 통계 자료 및 문헌 분석

◦ FTA기금 결산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과수실태조사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과실 가격 자료,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FTA기금 사업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

◦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수행한 FTA기금 평가 자료를 활용

◦ 기금평가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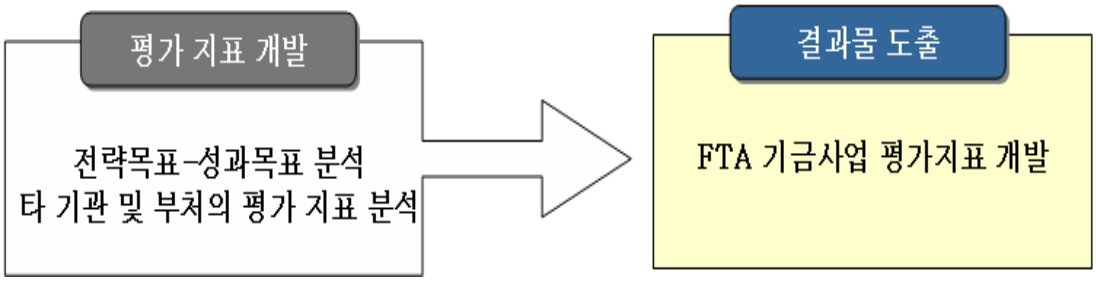


### □ 기금사업 참여자 조사

◦ 기금참여 사업자(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FTA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함

- 2007년 평가대상 FTA 기금 사업자 44업체중 32업체(73%)가 응답
- 주요 설문내용 : 사업별 성과 평가 및 필요성, 기타 사업 추진상 애로 사항 등

◦ 기금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는 현대리서치(2007)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음

## 1.4. 연구체계도

그림 1-1. 연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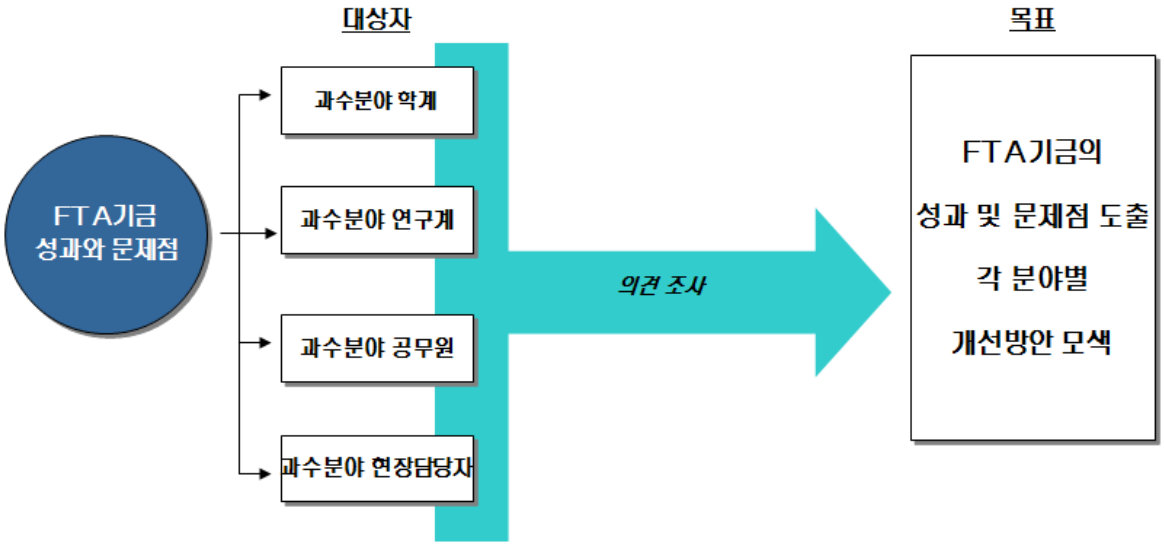

# 제2장 FTA 기금 현황

## 2.1. FTA 기금의 배경 및 개요

### 2.1.1. 기금조성목적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4년 기금 설치

- 법적 근거는 2004년 3월에 통과된「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0조 (기금의 설치)
- 2004년 4월「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FTA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을 제정(농림부훈령 제1164호)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

### 2.1.2. 조성재원 및 용도

◦ 정부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 후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2004. 4. 1)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정

-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되고 현재 한·EU간 FTA가 협상 중에 있어 기금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 FTA 기금의 재원
- 정부의 출연금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
-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FTA기금의 용도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폐업지원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업 지원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의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FTA기금 세부 사업 개요>

### ◎ 경쟁력제고 사업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 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 과수전문생산단지에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반 정비로 수출기반 확충

◦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 사업
- 구입비용이 과다한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가들의 구입비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과수 주산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 규격·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정센터 설립·운영
- 중앙모수포로부터 모수를 분양받아 우량규격묘(품질보증)를 생산·보급

◦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농산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가공용 농산물의 수요개발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원의 매매 또는 임대차 지원

◦ 과실브랜드 육성사업(2007년 신규 사업)
-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운영, 브랜드홍보 등 지원

◎ 경영안정 사업

◦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과실 수입량 증가로 과실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대상품목 : 시설포도, 참다래

◦ 과원폐업지원사업
- 폐원 또는 매도 희망시 폐업지원금 지급
- 대상품목 :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 2.2. 기금 사업의 세부 내용

### 2.2.1. 중앙정부 추진사업

□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가.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재배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 나. 추진방향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

◦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 라.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자

◦ 지원 대상 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원제외
- 품목 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2)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평균가격) × 보전비율 80%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 출하시기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직불금 산출방법 :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과원폐업지원사업**

**가. 목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나. 추진방향**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

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 대상품목의 과원소유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원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자

2) 대상품목

◦ 시설포도 (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 키위, 복숭아

3) 지원제외

◦ 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건축, 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 고시일 이후에 과수목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 의 경우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을 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폐원하거나 재양도하는 경우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ha) ×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입액 × 3년
- 양도 : 양도면적(ha) ×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입액 × 1년

###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가. 목적

◦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나.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과수농가를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발전가능성이 큰 우수 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자립여건 조성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라. 사업내용

1) 과원매매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2) 과원임대차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장기 임대

### 마.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을 재배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 기준)

3) 매매사업 지원상한 및 자부담

◦ 지원상한 : 12,100원/m2 (과수목 포함)

◦ 자부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 (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100%

◦ 융자취급기관 : 한국농촌공사

◦ 지원규모 및 조건(표 2-1)

표 2-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조 건 | |
|---|---|---|---|
| | | 금리 | 상환기간 및 방법 |
| 과 원 매 매 | 기존소유규모 포함 5ha | 연 2.0% | 10-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상환, 체증식상환 |
| 과원임대차 | 기존임차규모 포함 5ha | 무이자 | 5-10년 원금 균분상환 |

## 2.2.2. 지방자율 계획사업

###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가.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나.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 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 지원 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 전국조직의 회원으로 전국조직의 거점APC 등과 공동선별·공동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2) 지원시설 및 장비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등

◦ 기 타 : 시설포도시설과채류 등의 시설 개보수 등

3) 지원제외

◦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등)

◦ 농기계(트랙터, 포크레인, SS분무기 등)

◦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포도·감귤 비가림시설

◦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기준

◦ 지원비율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가.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 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나.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과수생산거점으로 육성

◦ 과수산업 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 제고

◦ 지역 여건, 농업인 수요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라. 단계별 사업내용

1) 사업단계

◦ 연차사업과 당해 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 (착 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 (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 개발(암반관정, 양수장 등)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 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마.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 이상 (최소 30ha 이상)으로 사업수혜 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 (지원대

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현재 49개 단지)
- 2단계 : 30ha 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2) 지원기준

◦ 지원비율 : 보조 100%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25,410천원/ha (기본조사비 : 419천원/ha, 국고보조 100%)

**바. 사업대상지구 선정**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 주산단지 정비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

◦ 품목별 생산자조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등

## □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가. 목적

◦ 국내 과수농가의 영세성에 비해 구입비용이 과다한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가들의 구입비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

### 나.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수전문생산(수출)단지 또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생산비절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

◦ 영농조건 불리 지역 및 영세 소농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

◦ 내구연한 경과 후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자 :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자체 등

2) 지원대상

◦ 농 기 계 : 잔가지파쇄기, 과수인공교배기,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상이고, 내구성이 있는 과실생산관련 농기계

◦ 부속시설 :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3)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규모 : 1개소당 500백만원 (부속시설 :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가. 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 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 나. 추진방향

◦ 지역농업 생산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지원

◦ 기존시설 보완은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품목 전문조합(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지방자치단체

2) 지원대상사업

◦ 수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지방자치단체형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추진조직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증액가능), 자부담 50%

### □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가. 목적

◦ 과수 재배의 근간인 무병·우량·규격 묘목을 생산·검증·공급토록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소요가 많고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생산성 저위 과원의 갱신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과수산업의 경쟁력강화

### 나. 추진방향

◦ 적법하게 등록·판매되는 우량규격묘 생산·검증·공급을 지원하고 무병·우량 과수묘목 유통체계를 확립

◦ 무병·건전묘 재식을 통한 IFP[1], GAP[2] 등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체계 조기 정착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라. 지원내용

1) 지원대상자

◦ 우량무병묘 원종을 확보하고 이를 검증하며 증식을 담당할 중앙묘목관리센터를 설치 및 지원

◦ 품질보증된 우량묘목을 중앙묘목관리센터로부터 분양받아 적정규모 이상 생산하며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농협, 영농법인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1) 과실종합생산체계(Integrated Fruit Production)란 생태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에 우선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과실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체계임

2)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상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임

2) 대상과종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단감

3) 지원내용

◦ 중앙묘목관리센터
- 중앙모수포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확보 및 구입, 병해충방제 및 시비에 따르는 비용
- 병해충검사센터 및 시설장비 : 바이러스·바이로이드·문제 병해충 검정용 설비, 장비, 시약 및 인증시스템 확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묘목생산지원
- 자근묘 발근, 품종접목, 병해충검사센터 및 시설장비, 병해충 방제, 시비, 곁가지 발생 및 유인 등 무병묘목 생산 비용

4) 지원조건

◦ 중앙묘목관리센터
- 국고 100%

◦ 묘목생산지원
- 묘목생산포장 30,000평 기준으로 우량규격묘목을 적정주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국고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지원단가 : 1차년도 564백만원/개소당(2,3차년도 160백만원/개소 이내)

## □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가. 목적

◦ 농산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및 농산물 가공 업체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추진

◦ 가공용 농산물의 수요개발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나. 추진방향

◦ 농산물가공업체의 시설확장으로 생산·경영규모를 늘려 규모화 경제 촉진

◦ 시설현대화·자동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경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추진

◦ 오·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친환경산업으로 육성

◦ 저장시설 확충으로 원료농산물의 선도유지(안전성 높은 식품 생산)

◦ 포도·사과주 등 과실주의 장기저장·숙성을 유도하여 고급명주 개발 지원

### 다.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자

◦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국산과실을 이용하여 주류, 쥬스, 쨈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품목별 조직에 속하는 업체 또는 품목별 조직과 원료공급과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업체
- 국산과실 가공실적(비율)이 많은 업체
-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된 업체
- 신제품 개발, 판로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시장성이 높은 업체
- 정부지원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품질인증 업체 등

2) 대상사업

◦ 가공공장 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시설 및 용기, 오·폐수처리 시설, 수확후 전처리시설, 기타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시설과 기계·장비의 구입·설치 (부지구입 및 신규건설은 제외)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100%
- 융자상환조건 : 연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단가 : 개소당 500백만원

### 마.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여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융자사업의 공장증설, 현대화·자동화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식품 51150~359, 2001. 7. 2)의 '농산물가공공장'의 사후관리에 준하여 시설물관리 및 운영지도를 철저히 실시

## 2.3. FTA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

◦ FTA 기금의 조성 현황

- FTA기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2006년까지 총 4,752억원을 조달하였음(지방비, 자부담 제외) (표 2-2)

표 2-2. 연도별 FTA기금 조달실적(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계 |
|---|---|---|---|---|---|---|---|---|
| 조 달 | 1,605 | 1,632 | 1,515 | 2,013 | 1,954 | 1,441 | 1,488 | 11,648 |

주 : 2004~2007년은 조성실적이며 2008년부터는 계획임

자료 : 기획예산처, 기금현황, 각년도.
농림수산식품부, 2004년도 FTA기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시행지침서, 2004.

◦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

-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이4,1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폐업지원 2,600억원, 과원규모화사업 2,100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1,649억원,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 516억원 등의 순임
-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는 소득보전직불사업 480억원,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197억원, 과실가공품품질향상 사업 100억원, 과수전용농기계임대사업 96억원 등임(표 2-3)

표 2-3. 사업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명 | 재원 투입계획 | 백분비 | 성격 |
|---|---|---|---|
| 소득보전직불 사업 | 480 | 4.1 | 중앙정부추진 |
| 폐업지원 사업 | 2,600 | 22.0 | 〃 |
| 과원규모화사업 | 2,100 | 17.7 | 〃 |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 4,100 | 34.6 | 지방자율추진 |
|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 | 516 | 4.4 | 〃 |
|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사업 | 1,649 | 13.9 | 〃 |
| 과실가공품품질향상 사업 | 100 | 0.8 | 〃 |
| 과수전용농기계임대 사업 | 96 | 0.8 | 〃 |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사업 | 197 | 1.7 | 〃 |
| 계 | 11,838 | 100.0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FTA 기금의 운용실적

- 세부 사업별 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2004~2006년의 3년간 총 4,484억원이 집행되어 되어 전체 기금 조달액 1조2천억원의 35.6%가 집행되었음
- 세부 사업별로는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1,431억이 투입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폐업지원사업 1,421억원, 과원규모화 사업

761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480억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244억원 등이 투입되었음

- 반면 직접지불사업은 최근 과일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2-4)

표 2-4. 연도별 FTA기금 사업의 운용실적(2004~2006)

단위 : 억원

| 사 업 명 | 운용실적 | | | |
|---|---|---|---|---|
| | 2004 | 2005 | 2006 | 누계 |
| 과실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 407 | 927 | 896 | 2,230(49.8) |
|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300 | 574 | 557 | 1,431(32.0) |
|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 39 | 102 | 103 | 244(5.5) |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44 | 225 | 211 | 480(10.7) |
|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 | 9 | 26 | 20 | 55(1.2) |
| -과실 가공품품질향상 지원 사업 | 15 | - | 5 | 20(0.4) |
|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 - | 13 | 49 | 62(1.4) |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214 | 214 | 333 | 761(17.0) |
| 과수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 - | - | - | - |
| 과원폐업지원사업 | 246 | 524 | 661 | 1,421(31.8) |
| 계 | 867 | 1,678 | 1,939 | 4,484(100.0) |

주 : 국고 기준이며 ( )내는 백분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제3장 FTA 기금 평가 지표 개발

## 3.1. 성과지표 개발 방법론

◦ 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effect)뿐 아니라 정책의 형성과정(process)도 대상으로 삼고 있음[3)]

-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 집행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설계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
- 정책영향 평가(산출평가 outcome evaluation, 효과성평가 effectiveness evaluation) : 정책프로그램의 영향도를 평가. 정책영향 평가의 목적은 첫째, 정책대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평가, 둘째, 이러한 변화가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를 밝힘, 셋째, 이러한 변화가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보아 정당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평가, 넷째, 이러한 변화가 제기된 문제해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임
- 적합성(appropriateness) 평가 : 정책 프로그램이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 평가

◦ 일반적인 정책 평가기준은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적합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효과성(effectiveness) : 사업별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
- 효율성(efficiency) : 사업의 결과가 사업 집행과정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큰 가를 사업의 총편익(benefit) 대 총비용(cost)의 관점에서 평가. 편익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3)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1.

- 적절성(adequacy) :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사업에 대한 수요에 비추어 알맞은가를 검토
- 적합성(appropriateness) : 사업의 목표가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

◦ 정책의 효과평가는 산출평가, 성과평가, 임팩트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산출(output)평가는 정책에 의한 계량적인 산출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효과임
- 성과(outcome)평가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임
- 임팩트(impact)평가는 성과보다 더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는 효과로서 타부분에의 파급효과를 포함한 평가임

◦ 정책의 성과지표는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상호연계를 위해 상향식 및 하향식 두가지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 상향식 접근방법은 개별사업조직의 구체적인 산출물, 활동특성 및 성과요소를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방법임
  · 개별사업조직의 특성분석을 통한 핵심성과지표의 도출
  ·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지표로 통합하여 기관 차원의 성과지표 도출
- 하향식 접근방법은 기관의 미션이나 전략 등 설립목적에 대한 달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에서 출발하여 해당사업의 업무특성을 더 구체화하면서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임
  ·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분석 등을 통한 기관차원의 성과지표 도출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 도출
- 기관의 미션 및 전략을 세부 과제나 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이 용이한 것은 하향식 접근방법이지만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의 추상

성 때문에 하부조직이나 사업의 목표설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성과지표가 추상적으로 치우칠 수 있음
- 사업의 특성 및 현실적인 성과요소를 반영한 성과지표체계 수립은 상향식 접근방법이 용이하지만, 하위부서나 세부사업의 특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전체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상향식 접근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함

◦ 성과지표는 또한 투입(Input), 과정(Process, 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구분할 수 있음
- 상향식 또는 하향식으로 개발된 성과지표는 필요에 따라 4가지 과정을 골고루 반영하여야함

그림 3-1. 성과지표의 유형

| | |
|---|---|
| 투입<br>(Input) | ·예산,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br>: 사업예산, 지원실적, 지원대상 및 과제의 특성 활용 |
| 과정<br>(Process,<br>Activity) | ·사업진행 결과인 산출물의 양<br>: 기술적 성과를 사용하여, 목표달성도 및 기술축적효과, 산업경쟁력강화효과 등 활용 |
| 산출<br>(Output)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산출물을 나타내며 투입과 목표 산출물의 관계 규명<br>: 경제적 성과를 사용하여, 매출증대, 고용증대, ROI효과 등 활용 |
| 결과<br>(Outcome) | ·사업완료 후 1차적 결과물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br>: 파급효과(기업경쟁력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활용 |

◦ 성과지표들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효과성은 사업목표에 맞도록 성과가 적절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의 기여도,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들로 측정 가능함
- 효율성은 사업수행의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업별 정량적 성과로 측정 가능함

그림 3-2. 성과지표 개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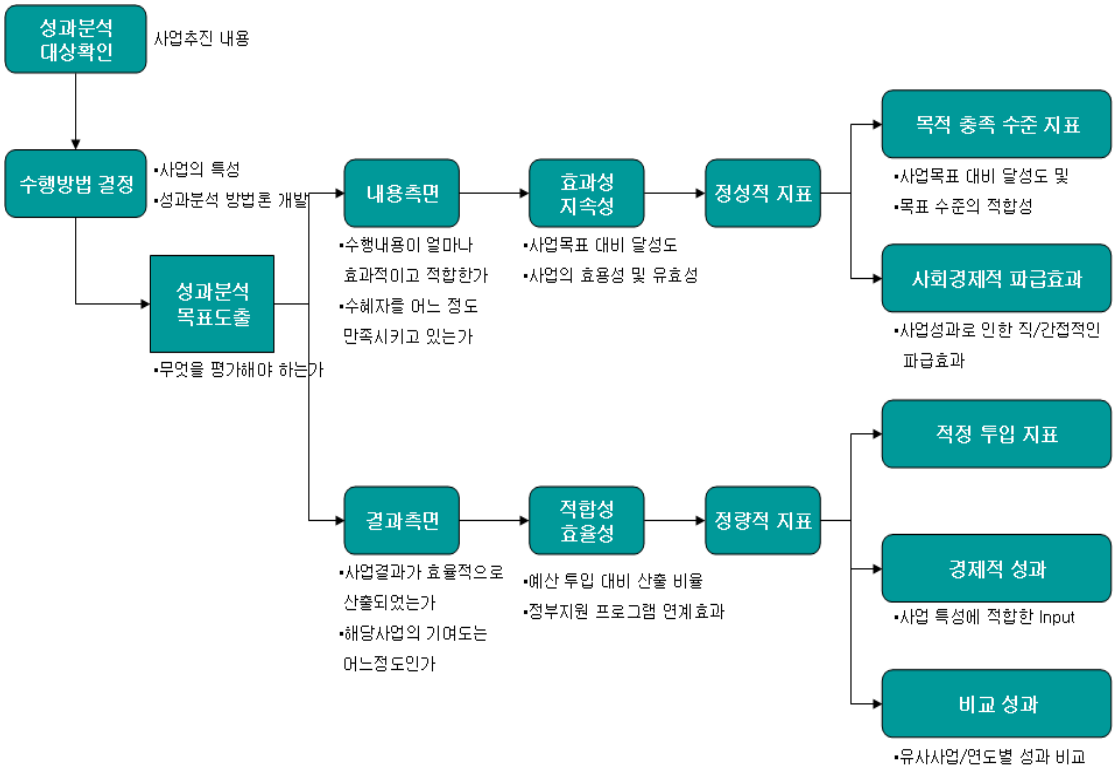


◦ 성과지표는 목표와의 인과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측정용이성, 검증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함

## 3.2. 정책평가 지표 및 타기금의 성과 지표

◦ 국무조정실에서는 표 3-1과 같은 기준에 의해 주요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있음

표 3-1.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기준

| 구분 | 평가기준 | 평가 착안사항 |
|---|---|---|
| 정책형성 | 정책목표의 타당성 |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가?<br>-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 | 계획내용의 충실성 |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br>-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 정책집행 | 시행과정의 효율성 |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br>-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 | 시행과정의 적절성 |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br>-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 정책성과 | 목표의 달성도 | - 사업추진결과 당초 설정한 계획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 | 정책효과성 | -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 (구)기획예산처에서는 매년 각종 기금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표 3-2)

표 3-2. (구)기획예산처의 기금 평가 지표

□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
◦ 경영혁신 노력(30%), 사업선정·사업내용의 적정성(20%), 사업운영성과·효율성 제고노력(50%)

□ 자산운용부문
◦ 수익률 등 계량지표(30%),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70%)

◦ (구)기획예산처에서는 세부 사업별로도 기금을 평가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표 3-3)

표 3-3. 기금평가의 세부 지표

| 평 가 지 표 | 배점 |
|---|---|
|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 20 |
|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10 |
|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5 |
|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5 |
|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10 |
|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 5 |
|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 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5 |
|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 50 |
| 1.3.1. 사업운영성과 | 30 |
|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 5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 15 |
|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 10 |
|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20 |
|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10 |
|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 10 |

자료 : 기획예산처

◦ 기획재경부에서는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여부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금의 존치 여부 평가시 평가지표는 설치목적의 유효성, 자체수입 기반, 정부의 사업수행 필요성, 재원-사업간 연계성, 사업선정의 타당성, 재원의 안정성, 타재원 발굴 가능성,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예산·타기금과의 차별성, 예산·타기금과 통합 필요성, 예산·타기금과 사업조정 필요성, 특별한 정책고려 필요성 등임

**<기금과 예산의 차이점>**

◦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을 통해 이루어짐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은 일반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용
- 기금은 부담금 등 자체수입,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고, 예산은 주로 조세를 재원으로 사용
- 기금은 자금을 조성·적립하여 운용이 가능하나, 예산은 당해 연도 세입을 통해 당해연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기금과 예산은 성립절차와 결산과정이 유사하나 기금은 계획변경, 항내 예산 변경 등이 예산보다 용이함

## 3.3. FTA 기금의 성과 지표

### 3.3.1. FTA 기금사업 전체

####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기금 설치 목적의 적절성
- 기금 설치 목적이 과수산업이 처한 환경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인가?
- 기금의 목적이 정부의 과수산업 정책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가?

- 기금의 목표(전체 목표 및 연도별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 계획 수립시 여론 수렴 및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하였는가?

◦ 수단의 적절성
-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한가?
- 국가 예산사업 및 지자체사업과의 차별적 필요성이 있는가?
- 기금의 세부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재원의 적절성
-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이 적절한가?
- 기금의 규모가 적절한가?

◦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기금 사업의 수혜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고 있는가?
- 수혜자 선정을 위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사업추진의 효율성(Efficiency)

◦ 기금사업 집행의 효율성
- 기금의 일반관리비 등이 적절한가?(타기금사업과의 비교 분석)
- 기금관리 조직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기금관리 조직의 내부 평가 및 보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사업 추진방법의 개선 노력이 있는가?
- 기금사업의 결산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가?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사업을 적절히 조정하였는가?

◦ 기금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기금의 세부 사업을 관리할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 기금사업 참여자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가?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의 시행 여부
- 기금 사업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한가?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산출량(Output)
- 당초 목표대비 사업의 집행실적 : 사업 물량 및 예산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생산구조 개선
  ※ 계량지표 : 호당 경작면적 등 규모화지수
- 생산성 향상 효과
  ※ 계량지표 : 과종별 생산비 및 노동생산성
- 가격안정화 효과
  ※ 계량지표 : 과종별 월별가격의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
- 주산지 출하 계열화 등 유통개선 효과
  ※ 계량지표 : 출하 약정농가 비율, 약정물량 대비 출하물량, 공동계산율, 공동브랜드 활용실적
- 품질향상 효과

◦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 기금 사업 수혜자는 이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 가. 세부 사업별 평가 지표

◦ 평가 대상 세부 사업 : 2007년부터 시작된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을 제외한 경쟁력제고 사업과 경영안정사업
- 경쟁력제고사업(7개) : 생산시설현대화, 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농기계임대, 거점APC, 가공품품질향상,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원

규모화사업
- 경영안정사업에는 소득보전직불 및 폐원지원사업이 대상이나 소득보전직불은 2006년까지 집행된 사례가 없어 폐업지원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1)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세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 세부 사업의 목표가 FTA 기금 전체의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 세부 사업의 목표가 정부의 과수산업 정책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가?

◦ 수단의 적절성
- 세부 사업의 지원수단(자금 지원 등)이 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 국가 예산사업과 지자체사업과의 차별적 필요성이 있는가?
- 대상 품목은 적절한가?
- 예산지원 기준은 적절한가? 보조 및 융자비율이 적절한가?

◦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세부 사업의 수혜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고 있는가?

2)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당초 목표대비 사업의 집행량, 예산 집행율, 사업 지원 실적 등

◦ 사업의 성과
- 세부 사업이 과수산업에 미치는 실제적인 성과는?
-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 세부 사업의 수혜자는 이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세부 사업별 성과 지표 분석 방법>**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 키낮은 사과원과 같은 세세부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 용수원 개발 및 경작로 정비의 효과 분석

◦ 과수농기계임대
- 농기계 임대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 거점APC
- 시설 가동율, 약정출하실적, 공동브랜드 부착실적, 공동계산실적, 품질개선, 농가조직화, 판로다양화 실적(2007년 실적이 있는 거점APC 대상 분석)

◦ 가공품품질향상
- 가공품 출하액 비중,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도

◦ 과수우량묘목생산
- 우량묘목 보급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효과 분석

◦ 과원규모화사업
- 과원 규모화의 실적과 성과 분석

◦ 폐업지원
- 과원구조개선 등 폐원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

## 나. 사업별 성과 분석을 위한 사업자 조사

◦ 설문대상 : 2007 사업자(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평가 대상 44개소

◦ 세부 사업별로 품질향상, 생산성제고, 유통개선 등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5점 스케일)

◦ 사업자(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FTA 기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사업자선정과정, 자금지원과정, 평가 등 사후관리, 사업성과 등에 대해 5점 스케일 조사

# 제4장 FTA 기금 사업 평가 결과

## 4.1. 세부 사업별 평가

◦ 평가 대상 세부 사업 : 2007년부터 시작된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을 제외한 경쟁력제고 사업과 경영안정사업
- 경쟁력제고사업(7개) : 생산시설현대화, 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농기계임대, 거점APC, 가공품품질향상,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원규모화사업
- 경영안정사업(1개) : 폐업지원

### 4.1.1.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가. 세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 "고품질·안전과실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표는 FTA 기금의 성격에 가장 적합하고 생산자의 요구가 큰 사업의 하나임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배제하며,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하는 사업 방향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 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하

며,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 방식도 적절함

## 나. 수단의 적절성

◦ 지원시설 및 장비로 고품질생산(우량품종 갱신, 키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재해예방(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등), 기타(시설포도시설과채류 등의 시설 개보수 등) 등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위주로 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원 비율은 정해진 사업단가에 대해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융자는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임

◦ 기존 농림사업에서는 개별 농가에 대한 보조가 폐지되고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만 지원되고 있어, 50% 보조사업인 FTA기금사업은 농가에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임

- 농업종합자금은 융자 100%로 연리 3%.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임

◦ 지자체 사업은 주로 착색봉지, 반사필름, 유인너트 등 소모품에 대한 보조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FTA사업과 차별화됨

◦ FTA기금 사업이 다른 농림사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자부담 능력(20%)이 미흡하여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이는 농가들이 과원규모화 등에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시설, 장비를 갖추는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파

악됨

◦ 세부 사업별 지원의 적절성
- IPM[4] 사업의 경우 현재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3년이후에도 지원해달라는 수요가 있으나 3년이후부터는 농가나 지자체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정부지원 이후 기존 관행방식으로 되돌아가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 키낮은사과원은 1년간 예정지관리(토양안정을 위해 콩, 목초 등 밭작물 재배)가 필수이나 해당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예정지 관리를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는 농가가 일부 있음(가을 굴취 후 이듬해 봄에 신규 묘목 식재)
- 모노레일 사업은 경작로 조성이 쉬운 평지에는 효용성이 적어 수요도 거의 없으나 경사지(통상 경사도 20도 이상) 과원이 많은 단감 중심으로 산간지역에 일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경북 영주 매년 4ha~5ha 설치, 김해 일부 산간지역)

### 다.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지원대상자는 사업지침에 의거 순위별로 적절하게 선정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영주의 경우 FTA 기금 과수산업발전심의회는 행정 2명, 의회 1명, 학계 1명, 기금운용주체 1명, 생산자단체 3명, 지역농가대표 2인으로 구성됨

◦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FTA기금사업의 성격상 선진화된 농가 위

4)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란 병해충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병해충 발생정도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여 생태계를 가능한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며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관리체계임

주로 되어야 하나 실제 지원은 규모별, 지역별 안배에 의한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2007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반드시 심사표를 작성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의무화함

### 라. 사업 관리의 적절성

◦ 참여 생산자는 지원 당시 사업단과 출하 약정을 맺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약시 제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수단이 부족함
- 현재의 출하 구조가 개인 혹은 작목반 출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일내에 농협과 같은 사업단을 통해 출하하기 어려울 것이나 생산시설 현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정출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미국의 선키스트와 같은 조합은 조합원이 약정 물량을 출하하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을 박탈함
- 약정 위반 농가는 경험적으로 전체 약정농가의 20% 수준으로 2007년부터 약정 위반 농가에 대해 향후 3년간 FTA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농가의 반발이 심해 제재주체인 행정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농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약문화 정착, 과수 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최소한의 제재는 엄격히 집행될 필요가 있음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농가의 수요가 큰 사업으로 사업 실적이 계획을 항상 달성하고 있음(표 4-1)

표 4-1.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

| | 2004 | | | 2005 | | | 2006 | | |
|---|---|---|---|---|---|---|---|---|---|
|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 예 산 | 669 | 299 | 44.6 | 576 | 574 | 99.8 | 557 | 557 | 100.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주요 세세부 사업은 2004~2006년간 투입된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686억원), 우량품종갱신(600억원), 관수관비시설(267억원), 시설하우스 개보수(256억원), 지주시설(207억원), 야생동물방지시설(169억원), 방풍망(154억원) 등의 순임(표 4-2)

표 4-2.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주요 세분류별 실적

단위 : 억원

| 세분류 | 단위 | 2004 | | 2005 | | 2006 | | 합계 |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 | ha | 87 | 124 | 336 | 168 | 533 | 394 | 956 | 686 |
| 우량품종갱신 | ha | 487 | 105 | 975 | 246 | 837 | 249 | 2,299 | 600 |
| 방풍망 | ha | 428 | 61 | 231 | 56 | 220 | 37 | 879 | 154 |
| 관수관비시설 | ha | 809 | 65 | 1,473 | 88 | 1,691 | 114 | 3,973 | 267 |
| 관정개발 | 공 | 20 | 1.2 | 380 | 23 | 862 | 61 | 1,262 | 85 |
| 지주시설 | ha | 537 | 61 | 629 | 76 | 600 | 70 | 1,766 | 207 |
| 과원퇴비사 | 개소 | 293 | 31 | 173 | 25 | 247 | 37 | 713 | 93 |
| 시설하우스 개보수 | ha | 82 | 29 | 368 | 196 | 202 | 31 | 652 | 256 |
| 야생동물방지시설 | ha | 90 | 20 | 411 | 84 | 465 | 65 | 966 | 169 |
| 서리피해방지시설 | ha | 224 | 14 | 172 | 19 | 93 | 17 | 713 | 50 |
| 미생물발효기 | 개소 | 209 | 8 | 108 | 8 | 265 | 9 | 582 | 25 |
| 모노레일 | ha | 20 | 2 | 59 | 11 | 60 | 10 | 139 | 23 |
| 친환경과원관리 | ha | n.a. | n.a. | 480 | 26 | 1,243 | 62 | 1,723 | 88 |

주 : 사업비에는 자부담 포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나. 사업의 성과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과수농가에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과수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량품종갱신사업 중에서는 키낮은사과원을, 그 외 세부사업 중에서는 비가림시설과 미세살수 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 우선 사과의 경우 일반재배에 비해 밀식재배는 노동력, 농약 등에 대한 소요가 적고 정형과 비율, 착색도, 상품과 비율이 모두 개선되는 등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투하노력과 품질향상 등으로 일반재배에 비해 손익분기점 도달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표 4-3)

표 4-3. 일반재배 대비 밀식재배의 경제적 효과[5)]

| 구 분 | 일반재배 | 밀식재배 | 증감(%) | 비 고 |
|---|---|---|---|---|
| ◦ 투하노력(시간/10a) | 162.4 | 110 | 67.0 | 일반재배 2003기준, 밀식재배 2001보고서 |
| - 농약살포량(지수) | 100 | 80 | 80.0 | 수관이 복잡하지 않아 방제 효과 높음 |
| ◦ 과실 품질 | | | | |
| - 정형과 비율(%) | 50 | 65 | 130.0 | 적과 등 결실관리 용이 |
| - 착색도 (a 값) | 10.9 | 24.3 | 222.9 | 수관 전체 광환경이 좋아 착색 양호 |
| - 상품과 비율(%) | 40 | 70 | 175.0 | 내외적으로 품종 고유특성의 과실 |
| ◦ 수량 (톤/10a, 성과기) | 2.2 | 4.5 | 204.5 | 재식거리 3.5x1.5m 기준, 고밀식시 증가 |
| - 초기결실 년령(년차) | 4 | 2 | 50.0 | 측지묘 재식, 이듬해부터 결실 |
| - 성과기 도달수령(년) | 7 | 4 | 57.1 | 일반 재배는 조건에 따라 차이 큼 |
| ◦ 경제성 | | | | |
| - 생산비(원/kg) | 890 | 400 | 44.9 | 2003 기준, 밀식재배는 추정치 임 |
| - 손익분기점(년) | 7-8 | 5 | 62.5 | 추정치, 일반재배는 조건별 차이 큼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또한 저수고 재배의 경우에도 일반 밀식재배보다 수량증가,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표 4-4)

표 4-4. 일반 재배 대비 저수고 재배의 경제적 효과

| 구분 | 수량(kg/10a) | | | | 노동력절감(5년차, 시간/10a)) | | | | |
|---|---|---|---|---|---|---|---|---|---|
|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전정 | 적과 | 수확작업 | 병해충 방제 등 | 계 |
| M.9 저수고 밀식재배 (200주/10a) | 2,280 | 3,360 | 4,120 | 4,500 | 25 | 24 | 40 | 61 | 150 |
| M.26 반밀식재배 (100주/10a) | - | - | 230 | 790 | 39.5 | 36.5 | 45.2 | 113 | 234.2 |
| 증감(%) | - | - | - | - | 63.3 | 65.8 | 88.5 | 54.0 | 64.0 |

주 : 수량은 식재 주수가 다르나 동일하게 200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저수고재배의 수량성이 월등히 높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5) 표 4-3과 표 4-4의 저수고 밀식재배의 경제적 효과는 대구 사과연구소에서 실시한 1996년~2002년간의 실험포장 결과이므로 실제 농가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성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따라서 키낮은 사과원(저수고 밀식재배)은 수고가 낮아 관리가 쉽고, 재식밀도가 높아 다수확이 가능하며, 광투광성이 높아 고품질 과실 생산이 가능하여 효과성이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됨

◦ 포도의 경우 비가림시설이 중요함

- 포도의 성숙기 및 출하기는 7월~8월인데 한국은 7~8월에 비가 많아 열과발생, 당도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 포도 비가림시설을 통해 생산비 절감(1,189원/kg 1,129원/kg), 당도향상(13.7BX 14.4BX) 등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또한 노동력도 관행재배에 비해 9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표 4-5, 4-6)

표 4-5. 포도 일반재배 대비 비가림재배시 생산성 비교

| 구 분 | 단 수 (kg/10a) | 생산비 (원/kg) | 비 고 |
|---|---|---|---|
| 일반재배(전국평균) | 1,999 | 1,189 | 관행재배 |
| 비가림재배 농가 | 1,999 | 1,129 | - |
| 증감(%) | - | 95.0 | 비가림재배 ÷일반재배 |

자료 : 농촌진흥청, 시설포도 재배의 경영합리화 연구, 충북도원, 1992.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2000년 농축산물 소득자료(노지포도)
농림수산식품부

표 4-6. 포도 관행재배 대비 비가림 재배시 투하노동력 비교

| 작업별 | 관행재배 | | 비가림 재배시 | 증감 |
|---|---|---|---|---|
| | 노 력 | 비율(%) | | % |
| 기타노력시간 | 186.8 | 76.9 | 186.8 | - |
| 봉지씌우기(추정) | 56 | 23.1 | 0 | - |
| 비가림비닐씌우기 | 0 | 0 | 40 | - |
| 계 | 242.8 | 100 | 226.8 | 93.4 |

자료 : 농촌진흥청, 시설포도 재배의 경영합리화 연구, 충북도원, 1992.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2000년 농축산물 소득자료(노지포도)
농림수산식품부

◦ 자두의 경우에도 비가림재배가 당도, 과중, 상품과 비율, 10a당 생산량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음(표 4-7)

표 4-7. 자두 일반재배 대비 비가림재배 품질향상 효과

| 구분 | 과중(g) | 당도(BX) | 상품과율(%) | 10a당 생산량 |
|---|---|---|---|---|
| 비가림 | 55.9 | 13.1 | 93.3 | 1,988 |
| 일반 | 46.9 | 12.4 | 85.6 | 1,399 |
| 대비 | 9.0 | 0.8 | 7.7 | 589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시험장, “2005년도 농사시험 연구결과 활용자료”, 2006, p78.

◦ 비가림 시설에 의해 상품성과 수량성이 개선되어 자두 재배 농가의 소득도 일반재배 농가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음(표 4-8)

표 4-8. 자두 일반재배 대비 비가림재배 소득효과

단위 : 천원/10a

| 구분 | 수량(kg) | 단가 (원/kg) | 조수입 | 경영비 | 소득 |
|---|---|---|---|---|---|
| 비가림 | 1,988 | 2,080 | 4,135 | 1,297 | 2,838 |
| 일반 | 1,399 | 2,080 | 2,910 | 636 | 2,274 |
| 대비 | 1.42 | 1.00 | 1.42 | 2.04 | 1.25 |

자료 : 2005년도 농사시험 연구결과 활용자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시험장, 2006, p78.

◦ 미세살수 시설은 사과의 경우 품종에 따라 (개)화기 피해율을 최소 6.5%에서 최대 21.5%까지 감소시키며 과중, 당도를 모두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표 4-9)

표 4-9. 사과 품종별 미세살수 시설에 의한 (개)화기 피해율

| 처리 | | 조사 화 총수 | 화기 피해율(%) |
|---|---|---|---|
| 후지 | 살수 | 612 | 0.8±0.4 |
| | 대조 | 300 | 7.3±0.6 |
| 추광 | 살수 | 300 | 8.3±1.4 |
| | 대조 | 309 | 29.8±2.0 |

자료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수분야 우수 영농활용자료 모음집, 2006, p52.

표 4-10. 사과 품종별 미세살수 시설에 의한 품질향상

| 처리 | | 과중(g) | 당도 | 산도 |
|---|---|---|---|---|
| 홍로 | 살수 | 246.0 | 15.4 | 0.68 |
| | 대조 | 235.6 | 14.1 | 0.67 |
| 쓰가루 | 살수 | 271.5 | 12.1 | 0.33 |
| | 대조 | 267.5 | 11.8 | 0.34 |

자료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수분야 우수 영농활용자료 모음집, 2006, p52.

◦ 한편 상기와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생산시설 현대화에 의해서 고품질 과수가 생산되면 그것이 적절한 마케팅 전략과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되어야만 농가 소득 증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에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유통개선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
- 공동마케팅 조직 사업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 사업과 연계되어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은 농가를 공동계산 조직의 핵심 요원화하고 이들에게 선도금 등의 지원을 집중하고 농가교육 등도 출하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가가 약정 출하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

- 그러나 현행 법제상 시설의 손괴, 멸실, 과오지급 등 외에는 기지원된 보조금 회수규정이 없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8조)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움

### 4.1.2. 과수전용농기계임대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가. 세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지원사업은 2006년을 마지막으로 지원 종료된 사업임

◦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의 목적 자체는 효율성과 규모화라는 과수산업 정책 및 FTA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함
- 규모의 영세성에 비해 구입비용이 과다한 과수 농기계를 임대토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이용을 통해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기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임대료를 적립하여 내구연한이 다할 경우 재 구매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함

나. 수단의 적절성

◦ 사업의 목적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업기계화 사업중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성이 강해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적음
- 농업기계화사업중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과 사업목적이 거의 유사함
- 지원대상도 과수주산지 조합 및 영농법인, 지역농협을 포함하고 있어 과수산업만의 별도 사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적음

◦ 자금지원에 의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일선 행정·사업조직이 임대 관리에까지 역량을 투입하기에는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
- 임대시 본인 소유만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고 내구연한이 다하기 전에 마모되어 임대료만으로 재구매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못함
- 여러 수요자가 있을 경우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절기를 놓쳐 영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음

◦ 결과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구매·임대되기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한 부속기기 임대에 치중하거나 특정 농가들에게 일임하여 대여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음

### 다.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수혜자 선정은 규모있는 생산자보다 영세한 생산자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됨
- 현장조사 결과 농기계 구입자금이 부족한 농가에게 일임 대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이 담보력 부족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음

### 라. 사업 관리의 적절성

◦ 불특정 다수 농가에로의 임대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농가에게 일임 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제재할 실질적인 장치가 없었음

- 농번기에 다수가 한꺼번에 임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농기계가 확보되어야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음
- 대여농가의 무성의한 관리를 방지해야만 임대료를 적립하여 재구매가 가능하나 임대 후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마모되는 경향이 있었음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사업 실적은 대체로 당초 계획을 달성함(표 4-11)

표 4-11.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예산 집행율

| 구분 | 2004 | | | 2005 | | | 2006 | | |
|---|---|---|---|---|---|---|---|---|---|
|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 국고지원액 | 50 | 8 | 16.9 | 26 | 26 | 100.0 | 20 | 20 | 100.0 |

주 : 정부의 지자체 교부액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나. 사업의 성과

◦ 농기계 임대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농가에게 신용대출을 보완해주는 성격이 강하여 실질적으로 이들 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수행하였음

- 즉, 영농자금 대출이 어려운 생산자에게 장기 대여방식으로 임대됨으로써 사실상 융자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

◦ 농기계 공동이용에 의한 이용효율 제고는 거의 달성되지 못함
- 고가 장비는 소수 생산자에게 일임 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례로 충북 E지역의 경우 SS분무기 32대를 모두 생산자에게 장기 대여하였음

◦ 임대사업이므로 다른 FTA 기금 사업, 예를 들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웠음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특정 구조물에는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하는 농기계가 있으나 임대방식으로는 농가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의 참여를 끌어낼 수 없음
- 일예로 우박피해방지 시설의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시설을 개폐하기 어려우므로 리프트기 수요가 높았음
- 따라서 차후에는 임대방식보다 구입지원(융자 또는 보조)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가 장기 대여될 경우에는 담보력이 부족한 생산자 중심으로 호응도가 높으나 일선 행정, 사업조직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표함
- 그 외 순수 임대방식으로는 생산자의 호응도가 낮다는 것이 사업조직의 대체적인 견해임

### 4.1.3.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가. 생산기반 조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과수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장기적인 정부 목표와 부합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으로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등이 기대되어 국내산 과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향상됨
- 수혜지역 선정시 대규모 수출단지를 우선 선정하므로 산지유통 규모화라는 정부의 장기 정책방향과 부합함

#### 나. 사업 수단의 적절성

◦ 생산기반 조성은 일종의 SOC 투자이므로 국고 보조라는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 사업내용이 용수개발, 경지정리, 농로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사업조직이 수행하기 어려움
- 사업의 혜택이 해당 지역 전체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특히 과수 생산자가 아니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생활기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

◦ 수출단지, 대규모 과수 생산지(수혜면적이 적어도 30ha 이상)를 우선 지원하므로 산지유통의 규모화, 수출경쟁력 향상 등 정부의 과수산업 육성 정책과도 부합함

◦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토록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

칙도 충족됨
- 기반시설 확충의 효과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므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할 필요가 있음

◦ 당분간 국고보조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
- 사업의 혜택이 해당 지역에 귀속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내용상 과수 생산자 외에 그 지역 주민 전체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 재정만으로 과수 산업의 기반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다.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시군 담당자와 농촌공사가 직접 현장 실사를 거치므로 부적절한 사업시행을 방지하고 있음
- 해당 지역 실사를 통해 마을도로, 생활용수 등 직접적으로 과수 생산과 무관한 목적은 시행에서 배제됨

◦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생산 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생산자 조직화 계획(또는 출하약정 체결 상황) 등을 확인하므로 부적격 수혜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앞으로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외형적 물량도 중요하지만 공동계산율 등 산지조직화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라. 사업 관리의 적절성

◦ 사업관리의 적절성, 객관성은 유지되고 있음

- 사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이 기대되는 지구만 본 사업을 실시하므로 선심성 지원 가능성은 낮음
- 사업 시공시 공종별로 경쟁 입찰에 붙이므로 객관성이 확보됨
- 사업실시 후에도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여 유지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시공 후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수혜 생산자 조직(충북 감곡 지역의 경우 생산자들이 수리계를 조직)이 부담토록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됨
- 다만, 전기료 이외 감가상각 또는 보수비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부담하기 어려워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일선 실무자의 견해임

◦ 아울러 지역 행정실무자들이 토목 및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사감리 등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음
- 현장에서는 시군의 전문성 미비로 농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음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기반조성 사업은 생산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차별 사업 계획이 대부분 달성하고 있음(표 4-12)

표 4-12. 생산기반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억원, %

| 구분 | 2004 | | | 2005년 | | | 2006년 | | | 2007년 | | |
|---|---|---|---|---|---|---|---|---|---|---|---|---|
|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 예산 | 53 | 39 | 73.1 | 102 | 102.0 | 100.0 | 104 | 103 | 99.5 | 83 | 83 | 100.0 |

주 : 지방비를 제외한 국고보조액 기준임
2007년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교부액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기금 결산보고서」, 각년도.

◦ 사업형태별로는 2유형(경작로+용수개발)이 대부분이며, 조사설계 면적에 의한 수혜면적은 2004~2007년간 총 1,972ha 수준임
- 3유형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원되지 않음(표 4-13)

표 4-13. 생산기반 조성 사업 연도별 유형별 조성 면적

단위 : ha

| 연 도 | 사업유형 | 사업량 |
|---|---|---|
| 2004 | 1유형 | 147 |
| | 2유형[1)] | 50 |
| | 조사설계면적 | 197 |
| 2005 | 1유형 | 16 |
| | 2유형 | 474 |
| | 조사설계면적 | 628 |
| 2006 | 1유형 | 37 |
| | 2유형 | 464 |
| | 조사설계면적 | 367 |
| 2007 | 1유형 | 24 |
| | 2유형 | 366 |
| | 3유형 | - |
| | 조사설계면적 | 780 |
| 계 | 1유형 | 77 |
| | 2유형 | 1,501 |
| | 3유형 | - |
| | 조사설계면적 | 1,972 |

주 : 단위가 km로 표시되는 사업은 조사설계면적 기준으로 면적기준과 단순합산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2년간에 걸친 사업이므로 조사설계면적이 반드시 각 년도 유형별 수혜면적 합산과 일치하지는 않음

## 나. 사업의 성과

◦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생활기반을 전체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므로 과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다양한 외부효과가 존재함

- 긍정적 효과로는 먼저 영농수익 증대를 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일 작부체계내의 생산성 향상, 도시근교일 경우 소득원 다양화, 과원 유지관리비 감소 등이 있음
- 생산비 절감 효과로는 통작시간 감소, 수송수단의 적재량 증가, 농기계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 절감, 농수로 유지관리비 절감, 농산물 손상 방지에 의한 포장비 절감, 영농부대비용 절감 등이 있음
- 품질향상 효과로는 적절한 용수공급에 의한 품질향상, 먼지피해 방지, 농산물 손상 방지 등이 있음
- 그 외 토지창출 기능, 영농편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안정 등의 기능이 있음

◦ 이러한 다양한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효과를 계측하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농로 포장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보고한 연구가 있음[6)]

- 현장에서도 복숭아의 경우 운반시 진동에 의해 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경작로가 확보됨으로써 상품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표 4-14)

표 4-14. 농로개설 전후 과일 손상 감소율

단위 : %

| 과 종 | 평 균 | 범 위 |
|---|---|---|
| 사과 | 3 | 1~4 |
| 배 | 3 | 1~4 |
| 복숭아 | 4 | 1~5 |
| 포도 | 3 | 1~5 |

주 : 김홍상(2001), p40.

6) 김홍상, 「밭기반 정비사업의 효과분석(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40.

◦ 기존 연구에 의하면 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ha당 적어도 6,000천원/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기반조성사업의 ha당 비용이 2,540만원 수준이므로 적어도 4년이내에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됨

- 선행연구(김홍상, 2001)에 의하면 과수 생산기반 조성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밭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실시후 계측가능한 효과가 ha당 5,814천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따라서 계측 불가능한 항목 즉, 생산자의 농촌 정주의사 증가, 취학아동 통학문제 해소, 경지 접근성 개선에 의한 영농규모화 등 다양한 항목까지 편입할 경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효과는 6,000천원/ha 수준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표 4-15)

표 4-15. 밭기반 정비 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단위 : 천원/ha

| 구 분 | 경제적 효과 |
|---|---|
| 영농수익증대 | 4,206 |
| 생산비 절감 | 831 |
| 품질향상 | 241 |
| 토지창출 | 403 |
| 영농편의 증대 | 32 |
| 생활환경개선 | 101 |
| 계 | 5,814 |

자료 : 김홍상(2001), p88을 단위면적(ha)로 환산하여 재계산

### 4.1.4.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가. 세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 거점 APC의 사업목적은 정부의 과수산업 정책 목표 및 FTA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됨
- 과실류 주산단지 중심으로 지원되어 과실류의 생산과 유통을 횡적·종적으로 계열 화하여 유통효율을 높이는 사업임
- 각각의 단위사업(과실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과수영농규모화사업 등)을 통해 생산된 과실류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집하되어 선별·저장·포장·상품화하여 출하하는 과실류 산지유통의 SOC시설의 성격을 띄고 있음
- 다만 2006년까지 FTA기금사업의 분야별 사업예산 운용실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7%(표 2-4 참조)로 전체 FTA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나. 수단의 적절성

◦ 지원수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획일적 지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구분하고,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조건을 달리하여 보조와 융자 및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예산의 지원효율을 높이고 있음

◦ 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모든 과수품종임

◦ 2008년부터 일반유형의 자부담율을 30%로 낮춘(한미 FTA 비준 전제) 것은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단체인 공공유형과 생산자단체인 일반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수익적 상업시설이 아닌 과실류 산지유통의 SOC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국고융자는 적용하지 않음
- 공공유형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일반유형은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2007년까지는 국고보조:지방비:자부담=30:20:50었으며 2008년부터 새로운 비율 적용)

### 다.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

◦ 사업신청 대상을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이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지유통기간시설임
- 일반유형의 경우 2007년까지 국고보조 : 지방비 : 자부담이 30:20:50이던 것을 40:30:30으로 조정하여 국고비중을 높이고 자부담 비중을 낮춘 것은 사업위험을 낮춰 역량있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단계의 진단과 평가를 거침으로서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1) 사업신청 단계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받아야 하며,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는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를 받아야함 2)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비공개 서면평가·현장평가·공개발

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함

◦ 다만, 운영주체로는 대규모 시설인 만큼 개별 조합보다는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둥이 담당하고 있으나, 참여 조합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초기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실제 운영에 있어 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담당하는 경우 거점APC와 지역조합 APC간에 경합이 발생하여 거점APC의 원물조달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보임

### 라. 사업 관리의 적절성

◦ 사업의 홍보는 매년 FTA기금사업추진 관계자 연찬회를 익년도 개시 전에 개최하여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알리고, 전문지 홍보, 집합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업예산의 시·도별 배분은 신청과 사업성진단 및 다단계의 사업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있어 절차 면에서는 적절함

◦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업성을 진단하기 위해 연중 진단체제 도입이 필요함

- 사업성 진단 신청은 관행적으로 1월말에 임박하여 접수되는 경향이 있고 유통공사도 모든 사업성 진단 신청을 모아 한꺼번에 진단을 실시하므로 심도있는 평가가 어려움
-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큰 변경이 없는 한 사업성 진단은 연중 신청, 연중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현장 실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표 4-16)

표 4-16.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자 선정 진단 및 평가일정

| 구 분 | 담당기관 | 일정 | |
|---|---|---|---|
| | | 현행 | 개선 |
| 기본계획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 | 전년도 12월 말 | 좌동 |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 | 1월말 기한 | 연중<br>(기한삭제) |
|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 2월5일 기한 | |
| 사업성진단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 2월말 기한 | |
| 사업신청자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시·도지사 | 3월말 | 2월 말 |
| 사업자 선정 심사 및 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 5월 중 | 좌동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③ 원예작물」, 2008.

◦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실시중이므로 사후관리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추진 관계자 연찬회를 매년 개최하여 추진과정에서 잘된 점은 공유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공동 모색하고 있음
- 준공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진실적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기존에 사업자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재심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사업중단 및 보류, 사업계획 보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그간 거점 APC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생산자 조직화 부진에 따른 원물확보 곤란, 참여농협의 기존 사업과의 경합성, 권한과 책임있는 경영주체 부재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완대책을 수립하였음

- 역량이 검증된 사업조직을 경영주체로 영입하기 위해 신규 지원의 경우 공동마케팅 조직수준(연 매출 100억원)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고 기존 시설 보완 지역은 적어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수준(연 매출 30억원)이 되어야 추가 지원가능토록 하였음
- 일부 시설규모가 과대하다고 추정되는 지역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였음
  · 의성연합 : 180억원 → 150(-30)
  · 거창연합 : 180억원 → 155(-25)
  · 순천연합 : 138억원 → 127(-11)
  · 충주원협 : 177억원 → 169(-8)
  · 대구경북능금(문경지소) : 169억원 → 149(-20)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국고기준 사업비 교부는 93.6% 수준에 이르고 있어 집행실적은 양호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까지 86,296백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중 80,735백만원이 교부되었음(표 4-17)

표 4-17.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의 국고예산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총 국고예산 (a) | 집행율 | | |
|---|---|---|---|
| | 계획(a) | 교부(b) | 집행율 |
| 213,719 | 86,296 | 80,735 | 93.6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③ 원예작물」, 2008.
농림수산식품부 교부액 자료

◦ 2017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목표 총 30개소를 위해 2007년까지 15개소 사업자가 선정되어 그 중에서 5개소가 준공되고 10개소가 건설 추진 중에 있음(표 4-18)

표 4-18.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추진현황(2007말 기준)

| 건설목표 | 사업자 선정 | 건설완료 | | | | 건설 추진 |
|---|---|---|---|---|---|---|
| | | 2005까지 | 2006 | 2007 | 계 | |
| 30개소 | 15 | - | 4<br>(사과2, 배1, 밀감 1) | 1<br>(사과) | 5 | 10 |

주 : ( )내는 주 사업 품목별 사업장 수

## 나. 사업의 성과

### 1) 처리물량

◦ 지역 내 생산량 대비 물량처리율은 현재 운영 초기 단계인 관계로 높지 않음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의 운영목표는 2004~2017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과실류 전체 생산량의 20%까지 처리하고, 사업수혜 지역의 과수농가의 전체 생산물량의 65%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임
- 물량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밀양은 27.9%를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소화하고 있어 운영효율이 가장 높으나 타 거점산지유통센터들은 사업개시 연혁이 짧아 아직 본격적인 출하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제주는 사업지역 내 생산이 전국 감귤생산의 약 50%정도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내 생산량 대비 사업실적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7.6천톤의 처리물량은 통상적인 거점 APC의 처리물량 1만톤 수준에 근접한 수치임

- 장수는 아직 안정적인 원물조달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비교해도 사업실적이 부진함(표 4-19)

표 4-19.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역별 생산물량 대비 집하물량(2007기준)

| 일반현황 | | | | 사업지역 생산물량 (a) | 07년도 집하물량 (b) | 관내물량 처리율 (b/a) |
|---|---|---|---|---|---|---|
| 사업지역 | 준공 | 총사업비 | 주품목 | | | |
| 장수 | 2006. 9 | 175억원 | 사과 | 28,834톤 | 576톤 | 2.0% |
| 안성 | 2006. 10 | 122억원 | 배 | 32,000 | 3,437 | 10.7 |
| 제주 | 2006. 11 | 60억원 | 감귤 | 237,120 | 7,657 | 3.2 |
| 밀양 | 2006. 11 | 36억원 | 사과 | 12,149 | 3,396 | 27.9 |

자료 : 각 거점 APC

◦ 실제 사업실적이 있거나 주관 사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계획대비 물량 달성율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물량 달성율이 저조함

- 주품목 기준으로 볼 때 연차별 물량계획 달성율은 밀양이 가장 높으며 안성, 제주도 사업초창기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밀양의 물량 달성율이 높은 것은 민간(얼음골 영농법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타지역의 물량까지 흡수하는데 제약이 없으나 그외 지역은 농협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물량을 끌어오는데에는 정서적인 반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함
- 또한 밀양, 제주는 기존에 얼음골영농조합법인과 제주감협이 사업을 운영해오던 지역으로서 사업역량과 경험이 이미 갖추어져 물량달성율도 높음
- 안성은 기존에 연합사업을 통해 광역 원물조달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고 초창기에 안성과수농협 주도로 사업을 운영한 결과 아직 사업초창기임에도 비교적 계획 대비 물량 달성율이 양호함
- 반면 장수의 경우는 제3섹터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를 구성하였

고 참여 농협, 영농법인 등의 의사결정도 불명확하여 계획대비 물량 달성율이 저조함

- 따라서 향후 거점APC 지원시에는 기존에 사업실적이 있고 주도 조직이 형성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표 4-20)

표 4-20.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계획물량 대비 집하실적(주품목)

| 사업지역 | 연차별 계획물량 | | | | | 2007 | 달성율(%) |
|---|---|---|---|---|---|---|---|
| | 2006 | 2007(a) | 2008 | 2009 | 2010(b) | 집하(c) | c/a |
| 장 수 | 1,000톤 | 5,000 | 6,500 | 8,000 | 10,000 | 576톤 | 11.5 |
| 안 성 | 3,500 | 7,000 | 8,500 | 10,000 | 12,000 | 3,437 | 49.1 |
| 제 주 | 10,000 | 15,000 | 20,000 | 20,000 | 20,000 | 7,657 | 51.0 |
| 밀 양 | 3,200 | 3,700 | 4,200 | 4,500 | 4,700 | 3,396 | 91.8 |

주 : 제주는 출하물량 기준임
자료 : 각 거점APC

◦ 선별기 가동율은 거점APC의 입지와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선별기 가동율은 안성이 72.7%로 가장 높고 장수는 16.1%로 가장 낮음
- 안성은 사업주체의 역량과 행정 및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사업지도가 어우러져 다양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선별기 가동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짐
- 동시에 배는 과육이 무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선별기의 처리능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도 가동율이 높게 나타난 한 이유임
- 제주와 밀양은 사과 및 감귤의 집산지로서 두 사업자 모두 기존에 판매루트와 사업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선별기 가동율도 높음
- 장수는 지역의 주 생산품목인 조생종사과(홍로등)가 만생종사과가 출하되기전 10월초순까지만 판매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인근 시군에서 조달키로 예정되어 있던 만생종사과의 원물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참여농협과 사업경합) 선별기 가동율도 낮게 나

타남(표 4-21)

표 4-21.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기 가동율

| 지역 | 연간기준일 (a) | 선별능력 (시간당) | 처리능력 /일 (b) | 07년 선별기처리 실적(c) | 가동일수 (d=c÷b) | 가동율 (d÷a) |
|---|---|---|---|---|---|---|
| 장수 | 150 | 7톤 | 56톤 | 1,350 | 24.1 | 16.1 |
| 안성 | 150 | 3.8 | 30.4 | 3,315 | 109.0 | 72.7 |
| 제주 | 150 | 11.6 | 92.8 | 7,656 | 82.5 | 55.0 |
| 밀양 | 150 | 5.2 | 41.6 | 3,558 | 85.5 | 57.0 |

주 : 1일 처리능력은 선별기 1일 최대 선별능력의 70%와 1일 8시간을 가정하여 산출함

자료 : 각 거점APC

◦ APC가 취급하는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지 않는 생산의 계절성이 있어, APC의 핵심시설인 저온창고를 기준으로 가동율과 활용율을 추정하면, APC 상황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표 4-22)

표 4-22.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창고 활용율

| 지 역 | 저온창고 면적 | 동시 저장능력 | 총 저장실적 | 활용율 |
|---|---|---|---|---|
| 장 수 | 1,715㎡ | 1,624톤 | 878톤 | 54.1% |
| 안 성 | 2,470 | 1,000 | 3,315 | 331.5 |
| 밀 양 | 1,255 | 690 | 3,568 | 517.1 |

주 : 동시저장능력은 1회 저장시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총 물량
제주는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지 않았음

◦ 사업초기임을 감안하면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물량이 적은 곳은 선별기 및 저온창고 활용율도 낮아지므로 사업물량 확대 및 비수기 저장품목 발굴을 통해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가 요구됨

2) 고품질 브랜드상품화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고가의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설치하여, 당도를 기준으로 차별화된 브랜드상품을 출하함으로서 과수의 고품질브랜드상품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도입된 당도선별기에 의해 고당도 상품이 출하됨으로써 전반적인 품위 개선 유도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07년부터 대형유통업체에서 고객만족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일류  당일 판매품의 과일당도표시제에 대응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촉효과도 거두고 있음(표 4-23)

표 4-23. 당도 선별 기준별 사용브랜드

| 장 수 | | 안 성 | | 제 주 | | 밀 양 | |
|---|---|---|---|---|---|---|---|
| 15Brix 이상 | 산드림골드 | 12Brix 이상 | 안성마춤 | 11Brix 이상 | 불로초 | 14Brix 이상 | 얼음골 사과 |
| 14Brix 이상 | 산드림 | 11Brix 이상 | 잎마춤 | 10Brix 이상 | 귤림원 | 13Brix 이하 | 일반품 |
| 13Brix 이하 | 일반품 | 10Brix 이하 | 일반품 | 9Brix 이하 | 일반품 | | |

◦ 거점APC에 도입된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통해 농가별 품위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농가별 맞춤형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통해 상품화를 하면, 선별 등급별 산출물량 비율로 관내 출하자의 영농재배 기술수준을 알 수 있고, 농사를 잘 짓는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가 구별됨
- 개인별로 나타난 품질 등급 산출물량 자료를 근거로 고품위 상품비중을 높일 수 있는 맞춤식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고품위 상품비중을 높여 나가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가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표 4-24. 당도 기준별 상품화율

| 장수 | | 안성 | | 제주 | | 밀양 | |
|---|---|---|---|---|---|---|---|
| 구분 | 상품화율 | 구분 | 상품화율 | 구분 | 상품화율 | 구분 | 상품화율 |
| 15Brix 이상 | 15.3 | 12Brix 이상 | 0.8 | 11Brix 이상 | 11.0 | 14Brix 이상 | 38.7 |
| 14Brix 이상 | 56.4 | 11Brix 이상 | 41.7 | 10Brix 이상 | 17.2 | 13Brix 이하 | 61.3 |
| 13Brix 이하 | 28.3 | 10Brix 이하 | 57.5 | 9Brix 이하 | 71.8 | | |
| 계 | 100% | 계 | 100% | 계 | 100% | 계 | 100% |

주 : 제주는 생산량이 제일 많은 노지감귤 기준

◦ 거점APC에 의해 선별된 상품은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당도선별에 의해 브랜드가 달라지며 이는 브랜드별 가격차별화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표 4-25)

표 4-25. 제주감귤 등급별 평균 경락가격

| 구 분 | 11Brix이상 (불로초) | 10Brix이상 (귤림원) | 9Brix이하 (일반품) |
|---|---|---|---|
| 경락가 | 3,200원/kg | 1,686원/kg | 1,182원/kg |
| 대비율 | 271 | 143 | 100 |

주 : 생산량이 제일 많은 노지감귤 기준이며, 대비율은 9Brix이하품을 100으로 봄

3) 생산자 조직화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생산자 조직화 수준을 권역내 농가 대비 약정농가 비율로 추정할 때 안성, 밀양은 비교적 높으나 장수와

제주는 매우 낮음

- 장수는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하였으나 물량 달성율, 대형 유통점 점유율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생산자 조직화 수준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제주는 처리물량이 적지 않음에도 (생산집중도가 높아)권역내의 생산물량과 농가수가 매우 많고 기존에 작목반 단위로 운영되던 영세 선별장이 다수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약정농가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제주의 약정농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립 지원시 전제조건이었던 자구노력(영세선별장 구조조정)을 신속히 강화하여 거점 산지유통센터 중심의 출하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표 4-26)

표 4-26. 지역내 과수농가 대비 약정 농가 수

단위 : 인, %

| 지 역 | 권역내 과수 농가(A) | 약정농가수(B) | 약정농가비율(B/A) |
|---|---|---|---|
| 장 수 | n.a. | 202 | - |
| 안 성 | 800 | 261 | 32.6 |
| 제 주 | 29,664 | 313 | 1.1 |
| 밀 양 | 3,742 | 1,047 | 28.0 |

◦ 공동계산율이 100%에 이르러 소비지와의 대량거래를 실현해 나자고자 하는 정책목표 실현의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 안성은 물론 사업실적이 저조한 장수에서도 수탁방식이 주된 물량수집방법이며, 단순 수탁이 아닌 공동선별·공동출하 즉, 공동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영농업인이 운영주체인 밀양은 매취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물량 확보방식에 차이를 보임
- 또한 장수 이외 3개소는 대형유통점과의 거래비중이 높아 판매처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됨(표 4-27)

표 4-27. 총출하량 대비 판매 유형

단위 : 톤, %

| 지 역 | 출하물량 | | | 대형유통 업체 출하량 | 공동 계산물량 | 공동 계산율 | 대형유통 업체 출하율 |
|---|---|---|---|---|---|---|---|
| | 매취 | 수탁 | 계 | | | | |
| 장 수 | 68 | 1,028 | 1,096 | 180 | 1,096 | 100.0 | 16.4 |
| 안 성 | 52 | 1,928 | 2,980 | 1,760 | 2,980 | 100.0 | 59.1 |
| 제 주 | 4,199 | 3,458 | 7,657 | 3,370 | 7,657 | 100.0 | 44.0 |
| 밀 양 | 1,836 | 991 | 17,997 | 15,786 | 17,997 | 100.0 | 87.7 |

주 : 매취물량은 공동계산으로 계상

4) 유통비용과 농가소득

◦ 사업초기이므로 당초 예상되었던 물류·유통비용 절감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 출하비중이 높은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할 때, 필수적으로 팔레트에 적재하여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공동 운송하여야 하므로, 중소형 차량에 박스를 적재하는 관행출하보다 상하차 작업비와 시간이 줄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총체적인 물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현단계는 개장초기로 물량 규모가 적어 충분한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지는 못함
- 제주의 경우 브랜드 상품은 선별비가 1,100원/kg 수준으로 일반 선별장의 900원/kg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농가가 직접 선별하는 일반 선별장에 비해 선별작업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물량이 늘어날 수록 선별대기 시간이 길어져 시간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임
- 2007년 말에 개장한 영주 거점APC의 경우에도 소규모 선별장과 달리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많아 오히려 일반 APC에 비해 상자당 500원정도의 선별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하루 약 100분의 시

간로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4-28)

표 4-28. APC와 일반 선과장의 선별비 비교(2007년기준)

단위 : 원

| 구 분 | | 불로초 | 귤림원 | 일반품 |
|---|---|---|---|---|
| 선별당도기준 | | 11Brix이상 | 10Brix이상 | 9Brix이하 |
| 선별비 | APC | 1,100 | 1,000 | 900 |
| | 외부 | 900 ~ 700 | | |

주 : 제주 노지감귤 2007년 기준, 가락평균경락가는 특, 상, 보통을 비교 가격으로 적용

◦ 그러나 표 4-25에서 보듯이 당도선별에 의해 브랜드별 가격차등화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는 선별비 증가를 상회하는 가격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5) 운영손익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수익성은 장수와 안성의 경우 개장초기로 아직 사업기반을 견고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나, 기존의 사업장에 소규모로 지원한 밀양과 사업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제주는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대규모 고정시설이 투하된 거점APC는 충분한 물량과 판매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으나 장수와 안성은 아직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함
- 다만 밀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어도 수익성의 측면만 보면 사업손익은 사업기반과 운영주체의 경영관리 능력에 좌우된다고 판단됨
- 또한, 밀양의 경우 주력 품목인 사과 외에 비수기에 대비한 다양한 품목(수박, 딸기, 감, 토마토 등)을 약 13천톤 취급하여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표 4-29)

표 4-29. 거점APC 사업손익 (2007년기준)

단위 : 백만원

| | 이 익 | | | 비 용 | | | 손 익 |
|---|---|---|---|---|---|---|---|
| | 매출이익 | 기타수익 | 계(a) | 판관비 | 기타비용 | 계(b) | (a-b) |
| 장 수 | 602 | 125 | 727 | 808 | 245 | 1,053 | -326 |
| 안 성 | 362 | 365 | 727 | 755 | 115 | 870 | -143 |
| 제 주 | 2,380 | 632 | 3,012 | 2,691 | 319 | 3,010 | 2 |
| 밀 양 | 4,400 | 227 | 4,627 | 4,201 | 25 | 4,226 | 401 |

주 : 밀양은 영농법인 실적만 표기한 것임

◦ 거점APC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산지유통센터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 품목의 출하채널을 활용하면서 생산시기가 겹치지 않는 과채류를 중심으로 사업품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업품목의 확대는 추가시설을 필요로 하고 과일류 이외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도입해야하므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품목(과채류 중 수박, 참외 등) 중심으로 선별해야할 것임

### 4.1.5. 과실가공품품질향상

####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가. 세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지원사업(과실류 고품질 생산, 과수생산기반 정비, 과수 우량묘목 지원, 과원영농규모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 늘어날 고품질 과실생산 물량을 가공원료로 흡수함으로써, 생산물량 증가가 시장 출하물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출하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서 과실류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과수산업 정책 목표와 FTA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나. 수단의 적절성

◦ 과실가공시설은 과실류 생산·유통을 위한 SOC시설이라기보다는 다른 FTA기금사업과 연계하여 가공사업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장기 임대자금 지원 방식은 적절함

- 그러나, 과실류 가공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가 소액이며, 유사한 성격의 예산지원사업이 있어 2007년부터 농특회계 사업(농업경영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차별성이 적음

◦ 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모든 과수 품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006년까지 지원된 품목은 유자 한 품목뿐임

◦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가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사업 목적이 명확하나, 가공품의 판로 확보 불투명 등으로 사업수요가 매우 적고, 산지가공업체의 영세성으로 정책자금 차입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신청이 많지 않음

- 농산물 가공사업은 가공된 상품의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생산시스템을 확보  하는 것보다 어렵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작용하므로, 판매망이 갖추어져 있는 기존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 다. 사업 관리의 적절성

◦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비집행 세부명세를 대출취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지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기성고 확인 후에 융자금을 실행하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사후관리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의 농산물가공공장의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시설물을 관리토록하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신청조직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융자에 따른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실제 자금 집행이 매우 부진함(표 4-30)

표 4-30.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의 계획대비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

| | 사업량 | | | 사업비 | | |
|---|---|---|---|---|---|---|
|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 2004 | 3 | - | - | 1,530 | - | - |
| 2005 | 6 | - | - | 2,675 | - | - |
| 2006 | 2 | 1 | 50 | 1,000 | 500 | 50 |

### 나. 사업의 성과

◦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실적은 1개소에 지원금이 5억원에 불과하여, 가동 첫해인 2007년도 원료 수매량이 570톤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볼 때, 사업성과는 미미함

## 4.1.6. 과수우량묘목생산

###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가.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목표의 적절성

◦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은 FTA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정부의 과수산업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사업임
- 우량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이 기대되므로 국내산 과일의 종합 경쟁력이 확보됨
- 기존에 종자산업법에서 종자업에 대해 등록 및 보증제도[7]를 운영토록하고 종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과수산업에서는 무등록 종자업자가 묘목 수요량의 상당부분을 공급하는 것이 현실임
-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선 6대과종(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감귤)에 대해 무병묘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우량묘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우량 묘목 묘포장을 설치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음

◦ 현재 묘목 유통이 정비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묘

7) 현재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을 영위하기 위해 종자관리사를 1인이상 고용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하고 있음 또한 종자를 판매 보급할 때에도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통해 그 품질을 보장토록하고 있으며 보증되지 않은 종자를 공급할 때에는 그 품질을 표시토록하고 있음

목 공급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청되므로 시의성이 있는 사업임.

- 과일 묘목 공급이 미등록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묘목의 품질에 대해서도 보증이 없어 생산성 하락은 물론 농업인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 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정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묘목공급은 경쟁력 향상을 저해함은 물론 생산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상받을 수단이 없음
- 2007년 현재 과수 분야에 등록된 종자업체는 249개소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수천여개의 업체가 미등록 품종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하고 있음(표 4-31)

표 4-31.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 연 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계 |
|---|---|---|---|---|---|---|---|---|---|
| 과 수 | 174 | 175 | 188 | - | 210 | - | 235 | 249 | 1,231 |

자료 : 국립종자원

## 나. 수단의 적절성

◦ 현재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의 관리체계는 우량묘목 확보 및 공급의 중요성에 부합되게끔 체계화되어 있음

- 우량 묘목의 확보 및 공급은 전체 과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시 단계에서부터 정부(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와 2010년에 이르는 장기 종합계획을 협의하고, 농촌진흥청이 기술적인 협력을 담당하며, 과수농협연합회의 관리하에 주요 산지 농협 또는 영농법인들이 참여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전체 무병묘의 계통을 유지·생산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부지원으로 추진 중이나 기타 묘목생산자들의 묘포장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이 20% 수준으로 수익자 부담원칙도 일정부분 충족하고 있음

- 대상품목은 우선 과일생산 비중이 큰 6대 과종중심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조기에 나타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다.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

◦ 현재 무병원모수가 중앙과수묘모관리센터에서 생육·증식되고 있는 단계임

◦ 지역별 우량묘목을 생산공급할 묘목생산자는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갖추고 일정규모(10ha) 내외의 묘포장을 운영할 역량있는 자로 구성하여 사업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음(표 4-32)

표 4-32. 지역별 묘목 생산자 선정 현황

| 지 역 | 묘목 생산자 |
|---|---|
| 충 북 | 충림과수영농조합법인 |
| | 임흥과수영농조합법인 |
| 충 남 | 예산능금농협 |
| 경 북 | 대구경북능금농협 |
| | 민수농원영농조합법인 |
| | 색깔포도영농조합법인 |
| | 경산키낮은사과영농조합법인 |
| | 대경포도영농조합법인 |
| 전 남 | 청매원영농조합법인 |
| 제 주 | 한국감귤육종종묘생산영농조합법인 |
| | 제주감귤농협 |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사업자 선정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함
- 학계, 연구소, 과수농협연합회 등 총 7명

### 라. 사업 관리의 적절성

◦ 사업관리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의 종합추진계획은 중앙 정부와의 협의로 수립하였고 그 실행을 위해 매년 연차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구하고 있음

◦ 2010년까지의 종합추진계획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수립하였고 그 실행을 위해 매년 연차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구하고 있음

◦ 유관 정부기관과의 협조로 사업추진의 객관성, 효과성을 기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무병원종을 중앙모수포에 분양하고,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과수농협연합회)는 원모수를 육성·보존·증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아래 우수묘목생산 지원 관리체계 참고)
- 중앙모수포의 필요 시설 건립시 식물검역원이 협조하여 격리시설 설계를 확정하였고 실제 설계는 농촌공사가 담당하여 전문성을 기함
- 해외에서 원모수 도입시 식물검역원과 원예연구소 관계자가 현지 점검 후 대목 원모수를 도입하였음

그림 4-1.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의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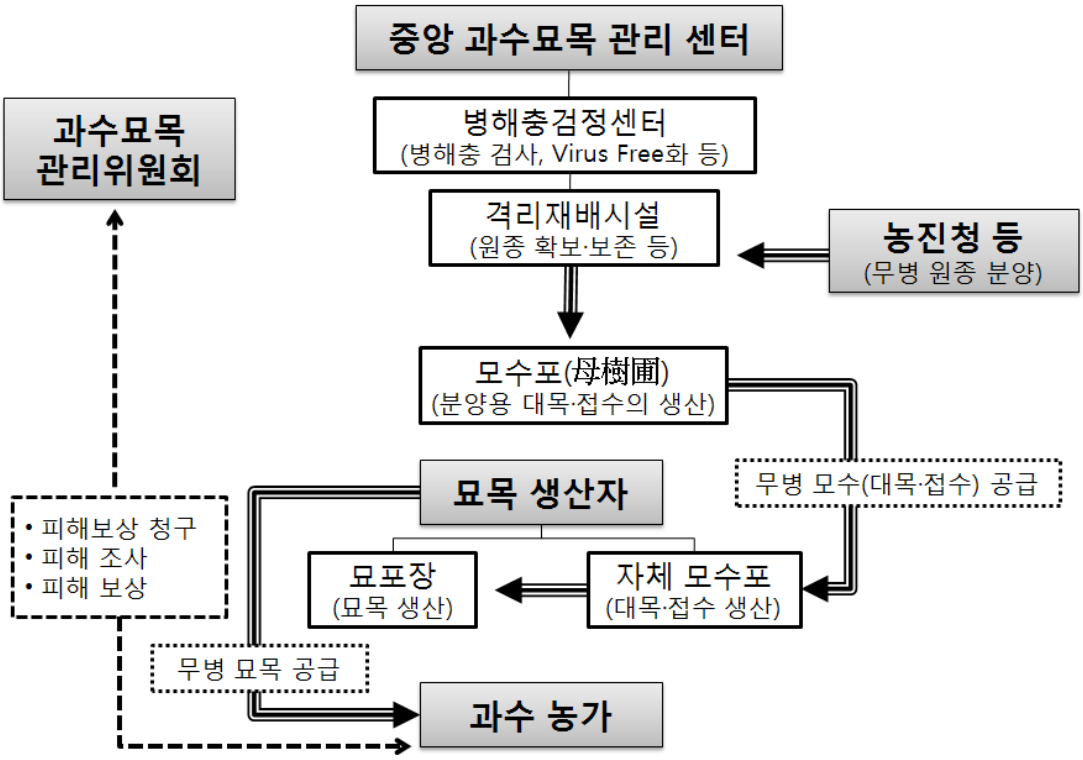


◦ 사업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실행상황을 점검·정산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음

◦ 사업체계상 우량묘목 공급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부재하므로 과수묘목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우량묘목 공급을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과수농협연합회가 관리하고 각 지역 묘목생산은 지역별 선정 업체(농협)가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의 과수묘목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함
- 현재 피해보상(바이러스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 피해조사, 피해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과수묘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격상시킴으로써 무병 검증 기준 수립, 적정 공급량 조절 등 우량묘목 공급 조절에 대한 종합관리를 담당케 할 수 있음

◦ 과수묘목의 경우 구체적인 품질 검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한 검사기준 수립이 필요함

- 현재 종자산업법(제128조, 제130조)에서도 보증종자 생산을 위해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그쳐 세부적인 지침이 없음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사업비 집행은 초기에는 지체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계획대로 집행되어 예산집행율이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음(표 4-33)

표 4-33. 우량묘목 생산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단위 : 억원, %

| 구분 | 2004 | | | 2005 | | | 2006 | | |
|---|---|---|---|---|---|---|---|---|---|
|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 | 25 | 2 | 6.0 | 21 | 13 | 61.4 | 50 | 49 | 98.8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주요 시설이 문화재 발굴 등으로 다소 늦춰지긴 했으나 예정대로 설립이 완료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음

표 4-34.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시설 설치 내역

| 구 분 | 면 적 |
|---|---|
| 격리시설 | 8,264㎡ |
| 증식모포장 | 59,504㎡ |
| 부대시설 | 1,411㎡ |
| 농기계장비 | ss기 등 10종 |
| 병해충검정센터 | 생육상(4동)<br>조직배양실(125㎡)<br>인공생육실(93㎡)<br>병해충검정실(95㎡)<br>바이러스 등 검정장비 |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6대 과종의 무병원종 확보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우선 사과, 포도에 대해 무병원종이 일부 확보되었음

- 무병원종의 확보가 곤란했던 것은 그간 국가의 체계적인 품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무병원종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농촌진흥청에서도 품목별로 무병원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향후에는 무병원종을 확보하는 별도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야생 실생대목을 사용하는 배, 복숭아, 단감은 야생종을 확보(현재 전량 중국에서 수입, 일부 자체충당)하고 바이러스를 검증하기 위한 무병실생 생산포의 별도 운영이 필요함(표 4-35)

표 4-35. 사과, 포도 무병 원종 도입 현황

| 과 종 | 품 종 | 수입국 |
|---|---|---|
| 사 과 | M9, M29, MM111, B9, 수분수 4종 | 네덜란드 |
| 포도 대목 | 5BB, 8B, 101-14, SO4, 글루아루 | 일 본 |
| 포도 품종 | 아스까 거봉, 동부계 거봉, 델라웨어 | 일 본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무병원종 확보가 어려우므로 원종 확보 지원이 강화되어야함

- 2004년 이후 무병원종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병원종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 한편 주요 과수생산 지역에 145ha의 묘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2007년 현재 87ha가 이미 조성되었고 2008년에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당초 계획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과의 경우 사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농협이나 법인이 많지 않아 묘포장 조성이 다소 지체되었으나 역량있는 업체를 발굴하

고 추가선정함으로써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표 4-36)

표 4-36. 품종별 지역별 묘포장 조성 현황

단위 : ha

| 구 분 | | 계획 (a) | 기조성면적(ha) | | | 계획 | 총조성 면적 (b) | 증감 (a-b) | 비고 |
|---|---|---|---|---|---|---|---|---|---|
| | |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사 과 | 예산능금 | - | 10.0 | - | - | - | 10.0 | - | - |
| | 경북능금 | - | 1.7 | 5.0 | 3.3 | - | 10.0 | - | - |
| | 충림과수 | - | - | 14.9 | - | 7.7 | 22.6 | - | - |
| | 경산사과 | - | - | 11.2 | - | - | 11.2 | - | - |
| | 민수농원 | - | - | - | 6.0 | 4.0 | 10.0 | - | - |
| | 임흥과수 | - | - | - | - | 5.3 | 5.3 | - | - |
| | 사과소계 | 101 | 11.7 | 31.1 | 9.3 | 17.0 | 69.1 | -31.9 | 미완 |
| 감 귤 | 제주감귤 | - | 9.8 | 0.5 | - | - | 10.3 | - | - |
| | 감귤육종 | - | - | | 7.7 | - | 7.7 | - | - |
| | 감귤소계 | 11 | 9.8 | 0.5 | 7.7 | - | 18.0 | 7.0 | 완료 |
| 포 도 | 대경포도 | - | - | 5.9 | - | - | 5.9 | - | - |
| | 색깔포도 | - | - | | 10.0 | - | 10.0 | - | - |
| | 청매원 | - | - | | - | 3.0 | 3.0 | - | - |
| | 포도소계 | 22 | - | 5.9 | 10.0 | 3.0 | 18.9 | -3.1 | 미완 |
| 배 | 충림과수 | - | - | | - | 2.0 | 2.0 | - | - |
| | 청매원 | - | - | | - | 2.0 | 2.0 | - | - |
| | 배소계 | 5 | - | - | - | 4.0 | 4.0 | -1.0 | 미완 |
| 복숭아 | 임흥과수 | - | - | - | - | 3.0 | 3.0 | - | - |
| | 복숭아소계 | 3 | - | - | - | 3.0 | 3.0 | - | 완료 |
| 단 감 | 색깔포도 | - | - | - | 1.0 | - | 1.0 | - | - |
| | 청매원 | - | - | - | - | 1.0 | 1.0 | - | - |
| | 단감소계 | 3 | - | - | 1.0 | 1.0 | 2.0 | -1.0 | 미완 |
| 총 계 | | 145 | 21.5 | 37.5 | 28.0 | 28.0 | 115.0 | -30.0 | - |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그간 묘목 유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품질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과수묘목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운영중임

- 묘목생산자는 판매금액의 일정비율(10%)을 피해보상 재원으로 적립해야하며 2007년까지 3억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 장기적으로 적립금으로 전액 피해보상을 하기보다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 체계 수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요율은 재해보험 등 유사한 다른 보험들을 비교하되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 나. 사업의 성과

◦ 사업추진 연혁이 3년여에 불과하여 현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과일 묘목은 무병 원모수를 증식하고 이를 일반 농가에 공급하여 과일을 생산하기까지 1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됨
- 현재는 중앙모수포에서 원모수를 증식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생산비용 절감, 수확량 증가, 품질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실제 농가의 과원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품종별 생산성, 우량 묘목에 대한 실험결과 등을 통해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는 있음

◦ 또한 품종별로 감염과에 비해 정상과는 중량이 더 나가고 당도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 이 사업의 결과로 과수 산업의 품질 향상도 기대됨(표 4-37)

표 4-37. 사과 품종별 ASSVd 감염과실의 과실특성

| 품 종 | | 과 실 특 성 | | | | 비고 |
|---|---|---|---|---|---|---|
| | | 과중(g) | 경도(kg) | 당도 | 산도(%) | |
| 홍로 | 감염과 | 174.6(46) | 1.89 | 14.1 | 0.275 | 소과, 과피얼룩 |
| | 정상과 | 378(100) | 2.52 | 15.9 | 0.25 | |
| 추광 | 감염과 | 179.9(66) | 1.52 | 14.2 | 0.129 | 과피얼룩 |
| | 정상과 | 272(100) | 2.23 | 13.1 | 0.14 | |
| 감홍 | 감염과 | 237.7(86) | 2.1 | 11.4 | 0.16 | 내부갈변, 과육스폰지화, 과피얼룩 |
| | 정상과 | 277.5(100) | 1.64 | 12.3 | 0.164 | |

자료 : 원예연구소

◦ 무병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환경 또는 기술개선 없이도 과일의 품질이 향상되어 수입과일 대비 품질경쟁력이 향상됨

- 포도의 경우 무병주에서 생산된 경우 병해에 감염되었을 때보다 당도가 약 3Brix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표 4-38)

표 4-38. 포도 바이러스 이병주와 무병주의 과실특성

| 품 종 | 처리 | 과방중(g) | 과립수(개) | 당도 | 산도(%) | 안토시아닌 (535nm) |
|---|---|---|---|---|---|---|
| 거봉 (5년차) | 무병주 | 436 | 30.1 | 17.2 | 0.49 | 0.785 |
| | 이병주 (GLRaV-3) | 317 | 37.8 | 14.5 | 0.49 | 0.386 |

자료 : 원예연구소

◦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생산성과 과일의 품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국내 과수 묘목은 바이러스 감염이 잦아 경쟁력 향상을 저해함
-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접목으로 감염되며 토양전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과의 경우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의 종류에 따라 주당 최대 40%까지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된 바 있어 무병묘 공급시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표 4-39)

표 4-39. 사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주간비대 | | 수량 | |
|---|---|---|---|---|
| | 주간(cm) | 지수(%) | 주당(kg) | 지수(%) |
| 건전주 | 25 | 100 | 89 | 100 |
| Chlorotic leaf spot 이병주 | 24 | 96 | 83 | 93 |
| Stem pitting 이병주 | 25 | 100 | 80 | 90 |
| Russet ring 이병주 | 25 | 100 | 80 | 90 |
| Mosaic 이병주 | 19 | 76 | 53 | 60 |

주 : 1969년~1972년간 일본의 연구결과임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우량묘목 보급시 상기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무병묘 인증 및 유통 비율이 100% 수준이나 한국은 그 실적이 전혀 없음(표 4-40)

표 4-40. 주요 선진국 무병묘 유통비율

| 국 가 | 최초 유통년도 | 무병묘 유통비율(%) |
|---|---|---|
| 미 국 | 1963 | 100 |
| 일 본 | 1983 | 100 |
| 영 국 | 1971 | 100 |
| 네 덜 란 드 | 1974 | 100 |
| 한 국 | - | 0 |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4.1.7. 과원규모화 사업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가. 세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 과원규모화 사업은 과수농가의 규모화 및 젊고 유능한 선도농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한·칠레 FTA체결로 가속화된 과수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소득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세부 사업 중 FTA 기금의 목적과 가장 잘 부합되는 사업임

- 발전 가능성이 큰 우수경영체 위주로 지원하여 과수 농가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외국 과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함

## 나. 수단의 적절성

◦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거나 임대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과원 규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지원 수단은 적절함

◦ 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모든 과수 품종임

◦ 사업은 매매사업과 임대차사업으로 구분됨
- 매매사업은 기존소유규모 포함하여 5ha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 상한은 $m^2$ 당 12,100원(과수목 포함)임. 융자 금리는 2.0%이며 상환기간은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거치식·체증식 상환 방식임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는 자부담(2008년부터 폐지)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상한을 초과할 때에도 전액 자부담해야함
- 임대사업도 기존소유 규모 포함하여 5ha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지역내 관행 임차료를 적용함. 원금은 5~10년 균분 상환함

◦ 사업방식이 융자지원에 의한 (시중 대출금리와의)이자차액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액은 크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외 밭의 경우 매매가가 약 30,000/$m^2$원 수준인 바 과원의 매매가도 대등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지원 상한이 12,100원/$m^2$이므로 농가 자부담은 약 17,900원/$m^2$수준임[8)]
- 지원상한 12,100원은 매매가격 30,000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치기간 이후 상환의무가 있고, 이자 2%에 해당하는 2.4백만원/ha, 필수 시설 설치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함(표 4-41)

8) 과원은 통상 밭보다 영농환경이 불리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밭의 매매가보다 거래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장에서 거래되는 과원 매매단가는 3만원 수준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표 4-41. 농업진흥지역 이외 밭매매시 거래단가

| 구 분 | 2005년도 | | | | 2006년도 | | | | 2007년도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당 가격 | 24,332 | 26,342 | 27,769 | 28,280 | 29,764 | 29,645 | 29,606 | 30,068 | 30,575 | 30,915 | 31,865 | 32,944 |

자료 :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조사분석팀, “2007년 4/4분기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2008.

◦ 과원규모화사업은 영농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사업 목적이 적절하고 농가의 수요가 많은데 비해 사업비가 적어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음

### 다.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하 과수재배 경력 3년 이상의 과수농가 및 법인으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로 사업 목표에 비추어 적절함

- 과수 농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동일 작목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것이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1) 과원폐업지원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2) 전업·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3) 비농업인 등 소유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4)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5) 과수재해보험 가입자임

- 과원폐업지원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을 매입하는 자를 1순위에 놓은 것은 여건이 좋은 과원의 규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음. 실제 과원폐원은 여건이 불리한

한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과수목의 수령을 따져 경제성이 없을 경우 매입제외하는 것처럼, 과원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따져 한계지일 경우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라. 사업 관리의 적절성

◦ 사업의 홍보는 농촌공사 지사에 의한 지역농민에 대한 대면 홍보, 일간지 및 전문지 홍보, 집합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업예산의 시도별 배분은 신청에 의거하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후관리로는 지원목적 이외의 사용을 근절하고, 사업관리자(농촌공사)가 지역책임제에 의해 전수 조사를 하는 등 현장 중심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아울러 유관기관간 전산검색을 통해 문제예상자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지원농가에 대한 채권관리로는 지원농가의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연체 및 불건전채권 유형 분석, 고액지원자를 특별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원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수혜자 237명중 41.4%가 과원규모화 사업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하였고 27.4%가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4-2. 과원규모화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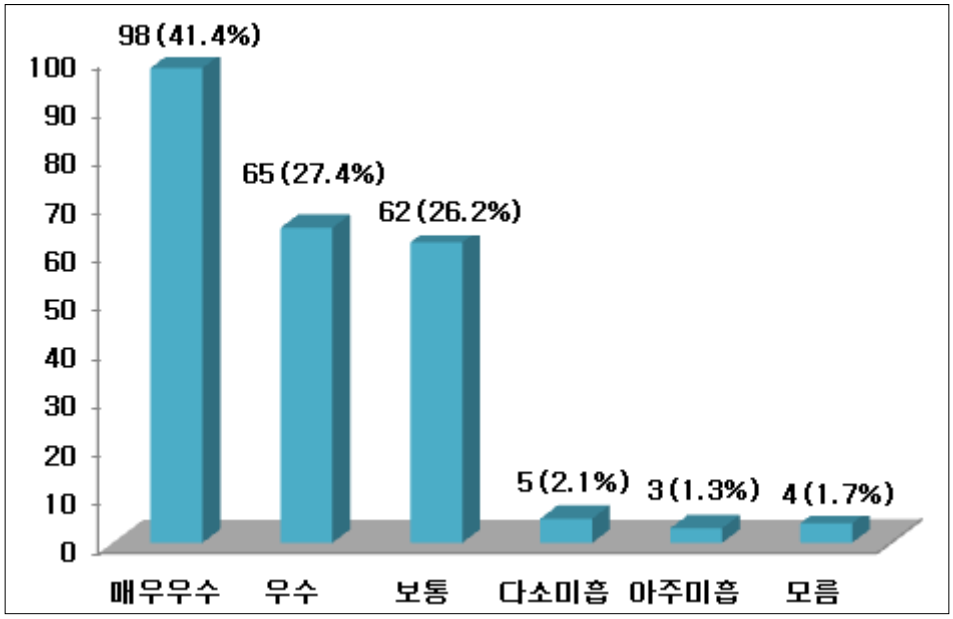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공사,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8.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과원규모화 사업은 사업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당초 사업 계획이 100% 달성되고 있음(표 4-42)

표 4-42. 과원규모화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

단위 : 억원, %

| | 2004 | | | 2005 | | | 2006 | | |
|---|---|---|---|---|---|---|---|---|---|
|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계획 | 실적 | 달성율 |
| 예 산 | 214 | 214 | 100.0 | 214 | 214 | 100.0 | 333 | 333 | 100.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 2004~2007년간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총 1,085억원이 지원되어 1,294ha의 과원을 규모확대 및 집단화시켰음

- 이 중 매매사업이 919ha, 874억원(80.6%), 임대차사업이 375ha, 211억원(19.4%)임
- 매매사업의 지원건수, 면적,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지원액은 m2당 9,500원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 임대차사업도 사업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호당 지원금액은 과원 임대료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표 4-43. 매매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 지원건수 | 면적(ha) | 사업비 (백만원) | 지원단가 | |
|---|---|---|---|---|---|
| | | | | $m^2$당(원) | ha당(천원) |
| 2004 | 235 | 184 | 17,377 | 9,444 | 94,440 |
| 2005 | 238 | 190 | 17,610 | 9,268 | 92,684 |
| 2006 | 372 | 278 | 26,640 | 9,583 | 95,827 |
| 2007 | 371 | 266 | 25,704 | 9,663 | 96,632 |

자료 : 농촌공사

표 4-44. 임대차사업 추진 현황

| 연도 | 지원건수 | 면적(ha) | 사업비 (백만원) | 지원단가 | |
|---|---|---|---|---|---|
| | | | | $m^2$당(원) | ha당(천원) |
| 2004 | 91 | 88 | 4,023 | 546 | 5,461 |
| 2005 | 87 | 68 | 3,790 | 628 | 6,281 |
| 2006 | 147 | 121 | 6,660 | 668 | 6,676 |
| 2007 | 125 | 98 | 6,660 | 713 | 7,132 |

자료 : 농촌공사

◦ 품목별 지원실적은 사과, 배가 높고 단감, 포도, 감귤, 복숭아의 순임
- 지원 면적으로는 사과가 38%로 가장 크고, 배 24%, 단감 11%, 포도 7%, 감귤 7%, 복숭아 6%, 기타 9% 순

- 지원 금액으로는 사과 37.6%, 배 23.8%, 단감 10%, 포도 10%, 감귤 9%, 복숭아 5%, 기타 4% 순임
- 기타 과종은 참다래, 매실, 대추, 자두, 유자, 한라봉, 대봉감 등임

### 나. 사업의 성과

◦ 사업 대상 과원은 기금 지원 결과 호당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4~2007년간 전체 1,568 농가에 1,294ha가 지원되어 농가당 과원규모가 평균 0.83ha확대되었으며, 참여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는 지원 전 1.19ha에서 지원 후에는 2.02ha로 커졌음(표 4-45)

표 4-45. 과원규모화사업의 성과

| 연 도 | 농가수 | 면 적(ha) | 사업비 (백만원) | 호 당 평균 지원액 | 호당 지원면적 |
|---|---|---|---|---|---|
| 2004 | 307 | 272 | 21,400 | 70 | 0.89 |
| 2005 | 314 | 259 | 21,400 | 68 | 0.82 |
| 2006 | 474 | 399 | 33,300 | 70 | 0.84 |
| 2007 | 473 | 365 | 32,364 | 68 | 0.77 |
| 계 | 1,568 | 1,294 | 108,464 | 69 | 0.83 |

자료: 농촌공사

◦ 농촌공사의 설문조사에서도 과원규모화 사업을 통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67.9%로 나타나 소득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됨

- 응답자 237명 중 소득증대 효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은 2.9%수준에 불과함

그림 4-3. 과원규모화사업의 소득증대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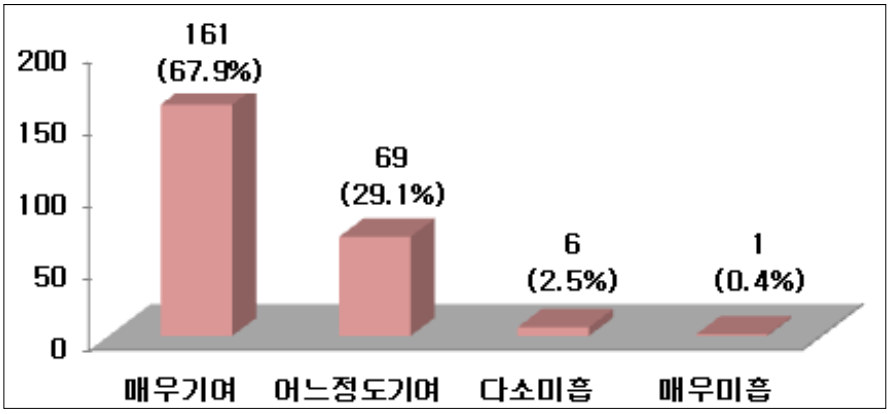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공사,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8.

◦ 과원규모화 사업은 농가의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과원규모화 사업이 소득증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90% 수준에 이름(표 4-46)

표 4-46. 경영규모별 과원규모화 사업의 소득증대 기여도

단위 : 명, %

| 규모별 | 계 | 아주 많은 도움이 됨 | 어느정도 도움이 됨 | 도움이 안됨 |
|---|---|---|---|---|
| 계 | 237(100.0) | 161(67.9) | 53(22.4) | 23(9.7) |
| 2ha미만 | 96(100.0) | 67(69.8) | 20(20.8) | 9(9.4) |
| 2 ~ 4ha | 114(100.0) | 75(65.8) | 26(22.8) | 13(11.4) |
| 4 ~10ha | 24(100.0) | 17(70.8) | 6(25.0) | 1(4.2) |
| 10ha이상 | 3(100.0) | 2(66.7) | 1(3.3) | - |

자료 : 한국농촌공사,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8.

◦ 주요 과종 농가의 대부분이 소득증대 효과에 공감하고 있으나 단감과 시설포도는 상대적인 만족도가 낮음(표 4-47)

표 4-47. 과종별 과원규모화 사업 수혜자 만족도

| | | 사례수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종합 | | 100점 평균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재배 작물 | 사과 | 56 | 1.8 | 3.6 | 8.9 | 42.9 | 42.9 | 5.4 | 85.7 | 80.4 |
| | 배 | 32 | 3.1 | 3.1 | 12.5 | 40.6 | 40.6 | 6.3 | 81.3 | 78.1 |
| | 복숭아 | 13 | 0.0 | 0.0 | 38.5 | 46.2 | 15.4 | 0.0 | 61.5 | 69.2 |
| | 키위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100.0 |
| | 시설포도 | 11 | 27.3 | 0.0 | 9.1 | 27.3 | 36.4 | 27.3 | 63.6 | 61.4 |
| | 노지포도 | 12 | 0.0 | 0.0 | 8.3 | 33.3 | 58.3 | 0.0 | 91.7 | 87.5 |
| | 감귤 | 8 | 12.5 | 0.0 | 0.0 | 62.5 | 25.0 | 12.5 | 87.5 | 71.9 |
| | 단감 | 11 | 9.1 | 18.2 | 9.1 | 27.3 | 36.4 | 27.3 | 63.6 | 65.9 |
| | 기타 | 4 | 0.0 | 50.0 | 0.0 | 25.0 | 25.0 | 50.0 | 50.0 | 56.3 |

자료 : 현대리서치연구소, 「FTA 기금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07.12, p160.

◦ 기존 지원 농가의 69.2%가 향후에도 차년도에도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표 4-48)

표 4-48. 과원규모화사업 기존 수혜농가의 추가 참여 의향

| 연령별 | 계 | 매입+임차 | 계획없음 |
|---|---|---|---|
| 계 | 237(100%) | 164(69.2%) | 73(30.8%) |

자료 : 한국농촌공사,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8.

◦ 소득증대 효과가 큼에도 사업 물량이 국가전체 과원 151,398ha의 0.9% 수준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볼 때 과원 규모화의 사업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가 높아 수요도 많지만 배정된 예산

이 연간 3백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충분한 사업확대가 어렵기 때문임

◦ 수혜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수혜자의 69.2%가 차년도에도 사업참여 의사를 밝혀 기존 수혜농가를 지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4-4. 과원규모화 사업 수혜농가의 차년도 사업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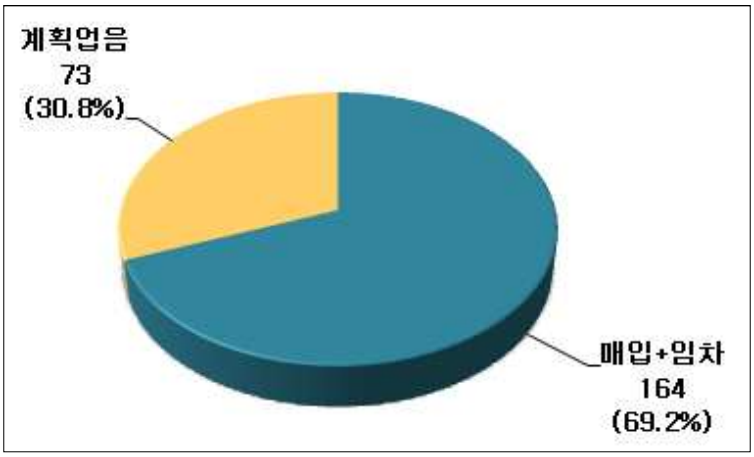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공사,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8.

◦ 그러나 기존 수혜자를 지속지원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일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사업 예산 자체가 확대되어야함

### 4.1.8. 과원폐업지원

#### □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가. 세부 사업 목표의 적절성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

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사업의 목표는 FTA기금의 목적과 부합함

◦ 과원폐업지원 사업을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원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은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조건의 강화가 필요함

- 현재에도 경쟁력을 갖춘 과원은 폐업을 자제하고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한계지에 대해서는 양도제한 규정이 없음
- 한계지에 대해서는 기준(경작로 인접성, 관정확보, 경사도 등)을 정하여 과원규모화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수단의 적절성

◦ 폐업지원사업의 지원수단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 대상품목의 과원소유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절함

◦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 100%이며, 폐원의 경우 3년간의 순수입액, 양도의 경우 1년간의 순수입액을 일시에 지불함
- 대상품목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로 한정됨

◦ 한·칠레 FTA 발효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실제 FTA 발효 이후 이들 품목의 피해가 별로 없어 대상 품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복숭아의 경우 검역상의 문제로 전혀 수입이 되지 않고 있으며, 포도 및 키위는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 2006년 칠레산 포도 수입은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03년에 비해 물량으로는 1.8배, 금액으로는 2.1배 증가하였으며, 키위수입은 동기간 물량으로는 5.6배, 금액으로는 7.0배 증가하였음(표 4-49)

표 4-49. 칠레산 포도 및 키위 수입 추이

단위 : 톤, 천달러

| | 2003(A) | | 2004 | | 2005 | | 2006(B) | | B/A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포도 | 9,155 | 13,674 | 8,351 | 13,180 | 11,674 | 19,942 | 16,167 | 29,351 | 1.8 | 2.1 |
| 키위 | 1,536 | 1,758 | 2,131 | 2,885 | 5,932 | 7,996 | 8,595 | 12,255 | 5.6 | 7.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칠레산 포도 및 키위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포도 및 키위의 국내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표 4-50)

표 4-50. 포도 및 키위 국내 가격 동향

| 구 분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포도 | 노지포도(8-10월) | 2,311 | 3,070 | 4,525 | 2,738 | 3,431 |
| | 시설포도(5-7월) | 6,760 | 8,996 | 8,247 | 6,915 | 6,756 |
| 키위(10-3월) | | 2,547 | 3,420 | 4,357 | 3,061 | 3,366 |

주 : 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이며, 포도는 켐벨 5kg 상품, 키위는 10kg 상품 기준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다만, 사업도입당시 한미 FTA 실무협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생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경우 농가의 불신이 한미 FTA에까지 이어져 장기적으로 농업계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은 인정됨

### 다.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사업시행지침에 의해 폐업지원을 신청한 과원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과원이 폐업지원사업과 과원규모화 사업에 중복 지원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영동, 금산, 임실 등에서 5건, 1억 3,200만원이 중복 지원되었으나 이를 회수한 바 있음
- 이는 폐업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을 통해 자금이 집행되고, 과원규모화사업은 농촌공사가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임
- 이의 보완을 위해 농촌공사는 사업지원자 내역을 과원소재지 행정기관에 매분기 익월에 통보하여 폐업지원과 중복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

### 라. 사업관리의 적절성

◦ 폐업대상 농가 선정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림사업지침에 명시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경우 폐업 신청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상농가 선정시 폐업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폐업한 과수원은 5년간 과원으로 조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공무원의 일손 부족, 필지의 세분화 등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에 한계가 있음

-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GPS 등을 활용하여 정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함

## □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목표 대비 산출량(Output)

◦ 과원폐업지원사업은 2004~2008년간 국비 총 2,600억원을 투입하여 17,388농가의 과원 6,400ha를 폐원시키고자 계획되었음
- 품목별로는 시설포도 519ha(540억원), 키위 123ha(55억원), 복숭아 5,555ha(1,861억원)이 계획되어 있음

◦ 계획대비 폐업 달성율은 전체적으로 150.4%이며, 품목별로는 키위의 달성율이 다소 낮은 반면 복숭아는 계획대비 157.3%의 실적을 달성하였음(표 4-51)

표 4-51. 폐업지원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

단위 : ha, %

| | 재배면적(A) | 폐업계획 총면적(B) | 2004-2007 | | B/A | D/C |
|---|---|---|---|---|---|---|
| | | | 폐업계획 면적(C) | 폐업실시 면적(D) | | |
| 시설포도 | 1,641 | 560 | 360 | 416 | 34.1 | 115.6 |
| 복숭아 | 15,880 | 5,700 | 2,898 | 4560 | 35.9 | 157.3 |
| 키위 | 873 | 140 | 118 | 103 | 16.0 | 87.3 |
| 계 | 18,394 | 6,400 | 3,376 | 5078 | 34.8 | 150.4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4~2007년간 총 2,000억원이 투입되어 당초 계획대비 98.1%가 집행되었음
- 품목별로는 전체 예산의 76.2%가 복숭아 폐업에 투입되었으며, 시설포도에 21.5%, 키위에 2.3%가 투입되었음(표 4-52)

표 4-52. 2004~2007 폐업지원사업 품목별 지원 금액

단위 : 호, ha, 백만원

| 구 분 | 과원폐업실적(2004~2007) | | | |
|---|---|---|---|---|
| | 농가수 | 면 적 | 금 액 | 금액비중 |
| 합 계 | 15,077 | 5,079 | 200,981 | 100.0 |
| 시설포도 | 1,398 | 416 | 43,226 | 21.5 |
| 키 위 | 406 | 103 | 4,605 | 2.3 |
| 복숭아 | 13,273 | 4,560 | 153,150 | 76.2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교부액 대비 실 집행율은 2004년 100%, 2005년, 2006년은 공히 98.9%를 기록하여 사업집행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4-53)

표 4-53. 폐업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억원, %

| | 2004 | | | 2005 | | | 2006 | | | 2007 | | |
|---|---|---|---|---|---|---|---|---|---|---|---|---|
| | 예산 | 집행 | 달성율 | 예산 | 집행 | 달성율 | 예산 | 집행 | 달성율 | 예산 | 집행 | 달성율 |
| 예산 | 247 | 247 | 100.0 | 530 | 530 | 100.0 | 668 | 668 | 100.0 | 668 | 661 | 99.0 |

주 : 2007년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교부액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 호당 평균 지원금액은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호당 폐업지원 면적이 2006년에는 0.4ha로 2004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음(표 4-54)

표 4-54. 호당 평균 국고지원액 추이

단위 : 백만원, ha

| | 2004 | 2005 | 2006 |
|---|---|---|---|
| 호당 국고지원액 | 10.1 | 12.3 | 14.2 |
| 평균면적 | 0.2 | 0.3 | 0.4 |

주 : 실집행액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나. 사업의 성과

◦ 폐업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의 사업목적은 달성되고 있음

◦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고령, 독거 농가의 과원의 폐원을 촉진한 효과가 있으며, 폐과원을 방치할 경우 병해충 등이 발생하여 인근 농가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 복합영농농가들이 주로 폐업함으로써 농가들이 휴경하지 않고 대부분 콩, 채소 등타작목으로 전환하고 있음

◦ 그러나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시혜적 성격이 강해 폐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은 크나 과원 구조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폐업지원사업은 노령, 영세 농가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을 폐원시켜 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은 성과가 인정되나 과수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
- 충북의 복숭아 사례를 보면 2004~2006년간 983농가의 371ha(호당 0.38ha)가 폐업지원되었으나 2004~2007년간 376농가가 신규로 157ha(호당 0.41)의 과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생산량 조정 등 과수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표 4-55)

표 4-55. 충북지역 복숭아 농가 폐업지원 현황

단위 : 호, ha

| | 농가수 | 총면적 | 평균면적 |
|---|---|---|---|
| 2004 | 172 | 45 | 0.26 |
| 2005 | 469 | 173 | 0.37 |
| 2006 | 342 | 153 | 0.45 |
| 계 | 983 | 371 | 0.38 |

자료 : 충북도청

## 4.2. FTA 기금사업 전체

### 4.2.1. 사업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가. 기금 설치 목적의 적절성

◦ FTA기금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법적 근거는 2004년 3월에 통과된「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임

◦ 과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FTA기금 설치의 정당성은 한·칠레 FTA에 의해 과수산업, 그 중 포도 및 키위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

- 한칠레 FTA에 따른 피해액은 농경연에서 3,035억원, 한양대에서 5,860억원으로 추정하였음
- 특히 한양대 연구에 의하면 포도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62%인 2,286억원을 차지하고, 복숭아 및 키위는 각각 272억원과 3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확대로 전체국가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피해받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과수 농가에 적절한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표 4-56)

표 4-56.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피해 규모 추정액

단위 : 억원

| 구 분 | | 피해액 |
|---|---|---|
| 농경연 | | 3,035 |
| 한양대 | 신선농산물 | 3,662 |
| | 가공식품 | 2,198 |
| | 계 | 5,860 |

◦ 실제로 2006년 칠레산 포도 수입은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03년에 비해 물량으로는 1.8배, 금액으로는 2.1배 증가하였으며, 키위수입은 동기간 물량으로는 5.6배, 금액으로는 7.0배 증가하였음(표 4-49 참조)

◦ 칠레산 포도 및 키위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포도 및 키위의 국내가격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한·칠레 FTA에 의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표 4-50 참조)

◦ FTA 기금사업이 당초 한·칠레 FTA에 의한 피해 보상을 주요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보전직불사업, 과원폐업지원사업 등의 경영안정지원사업과 경쟁력제고지원사업으로 구성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소득보전직불사업의 실적이 전무하고, 가격하락이 일어나

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원폐업지원을 계속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의 사업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나. 수단의 적절성

◦ FTA기금사업은 과수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서 의의가 있음
- 기존 농림사업 중 과수산업만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였음

◦ 일반적으로 FTA기금사업은 일반 예산사업에 비해 조건이 좋고 과수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은 기존 농업종합자금(융자 100%)보다 조건이 좋아 농가들의 수요가 높음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보조 80%, 지방비 20%)도 기존의 밭기반정비(보조 80%, 지방비 20%)가 채소 등 일반경종 위주로 FTA기금 사업으로의 차별성이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공공: 보조 50%, 지방비 50%, 일반: 보조 30%, 지방비 20%, 자담 50%)은 기존 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공공: 보조 50%, 지방비 50%, 일반: 보조 30%, 지방비 20%, 자담 50%)과 지원조건을 동일하지만 대규모거점 유통시설로서 광역의 원료조달 권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과실가공품품질향상지원(융자 100%)도 농업종합자금지원(융자 100%), 수출업체지원(융자 80%, 자담 20%)과 달리 과실전용 가공사업 지원대책이지만 과실가공이 활성화되지 않아 독자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원매매, 장기임대차를 지원(매매시 융자 2%, 임대시 임대료 무이자)하여 과원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만족도는 높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확대가 정체되고 있음

-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중 중앙묘목관리센터는 100% 국고보조로 건립하며 묘목생산자는 국고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바, 그간 국내에서 무병묘목 유통이 전무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많았고 묘목관리가 과수산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 중심의 지원수단은 타당함
-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의 폐원과 양도시 지원금(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천원, 복숭아 3,316천원)을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규모화를촉진하는 사업이나 구조조정 효과보다 한·칠레 FTA 체결시 피해품목 생산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

◦ 각 세부사업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술지도, 유통 및 마케팅 등과의 연계 정책이 부족함
- 외부환경 개선 : 생산기반 정비사업,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
- 개별 생산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수확후 품질관리 및 산지유통 규모화 : 거점APC 지원사업
- 영세농가 소득안정 : 소득보전직불제, 과원폐업지원
- 다만, 생산시설 현대화는 기술지도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기술지도·교육·컨설팅 등은 예산부족으로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거점APC 지원도 산지유통과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계획의 이행상황만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동시에 포함되어야함

◦ 세부사업별로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조성하고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으나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우량묘목생산지원, 거점APC 건립지원 사업은 과수산업의 SOC

투자이므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생산기반 정비사업,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과원영농규모화 및 폐업지원 사업은 그 혜택이 주로 해당지역에 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분담율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지역정서에 의해 객관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재정도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지원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지역여건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 재원의 적절성

◦ FTA 기금은 수입의 거의 전액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융자금의 이자수익과 수입권공매수익이 있으나 아주 작은 금액임

◦ 기금이 기금으로서 독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담금 등 자체수입의 비중이 커야 하나 FTA 기금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기금의 특성이 크지 않음(표 4-57)

표 4-57. FTA 기금의 항목별 수익

단위 : 억원, %

| | 2004 | 2005 | 2006 |
|---|---|---|---|
| 사업 수익 | 934.8(100.0) | 1,198.3(100.0) | 1,385.5(100.0) |
| 정부출연금 | 933.8(99.9) | 1,184.9(98.9) | 1,361.7(98.3) |
| 융자금이자수익 | 0.9(0.1) | 13.1(1.1) | 23.8(1.7) |
| 수입권공매수익 | 0.1(-) | 0.3(-) | - |

주 : ( )내는 총사업수익에 대한 백분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 라.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 FTA기금사업은 수혜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선정하고 무자격자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있음
- 시군에서도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정하게 수혜 농가를 선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수 농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지역에서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나눠먹기식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음

## 4.2.2. 사업추진의 효율성(Efficiency)

### 가. 기금사업 집행의 효율성

1) 기금 관리비의 적절성

◦ FTA 기금의 관리비는 연도별 기금 조성액 대비 0.3~0.4% 수준으로 타기금과 비교할 때 적정 것으로 판단됨

◦ 기금관리비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사업운영비)는 기금 조성액의 2.0~2.7%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됨
- 사업운영비는 조사연구 홍보비(자율계획지원 및 심사평가비, 기술개발, 보급 및 포털사이트 구축, FTA 해외정보조사, 과실신가공기술개발출연, FTA농업협상지원, 홍보 및 용역 등), 과원규모화관리비(농촌공사), TRQ물량수입관리비 등으로 구성됨(표 4-58)

표 4-58. FTA 기금의 사업 관리비 비율

단위 : 억원, %

| | 2004 | 2005 | 2006 |
|---|---|---|---|
| 사업 수익 | 934.8 (100.0) | 1198.3 (100.0) | 1385.5 (100.0) |
| 사업비 | 530.7 (56.8) | 1158.0 (96.6) | 1351.1 (97.5) |
| 사업운영비 | 19.1 (2.0) | 31.5 (2.6) | 36.9 (2.7) |
| 기금관리비 | 3.3 (0.4) | 4.3 (0.4) | 4.7 (0.3) |

주 : ( )내는 사업수익에 대한 백분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 나. 기금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1) 사업대상 선정 과정의 적절성

◦ 시·군, 시·도 자율에 의한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계획만 우선심사 대상이 되므로 부적격 사업계획은 사전에 배제할 수 있음

- 시·군단위에서는 각 시행주체, 농업인,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함
- 시·도는 자체기준으로 각 시·군의 과수산업발전계획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는 신청에서 배제함
- 전국단위의 광역 사업계획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되 반드시 주관 시·군을 지정하므로 시행주체의 불명확에서 오는 사업추진의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한 최종심사는 사전 실무검토와 3단계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심사 수혜자 선정의 객관성·효과성이 보장됨

- 전문평가단은 학계, 농수산물유통공사, 연구기관, 현업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pool중 5~7명을 선정함

- 사전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실무담당부서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부실사업계획, 미흡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걸러냄
- 1단계 비공개 서면평가에서는 5~7명의 전문가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함
- 2단계 현장평가에서는 상기 전문가 이외 별도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평가함
- 마지막으로 3단계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 이전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그림 4-5.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 심사·평가 프로세스

2) 기금의 세부 사업 관리 체계

◦ 시군단위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지원효과의 극대화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여러 사업을 종합관리하여 상호 보완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능과 전문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타당하나 실무작업을 각기 다른 기관(부서)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농림담당 부서도 다른 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생산시설 현대화, 폐업지원, 거점APC, 가공품 품질향상지원 등은 시군 농림담당,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군 건설담당,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역의 경우 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과원규모화 사업도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자 및 그 참여농협에 우선지원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생산자 조직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3) 기금사업자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

◦ 지역자율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대상자별로 그 추진도 및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A~E등급으로 분류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 자체 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실시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음
- 과수화훼과 주도로 사업자에 대한 연차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에는 2004-2006년간 선정된 48개소 중 44개소가 평가되었음(표 4-59)

표 4-59. 개별 사업대상자의 평가 등급

| 등 급 | A등급<br>(매우우수) | B등급<br>(우수) | C등급<br>(보통) | D등급<br>(미흡) | E등급<br>(매우미흡) |
|---|---|---|---|---|---|
| 범 위 | 상위 10% | 15% | 50% | 20% | 5% |
| 순 위 | 1~3위 | 4~8위 | 9~24위 | 25~30위 | 31~32위 |

◦ 주요 평가내용은 계획수립, 집행, 성과단계로 구분 평가되고 있음 (부표 1 참조)

- 계획수립 :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수립 여부 등
- 집행단계 : 출하약정, 자체평가, 예산집행 실적 등
- 성과단계 : 농가만족도, 법인화, 출하약정 이행율 등
- 사전 서류검토를 거쳐 평가내용 실사(면담 평가)를 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해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됨

◦ 평가의 근거는 FTA기금운용규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이며, 평가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평가단 운영은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에서 하고 있음

- 평가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공사 및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 선정시 참여한 평가위원과 신규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배정시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하고, 사업운영지원비 지원을 확대하며, 우수 조직(조직원)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축소 또는 지원중단, 지원효과가 없는 사업부문은 지원중단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기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등이 불가능하여 평가에 따른 사후조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자금 회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4) 기금 사업의 효과성 평가

◦ 현재 개별 사업(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별로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FTA 기금 전체 또는 세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가 미흡함

◦ 사업자 평가는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진함
- 예를 들어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원된 시설이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을 평가해야 하나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는 그러한 실제 효과성의 평가가 미진함
- 다만, 각 세부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수혜자의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용한 정보가 존재하여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자 패널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함
- 한편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유형 사업(직불사업, 폐원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 우량묘목생산 등)은 아직 평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자금집행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5) 기금 관리조직의 적정성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FTA기금팀은 조직체계상 사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과업도 기금의 정산과 결산, 연차평가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지원 기능이 부족함

- 사업추진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가 직접 행정기관인 각 시·도를 통해 시행하나 보조금의 교부, 기금운용(금융기관 정기예금)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2급 1명 등 정원 5명)가 위탁관리하고 있음

6)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프로세스의 개선과 환류

◦ 매년 전년도의 사업지침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는 등 사업 프로세스의 환류와 개선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상세한 지침변경 내역은 부록 참고)

◦ 2005년도 관련 지침 변경은 주로 과원폐업지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시설포도에 대해 '시설'의 정확한 규정이 없던 것을 변경하여 2005년 시설의 정확한 요건을 신설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음
- 문중 소유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하여 민원해소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기하였음
- 신청서를 평가하여 생산성이 낮은 과원을 우선 폐원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기하였음
- 신청자의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사업예정년도를 미리 예고하였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가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을 제출토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식재여부 확인 및 관리, 각종 증빙서류의 확인 등을 수행토록 규정 신설

◦ 2006년에는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이 변경되었음
- 2005년까지 사업대상 묘목생산자는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 조합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농업기술센터를 추가하였음

◦ 2007년에는 다수의 세부사업에 대해 지침변경이 있었음
- 우선 일부 세부사업을 다른 사업과 통폐합하여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과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2007년부터는 농특회계 사업과 통합 시행토록 하였음
- 지원대상자는 연합사업단을 배제하고 법인격을 갖춘 조직으로 한정하였음
- 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명시하였음

◦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시 과수분야 전문가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인력도 참여토록 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기하였음
- 사업계획서 평가 중 또는 이후에 중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졸속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방지하되 사업비의 30%는 자율적으로 비목 변경이 가능토록 하여 상황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였음
- 연차평가에서 2006년까지 4등급으로 분류되던 것을 세분하여 5등급(A~E)으로 분류토록 함

### 4.2.3.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

#### 가. 산출량(Output)

1) 당초 목표대비 사업의 집행실적

◦ FTA기금 사업은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일부 사업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은 초년도 사업으로 홍보가 부족하여 계획 달성율이 높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달성율이 높아지고 있음
- 소득보전직불사업은 과일가격 하락이 심각하지 않아 실제 집행된 실적이 없고, 과실가공품품질향상 사업은 사업자의 담보 부족으로 실제 융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표 4-60)

표 4-60. FTA 기금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 2004 | | | 2005 | | | 2006 | | |
|---|---|---|---|---|---|---|---|---|---|
| | 계 획 | 실 적 | 실적률 | 계 획 | 실 적 | 실적률 | 계 획 | 실 적 | 실적률 |
| 합 계 | 1,554 | 923 | 59.4 | 1,720 | 1,684 | 97.9 | 1,952 | 1,946 | 99.7 |
| □ 경쟁력제고지원 | 1,181 | 676 | 57.2 | 1,190 | 1,154 | 97.0 | 1,284 | 1,278 | 99.5 |
| ◦ 지방자율계획사업 | 967 | 462 | 47.8 | 955 | 927 | 97.1 | 901 | 896 | 99.4 |
| -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 669 | 299 | 44.6 | 576 | 574 | 99.8 | 557 | 557 | 100.0 |
| -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 53 | 39 | 73.1 | 102 | 102 | 100.0 | 104 | 103 | 99.5 |
| - 과수전용농기계임대 | 50 | 8 | 16.9 | 26 | 26 | 100.0 | 20 | 20 | 100.0 |
| -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 120 | 99 | 82.9 | 225 | 225 | 100.0 | 211 | 211 | 100.0 |
| - 과실가공품품질향상지원 | 50 | 15 | 30.6 | 27 | - | - | 10 | 5 | 50.0 |
| ◦ 과수우량묘목생산 | 25 | 2 | 6.0 | 21 | 13 | 61.4 | 50 | 49 | 98.8 |
| ◦ 과원영농규모화 | 214 | 214 | 100.0 | 214 | 214 | 100.0 | 333 | 333 | 100.0 |
| □ 경영안정지원 | 373 | 247 | 66.2 | 530 | 530 | 100.0 | 668 | 668 | 100.0 |
| ◦ 소득보전직불 | 126 | - | - | - | - | - | - | - | - |
| ◦ 폐업지원 | 247 | 247 | 100.0 | 530 | 530 | 100.0 | 668 | 668 | 100.0 |

주 : 계획은 변경예산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 나.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1) 생산구조 개선

◦ 2007년 우리나라의 과수 농가수는 200,229호로 2002년에 비해 19.1% 감소하였으며, 재배면적도 151,398ha로 2002년에 비해 11.2% 감소하였음

- 농가호수 및 재배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과실가격 하락,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밭면적 감소 등 외부적 요인도 크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수원정비사업 및 FTA 폐원지원사업의 영향도 크다고 판단됨

◦ 농가수 및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호당 과수재배면적은 2002년 0.69ha에서 2007년 0.76ha로 10.1% 증가하였음

- 호당 재배면적의 확대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FTA기금사업에서 추진한 과원규모화사업 및 폐원지원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FTA기금사업이 우리나라 과수 생산구조 현대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4-61)

표 4-61. 과수 농가수 및 총 재배면적

단위 : 호, ha

| | 2002(A) | 2007(B) | 증 감 | |
|---|---|---|---|---|
| | | | B-A | B/A |
| 재 배 농 가 | 247,497 | 200,229 | -47,268 | -19.1 |
| 재 배 면 적 | 170,420 | 151,398 | -19,022 | -11.2 |
| 호당 재배면적 | 0.69 | 0.76 | 0.07 | 10.1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년 과수실태조사 결과”, 2008.

◦ 과종별로 보면 FTA사업에 의해 주로 지원받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은 농가당 영농규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과는 호당 재배면적이 2002~2007년간 12.0% 증가하였는데 일반사과는 호당 재배면적이 동기간 8.3% 감소한 반면 FTA 기금사업 등에 의해 키낮은사과원 지원이 이루어져 왜성사과의 경우 호당 재배면적은 동기간 18.8%나 확대되었음
- 배의 호당 재배면적은 동기간 13.6%, 복숭아 6.7%, 포도 9.1%, 감귤 28.6% 확대된 반면 FTA기금지원의 주 대상이 아닌 단감은 호당 재배면적 확대가 2.1%에 그치고 있음(표 4-62)

표 4-62. 주요 과종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천호, 천ha, %

| | 2002 (A) | | | 2007 (B) | | | 증감율 (B/A) | | |
|---|---|---|---|---|---|---|---|---|---|
| | 농가수 | 면 적 | 호당면적 | 농가수 | 면 적 | 호당면적 | 농가수 | 면 적 | 호당면적 |
| 사 과 | 41 | 31 | 0.75 | 38 | 32 | 0.84 | -9.0 | 4.0 | 12.0 |
| (일반) | 10 | 6 | 0.6 | 9 | 5 | 0.55 | -14.4 | -13.5 | -8.3 |
| (왜성) | 36 | 25 | 0.69 | 33 | 27 | 0.82 | -6.5 | 8.4 | 18.8 |
| 배 | 47 | 28 | 0.59 | 34 | 23 | 0.67 | -28.2 | -18.2 | 13.6 |
| 복숭아 | 35 | 16 | 0.45 | 27 | 13 | 0.48 | -23.5 | -14.4 | 6.7 |
| 포 도 | 49 | 22 | 0.44 | 37 | 18 | 0.48 | -25.0 | -19.9 | 9.1 |
| 단 감 | 51 | 24 | 0.47 | 37 | 18 | 0.48 | -27.8 | -25.3 | 2.1 |
| 감 귤 | 37 | 26 | 0.70 | 21 | 19 | 0.90 | -42.6 | -25.1 | 28.6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년 과수실태조사 결과”, 2008.

2) 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 FTA 기금사업이 과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과 2006년의 과종별 10a당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노동투입량을 비교하였음
-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 농축산물소득 자료이며, 생산비가 발표되지 않아 경영비+자가노력비를 대용변수로 활용하였음

- 경영비+자가노력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음
- 분석대상 과종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이며 FTA사업 시행이전인 2003년과 시행 후인 2006년을 비교하였음

◦ 사과의 경우 2006년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는 2003년과 거의 같고,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와 kg당 노동투입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4-63)

표 4-63. 사과 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 원, kg, 시간

| 항 목 | 2003(A) | 2006(B) | B/A |
|---|---|---|---|
| 10a당 경영비 | 1,342,800 | 1,551,632 | |
| 10a당 자가노력비 | 618,475 | 694,276 | |
| 10a당 경영비+자가노력비 | 1,961,275 | 2,245,908 | |
| 농가구입가격지수 | 115 | 131 | |
| 10a당 실질경영비+자가노력비 | 1,709,917 | 1,711,820 | 1.00 |
| 생산량 | 2,203 | 2,169 | |
|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 776 | 789 | 1.02 |
| 노동투입량 | 162.4 | 164.3 | |
| kg당 노동투입량 | 0.07 | 0.08 | 1.14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 배의 경우 2006년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노동투입량 등은 200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4-64)

표 4-64. 배 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 원, kg, 시간

| | 2003 | 2006 |
|---|---|---|
| 경 영 비 | 1,488,284 | 1,621,858 |
| 자가노력비 | 830,860 | 846,560 |
| 경영비+자가노력비 | 2,319,144 | 2,468,418 |
| 농가구입가격지수 | 115 | 131 |
|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 2,021,922 | 1,881,416 |
| 생 산 량 | 2,073 | 2,562 |
| kg당 실질경영비+자가노력비 | 975 | 734 |
| 노동투입량 | 200.3 | 190 |
| kg당 노동투입량 | 0.10 | 0.07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 포도(노지)의 경우도 2006년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노동투입량 등은 200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4-65)

표 4-65. 포도 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 원, kg, 시간

| | 2003 | 2006 |
|---|---|---|
| 경 영 비 | 1,030,311 | 1,187,830 |
| 자가노력비 | 1,074,118 | 1,165,458 |
| 경영비+자가노력비 | 2,104,429 | 2,353,288 |
| 농가구입가격지수 | 114.7 | 131.2 |
|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 1,834,724 | 1,793,665 |
| 생 산 량 | 1773 | 1792 |
|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 1035 | 1001 |
| 노동투입량 | 249.4 | 225 |
| kg당 노동투입량 | 0.14 | 0.13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 노지감귤의 경우도 2006년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노동투입량 등은 200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4-66)

표 4-66. 노지감귤 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 원, kg, 시간

| | 2003 | 2006 |
|---|---|---|
| 경 영 비 | 648,061 | 728,274 |
| 자가노력비 | 501,431 | 485,997 |
| 경영비+자가노력비 | 1,149,492 | 1,214,271 |
| 농가구입가격지수 | 115 | 131 |
|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 1,002,173 | 925,511 |
| 생산량 | 3,220 | 3,348 |
|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 311 | 276 |
| 노동투입량 | 115.1 | 104.7 |
| kg당 노동투입량 | 0.04 | 0.03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 복숭아도 2006년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노동투입량 등은 200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4-67)

표 4-67. 복숭아 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 원, kg, 시간

| | 2003 | 2006 |
|---|---|---|
| 경 영 비 | 951,001 | 1,028,796 |
| 자가노력비 | 828,665 | 880,289 |
| 경영비+자가노력비 | 1,779,666 | 1,909,085 |
| 농가구입가격지수 | 115 | 131 |
| 10a당 실질 경영비 +자가노력비 | 1,551,583 | 1,455,095 |
| 생산량 | 1,446 | 1,505 |
| kg당 실질 경영비 +자가노력비 | 1,073 | 967 |
| 노동투입량 | 197.4 | 187.2 |
| kg당 노동투입량 | 0.14 | 0.12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 단감의 경우 2006년 10a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실질 경영비+자가노력비, kg당 노동투입량 등은 200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4-68)

표 4-68. 단감 10a당 생산성 분석

단위 : 원, kg, 시간

| | 2003 | 2006 |
|---|---|---|
| 경 영 비 | 626,982 | 802,840 |
| 자가노력비 | 577,931 | 617,501 |
| 경영비+자가노력비 | 1,204,913 | 1,420,341 |
| 농가구입가격지수 | 115 | 131 |
| 10a당 실질 경영비 +자가노력비 | 1,050,491 | 1,082,577 |
| 생산량 | 1,271 | 1,560 |
| kg당 실질 경영비 +자가노력비 | 827 | 694 |
| 노동투입량 | 135.3 | 130.3 |
| kg당 노동투입량 | 0.11 | 0.08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 과수의 생산성은 기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 수치만 가지고 생산성 변화를 결론짓기는 한계가 있지만 사과를 제외한 전 과종에서 2006년의 생산성이 2003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FTA기금사업이 과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과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키낮은 사과원 등이 지원된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성목에 도달하지 않아 생산량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가격안정화 효과

◦ FTA기금사업이 가격안정화에 얼마만큼 기여했나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과종의 연간 가격변동률을 연도별로 비교하였음

- 월가격의 변동률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월가격의 표준편차를 연평균가격으로 나눈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였음

◦ 주요 과종에 대해 연도별 변이계수를 비교한 결과, 변이계수가 연도별로 유의미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FTA기금사업이 과수의 가격안정화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4-69, 4-70, 4-71, 4-72, 4-73, 4-74)

표 4-69. 사과(후지)가격의 변이계수

단위 : 원/kg

| 연도 | 월평균가격 | 표준편차 | 변이계수 |
|---|---|---|---|
| 2002 | 3,245.2 | 639.3 | 0.197 |
| 2003 | 2,787.6 | 222.0 | 0.080 |
| 2004 | 4,268.8 | 587.1 | 0.138 |
| 2005 | 4,930.2 | 1,299.5 | 0.264 |
| 2006 | 3,598.1 | 391.9 | 0.109 |
| 2007 | 3,743.5 | 778.2 | 0.208 |

주 : 월평균가격은 각년도 월별 가격의 평균이며, 변이계수 = 표준편차 ÷ 평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표 4-70. 배(신고)가격의 변이계수

단위 : 원/kg

| 연도 | 월평균가격 | 표준편차 | 변이계수 |
|---|---|---|---|
| 2002 | 2,025.3 | 287.1 | 0.142 |
| 2003 | 1,856.0 | 358.0 | 0.193 |
| 2004 | 3,195.8 | 1,105.1 | 0.346 |
| 2005 | 2,335.1 | 515.7 | 0.221 |
| 2006 | 1,658.6 | 209.4 | 0.126 |
| 2007 | 2,738.5 | 919.5 | 0.336 |

주 : 월평균가격은 각년도 월별 가격의 평균이며, 변이계수 = 표준편차 ÷ 평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표 4-71. 감귤가격의 변이계수

단위 : 원/kg

| 연도 | 월평균가격 | 표준편차 | 변이계수 |
|---|---|---|---|
| 2002 | 1,229.1 | 198.4 | 0.161 |
| 2003 | 1,076.6 | 394.1 | 0.366 |
| 2004 | 1,509.6 | 309.3 | 0.205 |
| 2005 | 1,961.7 | 389.5 | 0.199 |
| 2006 | 1,538.1 | 238.1 | 0.155 |
| 2007 | 1,655.0 | 645.3 | 0.390 |

주 : 월평균가격은 각년도 월별 가격의 평균이며, 변이계수 = 표준편차 ÷ 평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표 4-72. 포도(켐벨)가격의 변이계수

단위 : 원/kg

| 연도 | 월평균가격 | 표준편차 | 변이계수 |
|---|---|---|---|
| 2002 | 2,623.6 | 896.1 | 0.342 |
| 2003 | 3,397.7 | 1,255.4 | 0.369 |
| 2004 | 4,655.0 | 1,626.0 | 0.349 |
| 2005 | 3,831.3 | 2,041.5 | 0.533 |
| 2006 | 3,646.8 | 1,298.3 | 0.356 |
| 2007 | 3,665.3 | 986.4 | 0.269 |

주 : 월평균가격은 각년도 월별 가격의 평균이며, 변이계수 = 표준편차 ÷ 평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표 4-73. 복숭아(백도)가격의 변이계수

단위 : 원/kg

| 연도 | 월평균가격 | 표준편차 | 변이계수 |
|---|---|---|---|
| 2002 | 2,673.3 | 434.2 | 0.162 |
| 2003 | 3,576.0 | 611.3 | 0.171 |
| 2004 | 3,665.0 | 239.4 | 0.065 |
| 2005 | 3,571.3 | 957.3 | 0.268 |
| 2006 | 3,203.0 | 604.0 | 0.189 |
| 2007 | 3,009.0 | 694.6 | 0.231 |

주 : 월평균가격은 각년도 월별 가격의 평균이며, 변이계수 = 표준편차 ÷ 평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표 4-74. 키위(국산)가격의 변이계수

단위 : 원/kg

| 연도 | 월평균가격 | 표준편차 | 변이계수 |
|---|---|---|---|
| 2002 | 2,982.5 | 429.6 | 0.144 |
| 2003 | 3,391.8 | 103.0 | 0.030 |
| 2004 | 3,588.8 | 152.5 | 0.042 |
| 2005 | 4,462.1 | 1,283.7 | 0.288 |
| 2006 | 3,798.6 | 526.0 | 0.138 |
| 2007 | 3,911.4 | 544.0 | 0.139 |

주 : 월평균가격은 각년도 월별 가격의 평균이며, 변이계수 = 표준편차 ÷ 평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4) 산지조직화 등 유통개선

◦ FTA기금사업은 지원 농가와 약정을 맺게 함으로써 사업자 중심으로 출하물량을 규모화하고 공동브랜드를 부착하는 등 산지조직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05년, 2006년 공히 96% 이상의 지원농가가 사업자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출하약정물량은 지원농가 총 생산량 147,909톤의 72.5%인 107,236톤이며, 이는 국내 과실 총 생산량 2,504톤의 4.3% 수준임(표 4-75)

표 4-75. 지원농가 대비 약정농가 비율

단위 : 호, %

| 연도 | 지원농가수(A) | 약정농가수(B) | % |
|---|---|---|---|
| 2005 | 7,160 | 6,924 | 96.7 |
| 2006 | 9,346 | 8,999 | 96.3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07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점검·평가보고서」, 2007.

◦ 그러나 2006년의 출하약정물량 대비 실제출하 비율은 69.4%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농가조직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출하약정된 물량도 공동선별/공동계산 등 실질적인 공동출하를 하지 않고 단순 수탁형태로 출하된 물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지조직화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표 4-76)

표 4-76. 출하약정물량 대비 실제출하물량 비율

단위 : 톤, %

| 연도 | 약정물량 | 이행물량 | % |
|---|---|---|---|
| 2004 | 37,429 | 30,767 | 82.2 |
| 2005 | 76,662 | 61,281 | 79.9 |
| 2006 | 107,236 | 74,429 | 69.4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07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점검·평가보고서」, 2007.

◦ 브랜드 측면에서는 전체 사업자중 86.4%가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6년 총 사업실적 6.541억원 중 32.0%인 2,096억원이 공동브랜드를 부착하여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FTA기금 사업은 생산자조직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나 공동계산 등의 실적이 낮아 생산자조직화 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 다. 기금사업자에 의한 성과 평가

◦ 기금참여 사업자(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FTA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함

- 설문조사 기간: 2008년 2월 26일(화) ~ 2008년 2월 29일(금)
- 설문응답자: 2007년 평가대상 FTA 기금 사업자 44업체중 32업체(73%)

- 주요 설문내용: 사업별 성과 평가 및 필요성, 기타 사업 추진상 애로 사항 등
- 사업별 성과는 품질향상, 생산성제고, 유통개선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되었음.

1) 세부 사업별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음(32 사업자 응답)

◦ 품질향상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성과가 높은 편(평균평가점수 4.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생산성제고에 대해서는 75%(3.9),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79%(3.9)가 높다고 평가하였음
-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성과가 크다고 응답하고 있음(표 4-77)

표 4-77.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 구 분 (평균점수) | 매우 그렇다 (5) | | 그렇다 (4) | | 보통이다 (3) | | 아니다 (2) | | 매우 아니다 (1) | | 계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품질향상 (4.2) | 9 | 28.1 | 19 | 59.4 | 4 | 12.5 | 0 | 0.0 | 0 | 0.0 | 32 | 100.0 |
| 생산성제고 (3.9) | 5 | 15.6 | 19 | 59.4 | 7 | 21.9 | 1 | 3.1 | 0 | 0.0 | 32 | 100.0 |
| 유통개선 (3.9) | 5 | 15.6 | 20 | 62.5 | 5 | 15.6 | 2 | 6.3 | 0 | 0.0 | 32 | 100.0 |

②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 조사 대상 사업자중 9개소(28%)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는 품질향상에 대해 78%(평균평가점수 4.0), 생산성제고에 대해 67%(3.8), 유통개선에 대해 78%(3.9)가 효과가 큰 편이라고 응답하여 이 사업의 성과가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다음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었음(표 4-78)

표 4-78.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 구 분 (평균점수) | 매우 그렇다 (5) | | 그렇다 (4) | | 보통이다 (3) | | 아니다 (2) | | 매우 아니다 (1) | | 계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품질향성 (4.0) | 2 | 22.2 | 5 | 55.6 | 2 | 22.2 | 0 | 0.0 | 0 | 0.0 | 9 | 100.0 |
| 생산성제고 (3.8) | 1 | 11.1 | 5 | 55.6 | 3 | 33.3 | 0 | 0.0 | 0 | 0.0 | 9 | 100.0 |
| 유통개선 (3.9) | 1 | 11.1 | 6 | 66.7 | 2 | 22.2 | 0 | 0.0 | 0 | 0.0 | 9 | 100.0 |

③ 과수농기계임대사업

◦ 과수농기계임대사업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업단에서는 평가가 불가능하였음

④ 거점 APC 사업

◦ 조사대상 사업단 중 8개소(25%)가 거점APC 사업을 시행 중에 있었음(일반 APC 포함)

◦ 거점APC사업의 성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87.5%(평균평가점수 3.9), 생산성제고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100%(평균평가점수 4.0)가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음(표 4-79)

표 4-79. 거점APC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 분 류 (평균점수) | 매우 그렇다 (5) | | 그렇다 (4) | | 보통이다 (3) | | 아니다 (2) | | 매우 아니다 (1) | | 계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품질향상 (3.9) | 0 | 0.0 | 7 | 87.5 | 1 | 12.5 | 0 | 0.0 | 0 | 0.0 | 8 | 100.0 |
| 생산성제고 (4.0) | 0 | 0.0 | 8 | 100 | 0 | 0.0 | 0 | 0.0 | 0 | 0.0 | 8 | 100.0 |
| 유통개선 (4.0) | 0 | 0.0 | 8 | 100 | 0 | 0.0 | 0 | 0.0 | 0 | 0.0 | 8 | 100.0 |

⑤ 가공품 품질향상 사업

◦ 응답 사업단 중 가공품 품질향상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은 없었음

⑥ 과수우량묘목생산 사업

◦ 응답 사업자중 5개소(16%)만이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음

◦ 평가 결과, 품질향상, 생산성제고, 유통개선에 대해 모두 60%가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음(평균평가점수 3.6)(표 4-80)

표 4-80. 과수우량묘목 생산 사업

| 구 분 (평균점수) | 매우 그렇다 (5) | | 그렇다 (4) | | 보통이다 (3) | | 아니다 (2) | | 매우 아니다 (1) | | 계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품질향상 (3.6) | 0 | 0.0 | 3 | 60.0 | 2 | 40.0 | 0 | 0.0 | 0 | 0.0 | 5 | 100.0 |
| 생산성제고 (3.6) | 0 | 0.0 | 3 | 60.0 | 2 | 40.0 | 0 | 0.0 | 0 | 0.0 | 5 | 100.0 |
| 유통개선 (3.6) | 0 | 0.0 | 3 | 60.0 | 2 | 40.0 | 0 | 0.0 | 0 | 0.0 | 5 | 100.0 |

⑦ FTA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요약

◦ FTA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들은 전반적으로 FTA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세부사업별로는 생산시설현대화사업, 거점APC지원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2)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는,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평균 점수 4.2로 가장 높았으며, 거점APC사업과 생산기반정비사업이 3.2~3.3점으로 높은 편이었음
- 반면 과수농기계임대사업, 가공품품질향상사업, 우량묘목생산사업 등은 필요성이 2.5~2.7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이들 사업은 사업단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표 4-81)

표 4-81. FTA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사 업 명 (평균점수) | 매우 그렇다 (5) | | 그렇다 (4) | | 보통이다 (3) | | 아니다 (2) | | 매우 아니다 (1) | | 계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4.2) | 9 | 28.1 | 21 | 65.6 | 2 | 6.3 | 0 | 0.0 | 0 | 0.0 | 32 | 100.0 |
| 생산 단지 기반조성 (3.2) | 3 | 9.4 | 8 | 25.0 | 12 | 37.5 | 9 | 28.1 | 0 | 0.0 | 32 | 100.0 |
| 과수농기계 임대사업 (2.7) | 2 | 6.3 | 6 | 18.8 | 6 | 18.8 | 17 | 53.1 | 1 | 3.1 | 32 | 100.0 |
| 거점 APC (3.3) | 3 | 9.4 | 12 | 37.5 | 10 | 31.3 | 6 | 18.8 | 1 | 3.1 | 32 | 100.0 |
| 가공품 품질향상 (2.5) | 0 | 0.0 | 5 | 15.6 | 8 | 25.0 | 18 | 56.3 | 1 | 3.1 | 32 | 100.0 |
| 과수우량 묘목생산 (2.5) | 0 | 0.0 | 4 | 12.5 | 9 | 28.1 | 17 | 53.1 | 2 | 6.3 | 32 | 100.0 |

3)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 FTA기금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사업자 선정과정, 지원규모, 자금지원과정, 평가 등 사후관리, 사업성과로 나누어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음

- 사업자 선정 과정의 경우 97%가 만족도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평균 평가점수 3.3)
-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78%가 만족도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평균점수 3.2)

- 자금지원과정에 대해서는 69%가 보통이상, 31%가 낮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았음(평균점수 3.1)
- 평가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94%가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평균점수 3.3)
- 종합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97%의 사업자가 만족도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평균점수 3.8)(표 4-82)

표 4-82. FTA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 사 업 명 (평균점수) | 매우 그렇다 (5) | | 그렇다 (4) | | 보통이다 (3) | | 아니다 (2) | | 매우 아니다 (1) | | 계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사업자선정 (3.3) | 1 | 3.1 | 10 | 31.3 | 20 | 62.5 | 1 | 3.1 | 0 | 0.0 | 32 | 100.0 |
| 지원규모 (3.2) | 1 | 3.1 | 11 | 34.4 | 13 | 40.6 | 7 | 21.9 | 0 | 0.0 | 32 | 100.0 |
| 자금지원과정 (3.1) | 1 | 3.1 | 10 | 31.3 | 11 | 34.4 | 10 | 31.3 | 0 | 0.0 | 32 | 100.0 |
| 평가 등 사후관리(3.3) | 0 | 0.0 | 10 | 31.3 | 20 | 62.5 | 2 | 6.3 | 0 | 0.0 | 32 | 100.0 |
| 사업 성과 (3.8) | 3 | 9.4 | 22 | 68.8 | 6 | 18.8 | 1 | 3.1 | 0 | 0.0 | 32 | 100.0 |

4) FTA 기금 사업의 차별성

◦ 사업자의 53%가 FTA기금사업이 일반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의 차별성을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출하 약정 후 지원해주는 조건부 지원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음
- 과수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 금액의 규모가 일반 농림사업에 비해 큼
- 기존 사업과 달리 구비 서류 등 지원 절차가 엄격하여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계획성 있게 지원해줄 수 있음
- 생산시설 지원 이외 APC와 연계해서 유통부분까지 지원하므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됨

5) FTA 기금 사업의 시행 상 문제점

◦ 사업 시행상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혹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음
- 농가에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많아서 농가가 어려움을 느낌
- 사업 담당자가 FTA기금사업을 전담하지 못하다 보니 이 사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농가를 면밀하게 관리하기가 힘듦
- 나눠주기 식 사업으로 사업의 진정한 의미가 희석되고 있음
- 사업이 너무 농림수산식품부의 틀에 묶여서 보조금 비율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규모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과수분야에서는 규모화가 한계가 있음
- 시설투자 위주로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음
- 농가들의 출하약정 위반시 제재 방법이 없음
- 개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듬해 예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소요량 파악이 어려움
-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어서 전문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음

- 농가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하기 어려움

6) FTA 기금 사업의 개선 요구 사항

◦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지원규모를 확대했으면 하고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사업자별로 자율성을 주기 바람
- 약정 출하를 지키는 농가에게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을 억제하여 연속성있게 업무를 보게 하기 바람
- 업무 담당자가 FTA기금 사업만 담당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요망

## 라. FTA기금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1) 만족도 조사 방법

◦ FTA기금사업의 수혜자(농가) 만족도를 현대리서치에서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 FTA 기금사업에 지원한 농가 및 사업자
- 조사표본 : 1,600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기간 : 2007년 12월 3일 ~ 12월 14일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Structured Questionnaire)
-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 표본추출

◦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만족지수와 체감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측정함

- 체감만족지수는 만족도를 직접 설문하는 방식이며, 항목만족지수는 사업의 성과, 필요성, 직원의 친절성, 홍보의 적절성 등 항목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가중평균하여 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임(표 4-83)

표 4-83. 사업에 대한 만족도 산출 방식

| | |
|---|---|
| 종합 만족지수 | ( 항목 만족지수 × 0.7) + (체감만족도 × 0.3) |
| 항목 만족지수 | FTA 기금사업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와 항목별 가중치의 곱을 합산 |
| | ∑(항목별 직관적 만족도×항목별 가중치) |
| 직관적 만족도 | 직접적인 단일설문을 통해 도출된 만족수준 |
| 항목별 중요도 | 직관적 만족도와 각 항목별 직관적 만족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해, 설문항목별 상관계수를 도출, 그 합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비중을 산출함 |

◦ 5점 스케일로 조사된 만족도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해 100점 만점의 지수로 환산됨

● 100점 환산 = (Xi-1)×100/4, (Xi=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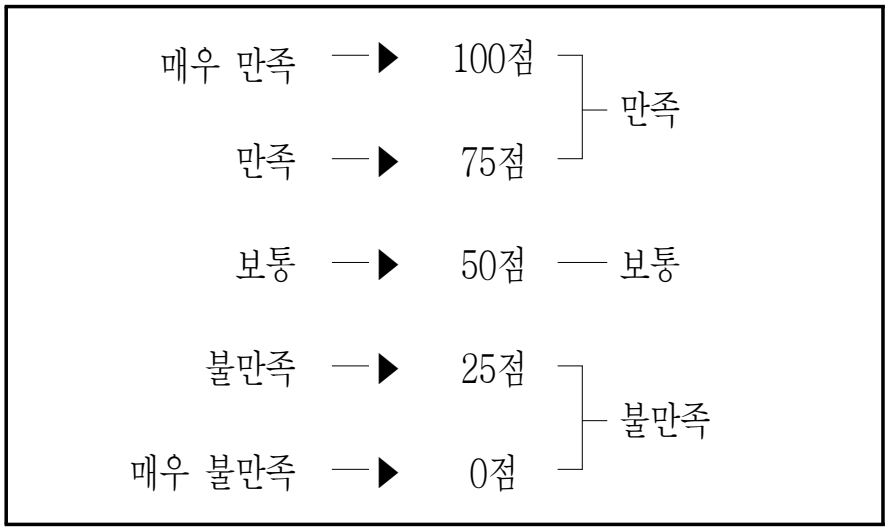


2)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 FTA 기금사업의 각 사업별 수혜자만족지수는 과수우량묘목 생산 사업이 80.6점으로 가장 높고, 거점APC건설 사업이 55.8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이 조사에서는 농가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사업자 조사 결과와 약간 상이함
- 아울러 이 조사는 사업 성과 뿐 아니라 사업 추진과정도 함께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업별 만족도가 사업자 조사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6. FTA 사업별 만족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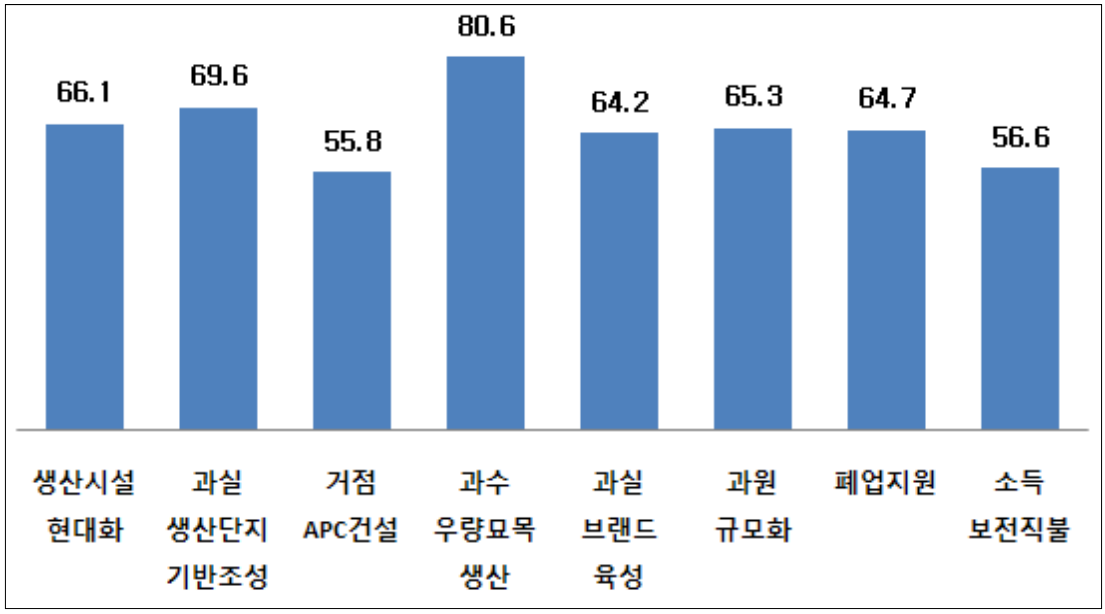


자료 : 현대리서치연구소, 「FTA 기금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07.

◦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 성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담당직원 친절도 등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홍보, 지원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표 4-84)

- 특히 홍보에 대한 만족도나 낮아 FTA기금사업의 농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임

표 4-84. 세부항목별 종합만족지수 비교

단위 : 점

| 사업명 | 사례수 (명) | 소득향상 도움정도 | 필요성 | 홍보의 충분성 | 지원 규모/ 절차 적절성 | 지원 대상자 선정 적절성 | 담당직원 친절도 | 체감 만족도 | 항목 만족지수 | 종합 만족지수 |
|---|---|---|---|---|---|---|---|---|---|---|
| 생산시설 현대화 | 800 | 79.0 | 87.6 | 49.2 | 45.7 | 58.3 | 72.9 | 67.0 | 65.8 | 66.1 |
|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 49 | 82.1 | 86.7 | 43.9 | 52.6 | 63.8 | 69.8 | 70.4 | 69.3 | 69.6 |
| 거점APC건설 | 99 | 60.1 | 77.5 | 41.7 | 44.7 | 57.3 | 63.4 | 50.8 | 58.0 | 55.8 |
| 과수우량묘목 생산 | 9 | 97.2 | 97.2 | 58.3 | 77.8 | 80.6 | 94.4 | 77.8 | 81.8 | 80.6 |
| 과실브랜드 육성 | 7 | 71.4 | 85.7 | 35.7 | 60.7 | 67.9 | 78.6 | 57.1 | 67.2 | 64.2 |
| 과원 규모화 | 148 | 76.0 | 84.1 | 44.4 | 47.0 | 58.3 | 75.9 | 64.0 | 65.8 | 65.3 |
| 폐업지원 | 349 | 65.8 | 77.2 | 55.5 | 54.0 | 67.2 | 72.3 | 63.5 | 65.1 | 64.7 |
| 소득보전직불 | 139 | 70.1 | 83.8 | 37.9 | 42.6 | 50.0 | 65.4 | 52.2 | 58.7 | 56.6 |

자료 : 현대리서치연구소, 「FTA 기금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07.

# 제5장 FTA 기금 사업의 성과요약 및 발전방향

## 5.1. FTA 기금사업의 성과 요약

### 5.1.1. 기금사업 전반

◦ 2004년 한·칠레 FTA 협정에 따라 설치된 FTA기금 사업은 2007년 말 현재 추진된지 3년여에 불과하여 그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나,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FTA기금 사업의 산출(output) 실적을 보면 소득보전 직불사업, 과실가공품 품질향상 사업 등 실제 집행되지 않은 일부 세부사업을 제외하면 목표 대비 집행율이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됨

◦ 먼저 FTA기금사업은 과수 생산자 수 및 재배면적 감축, 호당 재배면적 증가 등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7년의 과수 농가수는 2002년 대비 19.1% 감소하였고 재배면적도 11.2% 감소하였으며, 호당 재배면적은 2002년 0.69ha에서 2007년 0.76ha로 10.1% 증가하였음
- 다만,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은 수입개방, 경지면적 감소, 경영주 고령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이들 효과가 전적으로 FTA 기금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FTA기금

사업이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울러 FTA 기금사업은 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과를 제외하면 지원대상 전 과종의 실질경영비가 2003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어 FTA 기금사업이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과수의 생산성은 유목, 성목 등 수령에 따른 편차가 크므로 FTA 기금사업의 연혁이 4년여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성급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FTA기금 사업은 또한 과수 브랜드화, 농가조직화 등 유통개선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농가조직화에 대한 기여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2006년 총 FTA기금 사업실적 6,541억원 중 32%가 공동브랜드를 부착하여 출하되었음
- 지원농가 대비 약정농가의 비율은 96% 수준에 이르나 약정물량 대비 실제출하 비율은 69.4%에 그치고 있으며 이 물량도 공동계산이 아닌 단순수탁 물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화는 다소 미흡함

◦ FTA기금 사업은 고품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과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거시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품질향상 데이터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서 시설현대화에 의해 착색도, 당도, 상품과 비율 등 품질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FTA기금 사업이 생산구조 조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가격의 안정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점차 규모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만의 영세 농가가 존재하고 있어 자율적인 수급조정 등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5.1.2. 세부사업 성과 요약

####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결과 투하노력 감소, 수량성 향상, 과중 증가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설현대화에 의해 착색도, 당도, 상품과 비율 등 품질향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원농가와 비지원농가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가 없어 FTA기금 사업에 의한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앞으로 지원농가와 비지원농가를 구분하여 품질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간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농기계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기존 농업기계화 사업중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성이 높으며, 일선 행정조직이 임대사업까지 관리하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과대하고 농가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마모되며 농업의 특성상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

에 농가별로 순번을 기다리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라도 특정 농가에게 장기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 생산기반 조성은 일종의 SOC 투자성격이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효과도 큰 사업으로 평가됨
- 통작시간 감소, 수송수단의 적재량 증가, 농기계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 절감, 농수로 유지관리비 절감, 농산물 손상 방지에 의한 포장비 절감, 영농부대비용 절감 등 생산비 절감효과가 크며 그 외 적절한 용수공급에 의한 품질향상, 먼지피해 방지, 농산물 손상 방지 등 품질향상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됨
- 그 외 토지창출 기능, 영농편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안정 등 경제외적 기능이 있음
- 생산기반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연 약 6백만원/ha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비는 4년 이내에 모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됨

###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현재 15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5개소가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음
- 처리물량은 아직 운영초기 단계이므로 해당 지역내 주품목 생산의 3~28% 수준으로 낮으며, 이에 따라 시설의 가동률도 낮고 운영수익도 적자인 문제점을 보임
- 아직 운영초기이므로 물량수집이 미흡하여 선별비용은 일반 APC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나 향후 물량의 규모화 달성 시 충분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영농법인, 전문조합과 같이 단일 경영 체계를 갖추고 기존 사업실적이 우수한 조직은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으나, 제3섹터 주식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의 사업자는 물량조달 기반을 구축하지 못해 운영이 제약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조직화에 크게 기여하고 품질향상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는 공동계산율이 거의 100% 수준에 달하고 있어 과실의 품질향상과 출하 규모화를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산지유통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음
- 아울러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활용하여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에서 차별화시켜 농가 수취가격 상승을 도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제주감귤의 경우 당도가 11bx 이상인 '불로초'의 경락가격이 일반 상품에 비해 2.7배 이상이며, 10bx 이상인 귤림원은 1.4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울러 당도선별기에 의해 농가별 품질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농가별 맞춤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 사업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 사업은 과잉물량을 가공상품 원료로 흡수하여 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에 의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실제로 2006년까지 지원실적은 유자 한 품목밖에 없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곤란함

- 이는 가공품의 판로확보가 불투명하고 산지가공업체의 영세성으로 정책자금의 차입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은 실제 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

◦ 중앙과수묘묙 관리센터 건립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예정된 사업계획이 무난히 달성되고 있음
- 초기에 우수 사과 묘목 생산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8년까지 주요 과수생산 지역에 145ha의 묘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원만히 달성되었음
- 무병원종 확보가 매우 지난함에도 사과, 포도는 일부 무병원종이 확보되었음

◦ 우량묘목 공급으로 품질향상, 생산성 개선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됨
- 상품과 비율이 향상(40%→70%)되고 생산비가 절감(890원/kg→400원/kg)되며 당도도 2bx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우량묘목이 농가에까지 공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엄밀한 비교 평가가 곤란함

### □ 과원 규모화 사업

◦ 과원규모화 사업은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나 예산이 적어 사업물량이 전체 과원 151,398ha의 0.9% 수준에 불과함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85억원이 지원되어 1,294ha의 과원을 확대시켰으며 지원 농가 호당 재배면적이 0.83ha 증가하였음
- 수혜자 237명중 161명(67.9%)가 소득증대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23명(9.7%) 수준에 불과함

- 지원액은 ha당 96,632천원 수준으로 밭매매 단가의 약 40%에 해당하므로 융자지원 수준이 낮지는 않으나, 이차 보전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 부담은 큰 편임
- 사업 예산도 2백억원~3백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충분한 사업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 적음

### □ 과원폐업 지원 사업

◦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과원의 구조조정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은 달성되고 있음
- 복합영농농가들이 주로 폐업함으로써 농가들이 휴경하지 않고 대부분 콩, 채소 등 타작목으로 전환하고 있음
-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고령, 독거 농가의 과원의 폐원을 촉진한 효과가 있으며, 폐과원을 방치할 경우 병해충 등이 발생하여 인근 농가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음

◦ 폐업지원사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품목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당시 한미 FTA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계 설득을 위한 지원책 제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임

### □ 세부사업 평가 결과 요약

표 5-1. 세부 사업별 평가 결과 요약

| 세부 사업명 | 주요 성과 | 문제점 | 향후 추진 방향 |
|---|---|---|---|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기여 | -기술지도, 유통분야와 연계 미흡 | 계획대로 추진 |
|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 -효과 미흡 | -농기계 이용효율성 향상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함 | 기 종료된 사업 |
| 생산단지기반정비사업 | -과수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집단화 유도 |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 미흡 | 사업량 확대 |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 | -과실의 품질향상 및 생산자조직화 유도 | -시설의 가동율 저하 및 적자 발생 | 보완책 마련하여 계획대로 추진 |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 | -지원실적이 1건 뿐이므로 평가곤란 | -사업수요 미미 | 사업 폐지 |
| 과수우량묘목 생산 | -과수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개선 | -무병원종 확보 곤란 | 종합관리기구 설립, 무병원종 확보 |
| 과원규모화 | -과수 농가의 규모확대로 생산성 향상 | -사업물량이 작아 규모화 효과 미흡 | 사업량 확대 |
| 과원폐업지원 |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에 대한 폐원 유도 및 소득 보전 | -구조조정 효과는 있으나 신규 조성에 의해 효과 제약 | 계획대로 사업 종료 |

## 5.2. FTA기금사업의 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 FTA기금을 FTA 체결에 따른 보상 위주가 아니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함

◦ FTA기금이 과수산업 종합 발전기금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함

- 한·미 FTA 등 새로운 FTA를 발표할 때마다 신규 재원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된 원금을 FTA기금 수입으로 재투입하여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아울러 과일 수입액에 일정 금액을 부가금으로 부과하여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농안기금 중 과실수급안정사업에 활용되는 부분을 FTA기금과 통합하여 과수분야의 기금사업으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 이 경우 기금의 명칭도 현재의 FTA기금보다는 '과수산업 발전기금'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현재 2012년까지만 되어 있는 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을 과수산업 장기 발전계획수립에 발맞추어 장기 계획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현재 과원폐업지원과 같은 FTA체결에 따른 시혜성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생산단지 기반정비사업, 거점APC 사업과 구조개선을 위한 과원규모화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사업 방식도 현재 보조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융자 위주로 전환하여 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국고 보조 50%로 되어 있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의 보조율을 점차 감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과 더불어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을 전 과종으로 확대하여 과수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9)]

9) 소득보전직불사업을 전 과종으로 확대할 경우 다른 과수농가 소득안정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 예를 들어 농안기금사업 중 과실수급안정사업은 수급조절보다 소득보장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보전직불사업이 전 과종으로 확대될 경우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조금 제도와 연계하여 R&D 투자 및 소비촉진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추진 중인 청과물 소비촉진 활동[10]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기금사업을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네덜란드[11]와 같이 (가칭) '과수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수산업발전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농협, 영농법인 등), 상인, 유통업체, 수출입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기금사업 및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5.3. FTA 기금사업 개선 방안

### 5.3.1. 기금사업 전반

◦ 세부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계가 필요함
- 우선 FTA기금사업 전반을 산지조직화와 판매사업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거점APC 중심으로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 거점APC에 출하하는 생산자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우량 묘목 공급, 과원규모화, 기반정비 등을 지원하게 되면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임
- 세부 사업간 연계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과수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전략에 입각한 기금 집

10) 하루에 다섯 가지 채소와 과일먹기(five a day), 무상표 소비촉진 광고, 마케팅 조사 등

11) 네덜란드의 생산물위원회(Product Board)는 생산자,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되며 그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 생산물위원회는 원예분야의 유일한 대표단체로 연구개발, 소비촉진, 마케팅 조사, 교육훈련, 에너지 개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

행 및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FTA기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산지유통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3년 기한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FTA기금사업에서는 공동마케팅 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역량이 검증된 조직 위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가에게 선도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두 사업간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거양해야 할 것임

◦ 세부 사업별로 FTA기금 사업이 과수농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원농가패널을 구성하여 시계열로 경영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부사업별 효과를 시험장데이터 혹은 외국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지원농가 단위로 데이터를 축적하야 세부사업별 효과성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단 및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거점 APC의 경우 운영주체와 참여 농가를 세트로 하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단에 대한 연차 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업관리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으나 부진 사업자의 처리 및 지도 기능이 취약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함
- 운영 실적이 극도로 부진한 사업단은 사업선정을 취소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해야 함
- 현재 주기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폐업지원 및 영농규모화 사업 등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가들의 FTA사업 홍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금지원시기, 예산배정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연초에 자금수요가 많은 과원영농규모화 사업의 경우 지원시기를 1/4분기로 앞당기고 배정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5.3.2. 세부사업별 개선 방안

#### □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과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고 농가에서 인식하는 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

◦ 참여조직별 형평성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시행 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만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 아울러 출하약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사업비 회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키낮은사과원 사업은 1년간 예정지 관리가 필수적인데 정확히 이행하지 않는 농가가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술지도가 병행되어야하므로 시행주체(주로 농협) 외에 지도직 공무원이 협력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 당시뿐 아니라 지원 후에도 지도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사후관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현재 기술지도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생산시설현대화 수혜농가의 기술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세부사업별로 수요가 상이하므로 지원기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중에는 필수적인 장비가 수반되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농가에 대한 계속지원은 곤란하나 IPM사업의 경우 GAP와 연계하겠다는 수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는 부작용이 크다는 단점도 있으나 시설현대화에 필수적으로 연계된 장비이고 대규모 농가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 과수생산단지기반 정비사업

◦ 과수생산단지기반사업은 SOC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사업의 성과가 높고 수혜자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이 적어 사업규모 확대가 제약받고 있음

◦ 사업 지구 선정시 공동계산 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사업은 용수시설, 경작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해당지역 생산자단체가 담당토록 되어 있어 산지조직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현재 대상지구 선정시 출하약정율,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등 생산자 조직화 수준도 반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조직화 정도보다 공동계산율 등 내실있는 조직화 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전조사,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 전반을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FTA기금 사업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도 준공과 관련된 일부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나 시군의 행정조직은 시설물 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

◦ 농기계임대사업은 예산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계획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에 지원된 농기계 및 임대료 처리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나 과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하의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시설이고 산지의 수요도 큰 사업이므로,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FTA기금 사업이 추구하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종국에는

판매사업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생산단지 기반정비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세부사업이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즉 FTA기금 세부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농가들이 거점APC를 통해 출하함으로써 품질향상, 출하규모화, 생산비 절감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산지유통을 위한 기간시설이므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활동이 필요함

- 밀양, 제주 등 기존에 사업실적이 있던 곳은 비교적 조기에 경영이 안정되고 있으므로 사업자 자격을 기존에 판매실적이 있는 곳으로 한정한 변경지침은 향후에도 유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업성 진단 신청과 사업성 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미진한 사업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음

◦ 가동율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 품목 이외 타 품목까지 취급할 수 있어야함

- 최소한의 추가설비를 요구하면서 가동율은 높일 수 있는 과채류 중심의 품목 발굴 및 물량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함

◦ 당도선별을 통해 농가별 품질데이터를 축적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자 조직의 확대 및 원물 확보를 도모하여야함

- 맞춤형 농가교육은 기존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으로, 비출하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약정의 메리트로 활용될 수 있음

###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 사업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사업은 일반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적고 사업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과수우량묘목지원사업

◦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묘목이 농가에 보급된 이후 사업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사업의 실제적 성과가 확인되면 농가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

◦ 그간 국내에서 우량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무병원종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무병원종 확보를 위한 지원수단이 추가되어야함

◦ 피해발생시 조사 및 피해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과수묘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격상하여 국가의 우량묘목 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하여야함

- 현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운영자는 정해져 있으나 우량묘목 관리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기구는 부재함

◦ 피해발생시 적립금에 의해 보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해보험 형태의 보험 도입이 필요함

- 적립금은 묘목 거래금액의 10%로 하고 있으나 재원확보를 위해 적립금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묘목 거래단가를 높여 농가의 역선택을 발생시킬 것임

###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원규모화로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사업물량과 예산이 적어 성과가 제한되고 있어 사업물량 및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농가들의 신규과원 매입, 임대 시기는 농번기 이전이므로 자금 지원시기를 1/4분기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 □ 과원폐업지원사업

◦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시혜적 성격이 강해 폐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은 크나 과원 구조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2008년도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업후 5년간은 과원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 담당공무원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에 GPS 등 장비를 지급하여 폐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참고 문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시험장, 「2005년도 농사시험 연구결과 활용자료」, 20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년 과수실태 조사 결과,” 2007.
국회예산정책처,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 사업평가,” 2007.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보고서」, 각년도.
기획예산처, 「기금현황」, 각년도.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평가보고서」, 각년도.
김홍상, 「밭기반 정비사업의 효과분석(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1.
농림수산식품부, 「2004년도 FTA기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시행지침서」, 2004.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결산서」, 각년도.
농림수산식품부,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③ 원예작물」,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07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점검·평가보고서」, 2007.
농촌진흥청, “시설포도 재배의 경영합리화 연구”, 충북도원, 1992.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수분야 우수 영농활용자료 모음집」, 2006.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중장기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우수곤외,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의 경영기술 체계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보고서」, 농촌진흥청, 2002.
한국농촌공사,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8.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조사분석팀, “2007년 4/4분기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2008.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 부 록

## FTA 기금 사업자 평가 지표

## 연도별 FTA 기금 관리 지침 변경 내역

# 부록 1. FTA 기금 사업자 평가 지표

| 단계 | 평 가 항 목 (세 부 질 문) | 점수 |
|---|---|---|
| 종합 | 계 | 100 |
| 계획 단계 | 계획단계 소계 | 10 |
| | 1-1.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 지역과수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3 |
| | 1-2. 지원대상품목(주·부품목)에 대한 생산·유통혁신 계획은? | 3 |
| | 1-3. 지원대상조직과 행정기관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4 |
| 집행 단계 | 집행단계 소계 | 40 |
| | 2-1.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하였고, 출하약정서 등을 제대로 구비하고 출하약정을 하였나? | 5 |
| | 2-2. 사업시행주체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 5 |
| | 2-3. 사업추진 과정의 전반에 걸쳐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 또는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는가 ? | 2 |
| | 2-4.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는가? | 3 |
| | 2-5.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은 해결하였는가? | 3 |
| | 2-6. 사업비 집행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 5 |
| | 2-7.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 자체지원사업의 유무, 출하약정의 이행·불이행 농가에 대한 차별화 방안이 있는가? | 7 |
| | 2-8. 사업지침과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 감점 |
| 성과 단계 | 성과단계 소계 | 50 |
| | 3-1. 법인화 추진, 독립 사업부서(팀) 등 사업운영체계를 정비하였는가? | 10 |
| |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30 |
| | 3-3.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만족하고 있는가? | 10 |

## 부록 2. 연도별 FTA 기금 관리 지침 변경 내역

| 구 분 | 현 행(2004) | 변경안(2005) | 변경사유 |
|---|---|---|---|
| **28. 과원폐업 지원사업**<br>○사업내용 | <신설> | (3) 지원대상<br>○시설포도의 시설의 형태는 다음 ①의 요건 또는 ②의 요건 전부를 충족하여야함<br>①2중골조, 2중비닐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br>②1중골조, 1중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천정에 보온차단막 설치, 노지포도 보다 1개월이상 조기 출하한 증거자료<br><br>○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br>-품목고시일 이후 과수목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시설포도의 적용의 혼선 방지 |
| | ○지원단가 (천원/10a)<br>-폐원 : 시설포도 10,315, 키위 4,148, 복숭아 3,447<br>-양도 : 시설포도 3,438천원/10a, 키위 1,382, 복숭아 1,149<br>○지원대상면적산출 방법<br><신설> | (4)지원단가 및 조건<br>○지원단가<br>-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br>-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br>◦재원 및 조건 : FTA기금, 보조100%, 농가단위로 일시 전액 지원 | ○최근 '03년 자료로 보완<br><br>○지원면적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 |

| 구 분 | 현 행(2004) | 변경안(2005) | 변경사유 |
|---|---|---|---|
| | | (6) 지원대상면적 산출방법<br>◦임야, 하천부지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지원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평지일 경우는 시·군(읍·면)에서 확인으로도 가능함<br>- 지원면적은 ㎡(10a = 1,000㎡)로 계상<br>예1) 2,500평의 키위 표준평 ÷ 300평(10a) × 20주)<br>⇒ 2,500평에 키위 106주가 재식된 경우 2,500평 × 106주/166.67주 = 1,590평<br>예2) 2,500평에 키위 106주와 감나무 50주, 대추나무 30주가 혼식된 정상적인 과원일 경우<br>⇒ 예1)의 면적 1,590평 × 106주/186(키위주수 + 감주수 + 대추주수) = 906평 | |

| 구 분 | 현 행(2004) | 변경안(2005) | 변경사유 |
|---|---|---|---|
| ○폐업신청서 첨부자료 |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동의서 징구<br><br><보완>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토지소유자와 과수목소유자가 불 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br>○한번 신청한자에 대하여 폐원 예정연도에 다시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폐원시에는 반드시 리·동장, 읍·면장, 관계대장 등을 통하여 과수목 소유권의 변경여부를 현장확인 실시 | ○민원해소<br><br>○사업추진의 적정성 제고 |

| 구 분 | 현 행(2004) | 변경안(2005) | 변경사유 |
|---|---|---|---|
| ○신청서확인<br><br><br><br><br><br>○사업우선순위 | <신설> | ○신청서 등을 조사·확인하여 생산력(경쟁)이 떨어지는 과원 우선폐원을 원칙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시·군·자치구별로 결정<br>-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기준 : 과수목수령, 과원경사도, 경영자연령, 품종, 포장조건 등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2)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결정 | ○문서지시사항을 사업지침에 반영 |
| | <신설> |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수립<br>- 연차별지원계획(별표 1)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 수립(별도 농림부 보고)<br>※ 매도사업은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연차별지원에 따른 사업체계변경 |

| 구 분 | 현 행(2004) | 변경안(2005) | 변경사유 |
|---|---|---|---|
| ○사업계획수립및 변경 | | ◦ 사업계획수립<br>-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우선순위(폐원 예정 년도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br>- 사업 예정년도 예고<br>·사업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8)의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시설 및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함<br>- 농림부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br>○사업계획 변경<br>-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br><br>○농가의견반영 |

| 구 분 | 현 행(2004) | 변경안(2005) | 변경사유 |
|---|---|---|---|
| ○폐원방법 | <신설> | ○산사태 우려 등 굴취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원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표면 높이에서 절단방법이 가능함. | ○사업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활명시 |
| ○행정사항 | <신설>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br>-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의 과원규모화사업 유도 및 폐원자제 조치<br>- 품목고시일('04. 5. 24)이전 식재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과원명부 작성 등의 조치<br>- 사업자 선정(확정)이후 사업포기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br>-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br>※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 |

| 구 분 | 현 행(2005) | 변경안(2006) | 변경사유 |
|---|---|---|---|
| **29.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br><br>6.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br><사업개요><br>가. 지원대상자 |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 조합법인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 ◦지원대상에 농업기술센터 명시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34.과실생산·<br>유통지원사업**<br>5. 사업시행요령<br>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기준<br>(1)지원대상사업<br>(2)지원기준 | ①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br>②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br>③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br>④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br>⑤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①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br>②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br>③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o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과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07년부터는 농특회계 사업과 통합 시행 |
| 다. 지원대상자 선정<br>(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 ①품목 전문조합<br>②지역농협<br>③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07년도 사업부터는 농협법에 의한 조합공동법인 등 법인으로 등록한 조직만 지원)<br>④영농조합법인<br>*기존 선정된 연합사업단은 법인화를 통한 독립 회계 및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전제로 지원 | ①품목 전문조합<br>②지역농협<br>③조합공동사업법인<br>④영농조합법인<br>⑤농업회사법인<br>*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법인화 이행까지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한해 '07년도까지만 제한적으로 지원(전년도 예산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o 지원대상조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연합사업단은 지원대상조직에서 제외하되 기존에 선정된 조직에 한해서는 2007년까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 | *당해 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 | *당해 주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 | o 재배면적의 품목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류 방지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3) 선정절차 |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o 중도포기자, 출하약정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
| <추진체계><br>가.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 (2)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br>o구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br>-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 (2)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br>o 구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br>-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 o 과수분야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력을 참여시켜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 | (4) 사업계획서 변경금지<br>o 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 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은 농림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 o 평가과정중에 주요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br>- 평가과정 중 사업지원만을 위하여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함 |
| 마. 사업시행<br>(3) 사업계획 변경절차 | o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등 주요 사항을 | o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 | o 사업계획 변경 금지 사항 추가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
| | o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공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o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o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30%이내는 자체 변경이 가능하나 30% 이상 변경은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통일 |
|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차 상부기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농림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
| 6. 2008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지방자율) 신청안내<br>라.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br>(1)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o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br>-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o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br>-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br>* 단, 지원대상조직과 품목의 단순 추가 및 변경 등은 농림부 실무검토 가능 | o지원대상조직과 품목 등 사업계획의 단순변경은 농림부 실무검토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변경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별지 제2호서식<br>FTA 과실 생산·유통지원 사업(지방자율) 심사평가지침 | 평가등급이 4등급(2~5점)으로 구성 | 평가등급을 세분하여 E등급(1점) 신설 | o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50점이하는 선정에서 제외되나 점수 배정상(2~5점) 실효성이 없어 하위 등급 신설 |
| 별지 제2-1호 서식<br>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심사평가지침 | <행정지시로 사용><br>*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br>①전국단위 유통계열화(2~10점 부여)<br>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신설><br>*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br>①전국단위 유통계열화(1~5점 부여)<br>과수농협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br>②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5~5점 부여)<br>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와 사업계획서보완 및 반영 정도는 어떤가?<br>③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5점 B:3점 C:1점 D:-1점 E:-3점 F:-5점)당해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 o행정지시로 사용하던 거점 APC 평가표를 지침에 신설하고 평가표의 일부 내용 개정<br>o가점 항목을 세분하여 변경하고 가감점 산출은 업무관련 부서에서 일괄 평가하여 반영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 가감점 반영<br>* 전국단위 유통계열화는 과수농협연합회,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평가 후 반영 | |
| ①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br>4. 사업시행요령<br>가. 지원대상자 | o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자로 | o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가<br>*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o 지원대상자의 출하약정 비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하고 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명시 |
| 나. 대상자선정 | <선정 순위><br>o1 순위 : <생략><br>o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br>- 신규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설치중이거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없는 경우 기존 산지유통센터 등 지원대상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선정 순위><br>o1 순위 : <생략><br>o2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사업시행주체(브랜드 경영체) 또는 그 참여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o2순위를 거점APC에서 사업시행주체로 변경하고 3순위는 삭제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o3순위 : 수출, 친환경생산단지(IFP, IPM, INM, GAP), 과실계 약출하사업, 과수재해보험 중 2개 이상 참여 또는 가입한 농가(조직) | o3 순위 : 삭제 | |
| |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 |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것 | o 선정시 심사기준표작성을 의무화 |
| | | * 사업대상자 선정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 | o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br>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 필요<br>o지자체와 사업시행주체는 농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o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br>o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추진 절차를 완료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도모 |
| | o 우량 품종갱신,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o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o 품종갱신, 키낮은 사과원 갱신 공급묘목에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를 사용하도록 추가 |
| <붙임><br>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o 사업추진시 지원단가는 “Ⅰ.총괄”의 단가를 적용하고 “Ⅱ.세부내역”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o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적용 규정 신설 |
| | <우량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 o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함 | o자체보증묘목과 규격묘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 o사업기간 : 2년차<br><br>o사업비 배정: 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o예산실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2년차로 변경하고 연차별로 배정기준 통보 |
| ②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br>4. 사업시행 개요<br>다. 지원대상 |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 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o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사항 명시 |
| 사. 사업추진절차 | o 예정지 조사 (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사업계획신청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o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o사업추진절차 순서 수정 |
| ③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br>4. 사업시행요령<br>나. 지원조건 | o지원비율<br><br>o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 | o지원비율(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유형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br><br>o지원단가 : 15,000백만원/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o지원유형 및 비율이 예산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br><br>o지원단가를 명시화하고 신규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설 인정<br>- 기존시설 보완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br>-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도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도록 규정 |
| | ◦선별기 설치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종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br>-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기종을 설치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br><선별기 선정시 고려사항><br>(부대사항)<br><br>2. 오존수 세척 설비 선택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br>-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br><선별방식 선정시 고려사항><br>(부대사항)<br><br>2. 세척설비 선택 등<br>-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 o 선별기 선정에 대한 오해(특정회사 제품 선정 등)를 없애기 위하여 기존선정이라는 용어를 선별방식으로 변경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 감귤의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 o세척설비를 오존수와 감귤로 한정한 것을 삭제 |
| 라. 지원대상사업 |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br>o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추진조직으로 사업자 확정후 1년 이내에 법인화를 전제로 한 사업조직<br>* 공동마케팅조직 : 농협조합분사·자회사 또는 수개의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한 독립채산제 마케팅회사 형태로서 회원제 공동계산 출하조직(출하 의무계약 등 체결)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책임경영으로 운영되는 조직<br>* 사업연합 : 수개 조직의 사업연합을 결성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br>삭제 | o'07년부터 법인이 아닌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마. 지원내용 | o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등을 원칙적 | o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 | o신선편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으로 일괄지원하되 예냉·냉장수송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br>-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br>-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o신선편이시설은 거점APC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사. 사후관리 | o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매년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br>*“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 참조(후면참조) |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함<br><삭제> | o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br>- 평가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br>- 종합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
| 5. 입찰의 방법<br>나. 일괄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 o 입찰방법, <중략>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br>- 농과계 대학에서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br>- 농과계 대학에서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 | o 입찰방법, <중략>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br>-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br>-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o 농과계 대학으로 한정한 것을 일반 대학까지 확대<br>- 많은 대학들의 학제 개편과 농과계열 이외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는 부분 감안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상인 자<br>- 대학에서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 삭제 | o 관련분야 전문가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추가 |
| | | -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
| 6. 사업신청 요령 | o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생략> | o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생략> | |
| |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 |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 o 사업성 진단신청을 시도지사를 통하여 신청토록 개정 |
| | - 사업성 진단신청 기한 : 2007년 1월말까지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지4-1호 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o 신청서류 명시 |
| | |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별지 4-9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o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규정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신설 |
| | - 진단결과 통보 : 신청자에게 2007년 2월 15일까지 통보 | o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o 진단일정을 감안하여 결과 통보 일정 변경<br>- 2월 15일 → 2월 말일 |
| | o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이 사업시행지침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o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 진단 이후 변경 불가<br>-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 o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농림부에도 보고하도록 규정<br><br>o 사업성진단이후 사업계획서 임의변경을 금지하여, 진단결과의 내용이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 | | o 사업성진단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심사·평가에서 제외하고 다음연도에 사업성진단을 재신청하도록 개선 |
| 별지 4-9호 서식 | | * 거점APC설치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 o 사업진단 신청현황 보고 양식 추가 |
| 35.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br>가. 무독묘 생산·공급 목표 | - |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 o 중앙과수묘목 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품질규격묘를 생산할 수 있는 묘포장을 설치하고 향후에 무독묘 생산포장으로 활용 |
| 다.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체계 구축 | - |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에 한해 보증 | o 무독묘목 공급 이전에는 품질규격묘에 한해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향후에 무독묘 보증체계로 확대 구축 |
| <사업개요><br><우량규격묘 생산기준(1ha당)> | |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독묘목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21조)에 의한 품질규격묘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묘포장 설치를 지원 | o 무독묘목 공급 이전에는 품질규격묘를 생산할 수 있는 묘포장을 설치하고 향후에 무독묘 생산포장으로 활용 |
| <추진체계> | - | ◦기지현상에 의한 연작피해 발생 등 | o 연작피해 등 정상적인 묘목 |

| 구 분 | 현 행(2006) | 개 정(2007) | 개정사유 |
|---|---|---|---|
| 아. 사업계획 변경절차 | | 정상적인 묘목생산이 어려울 경우 과수연합회장에게 자비로 조성한 대체부지를 사업부지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과수연합회장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 부지로 인정할 수 있음 |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자부담으로 조성한 대체부지 인정으로 묘목생산의 안전성 도모 |
| <붙임 1,2><br>10ha 규모 묘포장 조성 소요예산 산출내역 | - | * 토지임차료는 지역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2~3년차의 임차료를 사업비로 인정 | o 토지임차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시불로 지급한 임차료를 2~3년차의 사업비로 인정 |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8">현 행(2006년)</th><th colspan="8">변 경 안(2007년)</th><th>변경사유</th></tr>
<tr><td rowspan="2">36. 과원영농<br>규모화사업<br><br>4.연도별 지원계획</td><td colspan="8">(단위 : ha, 백만원)</td><td colspan="8">(단위 : ha, 백만원)</td><td rowspan="2">'07년<br>예산반영</td></tr>
<tr><td colspan="2">구 분</td><td>`02~`03</td><td>2004</td><td>2006</td><td>2006년<br>(예산안)</td><td>2007년이<br>후</td><td colspan="2">구 분</td><td>`04</td><td>2005</td><td>2006</td><td>2007년<br>(예산안)</td><td>2008년이<br>후</td></tr>
<tr><td colspan="2">사업량</td><td>-</td><td>273</td><td>270</td><td>430</td><td>1,723</td><td colspan="2">사업량</td><td>273</td><td>270</td><td>430</td><td>420</td><td>1,293</td><td></td></tr>
<tr><td rowspan="5">사<br>업<br>비</td><td>계</td><td>-</td><td>23,500</td><td>23,500</td><td>35,964</td><td>144,179</td><td rowspan="5">사<br>업<br>비</td><td>계</td><td>23,500</td><td>23,500</td><td>35,964</td><td>34,934</td><td>108,205</td><td rowspan="2"></td></tr>
<tr><td>보조<br>융자<br>지방비<br>자부담</td><td>-<br>-<br>-<br>-</td><td>-<br>21,400<br>-<br>2,100</td><td>-<br>21,400<br>-<br>2,100</td><td>-<br>33,300<br>-<br>2,664</td><td>-<br>133,500<br>-<br>10,679</td><td>보조<br>융자<br>지방<br>비<br>자부<br>담</td><td>-<br>21,400<br>-<br>2,100</td><td>-<br>21,400<br>-<br>2,100</td><td>-<br>33,300<br>-<br>2,664</td><td>-<br>32,364<br>-<br>2,570</td><td>-<br>100,189<br>-<br>8,016</td></tr>
<tr><td>(5)지원규모 및 조건</td><td>구분</td><td>지원<br>규모</td><td>융자<br>금리</td><td colspan="3">상환기간<br>및 방법</td><td>구분</td><td>지원<br>규모</td><td>융자<br>금리</td><td colspan="3">상환기간<br>및 방법</td><td>상환기간<br>수정</td></tr>
<tr><td>농지<br>매매</td><td>(생략)</td><td>연리3%</td><td colspan="3">연령에 따라 10~30년 ----------</td><td>농지<br>매매</td><td>(생략)</td><td>연리2%</td><td colspan="3">연령에 따라 15~30년<br>---------</td><td></td></tr>
<tr><td>농지<br>임대차</td><td>(생략)</td><td>무이자</td><td colspan="3">(생 략)</td><td>농지<br>임대차</td><td>(생략)</td><td>무이자</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d></td></tr>
</table>

<table>
<tr><td>나. 2006년도<br>사업비(예산안)<br>내용</td><td colspan="8">바.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br>(단위 : ha, 백만원)</td><td colspan="8">바.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br>(단위 : ha, 백만원)</td><td>'07년도<br>사업비<br>확정내용<br>반영</td></tr>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사업량</td><td colspan="5">사 업 비</td><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사업량</td><td colspan="5">사 업 비</td><td rowspan="2"></td></tr>
<tr><td>사업비 합계</td><td>예 산 액 (농지관리기금)<br>계</td><td>보조</td><td>융자</td><td>지방비</td><td>자부담</td><td>사업비 합계</td><td>예 산 액 (농지관리기금)<br>계</td><td>보조</td><td>융자</td><td>지방비</td><td>자부담</td></tr>
<tr><td>계</td><td>430</td><td>35,964</td><td>33,300</td><td>-</td><td>33,300</td><td>-</td><td>2,664</td><td>계</td><td>420</td><td>34,934</td><td>32,364</td><td>-</td><td>32,364</td><td>-</td><td>2,570</td><td></td></tr>
<tr><td>매 매<br>임대차</td><td>282<br>148</td><td>29,304<br>6,660</td><td>26,640<br>6,660</td><td>-<br>-</td><td>26,640<br>6,660</td><td>-<br>-</td><td>2,664<br>-</td><td>매 매<br>임대차</td><td>272<br>148</td><td>28,274<br>6,660</td><td>25,704<br>6,660</td><td>-<br>-</td><td>25,704<br>6,660</td><td>-<br>-</td><td>2,570<br>-</td><td></td></tr>
<tr><td></td><td colspan="8"></td><td colspan="8"></td><td></td></tr>
<tr><td><추진체계><br>나.사업담당부서</td><td colspan="8">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br>◦ 본 사 : 농지은행사업본부<br>T (031) 420-3354,3348<br>◦ 각도본부 : 농지사업팀(제주도의 경우 경영지원팀)<br>◦ 시·군관할지사 : 농지사업팀</td><td colspan="8">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농촌공사<br>◦ 본 사 : 농지은행사업처<br>T(031) 420-3380,3366<br>◦ 각도본부 : 농지은행팀<br>◦ 시·군관할지사 : 농지은행팀</td><td>담당<br>부서<br>명칭<br>변경</td></tr>
</table>

| 구 분 | 현 행(2006) | 변경안(2007) | 변경사유 |
|---|---|---|---|
| 매매사업<br><br>(가)대상과 원확보<br>③매입제외 과원 | ① 매입대상과원<br>◦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포함)<br><br>③매입제외과원<br>◦-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가능 | ① 매입대상과원<br>◦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br><br>③매입제외과원<br>◦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가능 | ◦매입대상과원의 명확화 |
| | -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매도하는 과원 | -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과원 | ◦조문정리 |
| | -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 | -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투기방지를 위해 경작기간 제한 |
| | <신 설> |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제3자가 경매취득한 경우 재 매입 허용, 투기방지를 위해 경작기간 제한 |
| |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음) | ◦제13호는 지원가능 사유 |

| 구 분 | 현 행(2006) | 변경안(2007) | 변경사유 |
|---|---|---|---|
| ⑤매입가격의 결정 | ⑤ 매입가격의 결정<br>◦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가격 및 감정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과원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 ⑤ 매입가격의 결정<br>◦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협회 등 공인기관의 “과종별·수령별 취득가격”의 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br>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 ◦과수목 산정 방법 개선으로 농가부담 경감 |
|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br>①지원대상자 | ①지원대상자<br>◦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 | ①지원대상자<br>◦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 총출자 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 | ◦주식회사 관련 조문 정리 |
| ②지원제외자 | <신 설> | ◦허위·담합으로 지원 받은 자 | ◦부정지원자에 대한 지원제한 |
| | <신 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가능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 구 분 | 현 행(2006) | 변경안(2007) | 변경사유 |
|---|---|---|---|
| | | | 지원에 따른 후속 조치 |
| (다)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 ③ 매매대금의 납부<br>◦ 분할납부<br>-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br>·신청년도 1월1일기준 : 만40세 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이하 15년, 61세이상 10년 | ③ 매매대금의 납부<br>◦ 분할납부<br>-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br>·신청년도 1월1일기준 : 만40세 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 이하 15년 | ◦해당없는 사항 조문 정리 |
| (가)임차대상과원확보 | ①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br>⑥ 임차계약 체결<br>- 연대보증인의 보증서<br>※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인입보 - - - | ①대상과원 : 매입대상과원과 같음<br>⑥ 임차계약 체결<br>- 연대보증인의 보증서<br>※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인입보 - - - | ◦조문정리 |
| (나)지원대상자 선정및 지원 한도 결정 | ② 임대지원 제외자<br>◦당해 연도 1월 1일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② 임대지원 제외자<br><삭 제> | ◦불필요 조항정리 |

| 구 분 | 현 행(2006) | 변경안(2007) | 변경사유 |
|---|---|---|---|
| ◦과원매매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농업인 | ◦과원매매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 | |
| ③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br>◦---과원임차신청서를 '04년 사업시행지침 통보후부터 연중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 | ③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br>◦ ---과원임차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 | | |
| (3)과수농가 관리 | <계약해제·해지><br>◦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계약해제·해지><br>◦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

| 구 분 | 현 행(2006) | 변경안(2007) | 변경사유 |
|---|---|---|---|
| | <단서신설> | ※다만,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영규모축소로 간주하지 아니함 | ◦경영회생대상과원의 경우 경영규모축소로 보지 않음 |
| (4)지원과원 관리 | (4)지원과원 관리(한국농촌공사)<br>◦사후관리 상황조사<br>- 회수과원 가격결정 : (생략) | (4) 지원과원 관리(한국농촌공사)<br><사후관리 상황조사><br>◦회수과원 가격결정 : (현행과 같음) | ◦조문체계 정리 |
| ※공사의 전매동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재매입하는 경우의 가격 결정과는 다름에 유의 | < 삭 제> | ◦불필요조항 정리 | |
| 나. 기타 행정사항 | <신 설> | (8)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 행정기관 통보 | ◦과원폐원지원사업과 2중 지원 방지 |

FTA 기금사업 성과평가

인 쇄 2008. 5.
발 행 2008. 5.
발행인 원철희
발행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5-19 농협용산별관 5층
전화 02-2077-2816~7 팩스 02-2077-2818
newma@chol.com http://www.newma.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연구의 내용이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